

2001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 5 권)

북한실태 (사회)



통 일 부

본 논문집은 2001년도 북한 및 통일문제 신진연구자(학자) 연구지원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5권의 책으로 편집·발간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통일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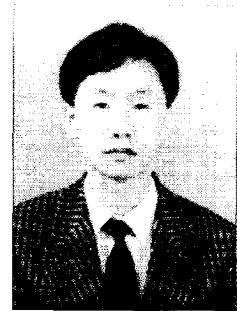
목 차

1.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 연구	1
김 수 암 (통일연구원)	
2. 국가주도형 심천모델과 시장주도형 상해모델의 북한적용가능성 연구	61
박 병 광 (단 국 대)	
3. 북한의 사회법률직업에 관한 연구	93
이 동 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 북한의 언어공학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	125
이 봉 원 (고 려 대)	
5.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179
조 수 선 (국가안보정책연구소)	

〈부 록〉

1. 권별 수록 논문 일람표	227
2. 최근 연도별 연구 과제 목록('96 ~ 2001년)	229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 연구



김 수 암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목 차

【 요약문 】	3
1. 서론	7
2. '우리식 인권'과 '서방식' 인권기준에 대한 대응논리	9
3. 국제인권규범과 북한의 대응	23
4. 결론: 대북인권문제 접근 방향	50
※ 참고문헌	56

【 요약문 】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인권의 보호를 제도화한 것이 국제인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유엔 헌장에서 주권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국제정치 무대에서 보편성과 주권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분단이라는 독특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념적 스펙트럼이 게재되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면서 각종 인권규범에 가입한 당사국이므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최근 북한은 대외관계 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16년만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EU와 '인권대화'를 갖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징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식 인권'의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우리식 인권에는 자본주의(제국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구도라는 역사발전단계가 바탕에 깔려 있어 기본적으로 계급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계급적 속성은 인권의 주체분제와 관련하여 집단주의라는 인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계급적 속성과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1990년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체제안보라는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가 그대로 투영되는 형태로 '우리식 인권관'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보편적 기준을 부인하고 우리식 인권기준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A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B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한 의무에 따라 A규약 최초보고서, B규약 최초보고서 및 2차 정기보고서, 아동권리협약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았다. 다만, 여성차별철폐협약은 2001년도 2월에 가입하여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3개의 인권규범의 심사과정에서 각 규범을 관장하는 위원회는 인권보장을 위해 각 규범이 별개의 체계가 아닌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심사과정 및 각 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대하여 북한이 취한 대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북한은 확일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양

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대응하여 B규약 탈퇴선언이라는 극단적인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당과 국가의 영도, 주체사상과 인권과의 연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북한식 인권관에 입각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유엔무대에서 북한식 인권관을 피력하고 북한식 인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셋째, 강제실종, 도청,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체제안보와 직결되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 주권의 원칙을 내세워 불순한 정치세력의 날조, 음모라는 방식의 대응을 들 수 있다. 다만, 공개처형의 경우에서 보듯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을 때 일단 시인하지만 극악한 범죄에 대해 균중의 요구로 공개처형을 하게 되었다고 변론하고 있다.

넷째, 사설출판사, 정당의 설립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체제와 관련된 결사의 사유 및 사적 조직의 존재에 대하여 내적 요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회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다섯째, 결사의 자유의 또 다른 형태로 독립적인 인권전담 NGO의 존재 문제에 대해 북한은 인권연구협회 등 3개의 전문 NGO가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적극 홍보하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북한의 NGO로부터는 유엔무대에 전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섯째, 강제노동 등에서 보듯이 상이한 개념정의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대응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체제와 직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솔직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제징과 A규약, 아동의 권리와 의 상관성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권리가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아동의 권리분야에서는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호소하기까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협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과정에서의 인권에 대한 체계적 교육 여부에 대해 북한은 커리큘럼 내에 인권교육이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각종 규약을 전파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방식을 고려할 때 향후 대북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인권존중의 원칙을 대외관계의 핵심으로 삼고 인권유린국가에 직접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과 인권분야에서도 대화와 실득을 통한 '포용적' 노선을 취하는 2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접근방식은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탈퇴선언이라는 북한의 극단적인 대응에서 보듯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실태를 실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서 두 번째 접근과 병행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현실 인권실태간에는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후자만의 접근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화를 중심으로 인권실태를 병행하여 제기하는 절충적인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 '인권대화'를 위주로 대북인권문제 접근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제사회에서의 움직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조율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키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EU 등 국제사회를 통하여 북한의 우리식 인권이 국제 인권규범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북한으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데 전략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공조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먼저 국제 인권규범 심사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이 현실인권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으므로 북한이 갖추고 있다고 제시한 북한법규가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실종, 강제노동 등 개념정의 문제로 회피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기준을 납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규약의 보고서 심사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다른 국제규범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협약 보고서 심사 시 계속 제기되고 있던 기술지원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기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기준에 점차 부합하고 개방의 효과도 거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A규약 2차 보고서의 제출을 권유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공개처형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서론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국제정치 무대에서 규율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 국제인권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국제인권규약 B규약)을 비롯한 6개 인권규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면서 각종 인권규범에 가입한 당사국이므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의 이행이라는 당위성과 현실 인권상황간에는 괴리가 있는 것이 정치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의 권리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상황을 최하위인 7등급(not free)으로 분류하고 있는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인권지도에서 보듯이 시민적·정치적 권리 측면에서도 북한의 인권실태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인권의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유엔 현장에서 주권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국제정치 무대에서 보편성과 주권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분단이라는 독특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념적 스펙트럼이 게재되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게재될 경우 체제가 인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주로 정치체제와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남북체제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체제의 약점을 들추어내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기존의 북한인권연구는 주로 B규약에 입각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 북한정치체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북한의 인권유린의 제도화, 국제인권규범의 가입현황 및 북한법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에서 북한의 정치체제 비판,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북한인권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연구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즉,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중점을 두면서 서구식 인권개념에 입각하여 비판적인 밖의 시각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상대주의, 국제인권규약 중 A규약과 B규약의 우선순위에 대한 상이한 입장, 발전권 등 제3세대 인권개념의 등장, 인권과 주권과의 상관성 등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각국마다

인권에 대하여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최근 안으로부터의 시각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¹⁾

북한은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B규약의 탈퇴선언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그런데 최근 북한은 대외관계 확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16년만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하여 나뉘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에 대해 강력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여 온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국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인권대화'를 수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권문제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국내 및 국제사회의 대북인권문제 제기 과정을 살펴보면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를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사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변화징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 자신의 대응논리를 북한의 시각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에 대하여 인권개선을 촉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북인권정책 수립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논리와 북한의 인권실상 간에는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북한이 체제안보라는 관점에서 인권을 국제정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비판적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보다 IU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 '인권대화'라는 접근방식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식 인권관에서 탈피하여 국제인권규범이라는 '국제적 기준'을 점진적으로 수용해나가도록 인권분야에서 대화와 설득의 포용노선, '인권대화'라는 방식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의 논리구조와 내용, 북한이 '서방식'이라고 지칭하는 인권개념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정립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범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 제출한 정기보고서와 심사과정에서의 북한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우리식 인권관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범과 우리식 인권과의 괴리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김근식,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각", 한국인권재단 주최 제3회 인권학술회의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에서 발표한 논문, 2001.2.18.

2. ‘우리식 인권’과 ‘서방식’ 인권기준에 대한 대응논리

인권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역사발전단계, 북한의 정치체제와 통치이념, 세계질서의 변화라는 틀에 입각하여 접근할 때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세계질서의 대한 자신의 인식변화를 반영하여 인권문제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대상황에 따라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위기의식이 인권에 대한 인식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2.1 인권개념의 태동 및 보편성에 대한 인식

2.1.1 부르주아계급의 이익 옹호와 인권개념의 태동

인권개념의 태동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봉건사회, 부르주아혁명,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역사발전단계에 기반해 있다. 최초의 계급사회였던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에서 노예와 농노는 사람이 아닌 ‘말하는 짐승’이나 ‘말하는 도구’라는 물건처럼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권리에 대한 문제, 즉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인간의 권리인 인권문제는 부르주아혁명 시기에 신흥부르주아지들에 의해 태동될 수 있었다. 착취자인 동시에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던 부르주아 계급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봉건투쟁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대중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자유’, ‘박애’, ‘인도주의’ 구호를 내세우면서 인권개념이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

이와 같이 인권은 태동기부터 계급적 토대 위에 전개되었다는 인권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초창기 인권문서를 통하여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근로인민대중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으로 이상화된 부르주아계급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776년 7월 4일 발표된 ‘독립선언’에서 인민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문서에 ‘모든 인간’은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2) 정경섭, 「제국주의자들이 피벌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7~8.

만 근로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날 권리, 흑인노예제의 폐지 등의 조항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부르주아계급의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국민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도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역시 봉건적인 전제주의제도와 신분적 차별, 억압을 반대하고 자본주의적인 정치·경제제도를 확립하려는 부르주아계급의 요구와 저항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³⁾

다만, 낡은 중세적 사회질서, 신분적 예속을 정당화한 봉건적 윤리규범과 종교교리를 반대하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같이 '생존권', '자유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개념을 태동시킴으로써 일정하게 사회적 진보를 낳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인민대중을 자기편에 끌어들이는 정권을 장악하자마자 인민을 배반하고 부르주아독재를 세우면서 부르주아들의 계급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수단으로 인권을 이용하여 오히려 인권문제의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⁴⁾ 결국 인권은 태동기부터 계급적 속성을 지님으로써 역사상 채택된 각종 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시대마다 상이한 계급의 요구를 반영하여 채택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부르주아지들의 인권보장을, 사회주의혁명 승리 후에 채택된 「근로자 및 피착취 인민의 권리선언」은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인권보장을 선언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역사적 사례로 들고 있다.⁵⁾ 결론적으로 인권태동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북한의 인권관은 국제정치상으로 진보와 반동,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사이의 투쟁과 이에 기반한 계급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정립되기 시작한다.

2.1.2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주의

인권은 보편성을 가진 도덕적인 문제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⁶⁾ 그렇

3) 위의 책, pp.8~11.

4) 김일성,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 「김일성서적집」 제1권, 1979, p.282;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본질」, 「근로자」 1990년 2월호, pp.92~93.

5) 정경섭,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p.12.

6) 현실 국제정치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John J. Tilley, "Cultural Relativism", *Human Rights Quarterly*, Vol. 22, No. 2, May 2000.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적 가치'라는 논리 하에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러한 인식이 1993년 방콕선언에서 구체화된 바 있다. <http://www.unhchr.ch/html/menu5/webangk.htm>.

지만 북한은 인권의 보편성과 관련하여 “인권은 하늘이 주는 행운도 아니고 더우기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가 주는 선사품도 아니다”라고 천부적 인권분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할권 내에 있는 인민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물질적 조건을 구비해줄 때 인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그런데 북한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숭고한 가치라는 점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인권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숭고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보편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고유한 이념에서 이탈하여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다른 나라의 사회정치제도를 와해전복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문제라는 것이다.⁸⁾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각이한 전통과 민족성,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발전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매개 나라의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도 해당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북한의 기본입장이다.⁹⁾ 문화적 상대주의적 관점에 설 때 ‘인권기준’과 ‘보장형태’가 핵심요소로 작동하게 되고 ‘북한식 인권관’이 형성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식 인권관의 형성은 ‘보편적 기준’을 기조로 하는 국제인권규범에 배치되고 국제사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문제제기를 외세의 ‘압력’이나 ‘훈시’로 규정하고 ‘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인권을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형성된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자본주의국가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는 보편성 주장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민들의 인권옹호가 아니라 인민의 원수들의 인권옹호라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제도의 착취적 본성을 은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리게 하는 데 있다.¹⁰⁾

2.2 북한의 인권개념: ‘서방식’ VS ‘우리식 인권’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체제안보에 부정적인 국제환경이 조성되면서 1990년대 중반이 되면 ‘서방식’과 대비되는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반영한

7) “잡다한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6.24.

8) “잡다한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6.24.

9) 『로동신문』, 2001.3.2.

10) 정경섭,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p.15.

‘우리식 인권’ 개념이 정립되고 있다. 1970년대에 인권은 “인민이 옹당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재반권리”라고 A규약과 B규약을 통합한 형태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튼튼한 물질적 조건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개발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계급적 속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¹¹⁾

그런데 1980년대가 되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옹당 가져야 할 권리”라고 하여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고 인권의 주체를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가져야 할 권리”¹²⁾라고 70년대와 비교하여 자주성과 창조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즉, 사회주의적 인권의 성격과 북한식 주체사상이 결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¹³⁾

1990년대가 되면 북한은 인권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인식하면서 ‘서방식 인권’과 ‘우리식 인권’으로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식 인권’이라는 용어는 1995년 6월 24일자 「로동신문」 “참나운 인권을 옹호하여”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기반’이 되고 있다. 김일성이 워싱턴 타임즈와의 회견에서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된다”¹⁴⁾고 강조하면서 “인민이 좋아 하고 그들의 요구와 이익에 부합되는것”¹⁵⁾이 ‘우리식 인권’의 절대기준으로 정형화되고 있다.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인권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제사회에서 특정한 인권기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식의 올바른 인권기준이 있다”고 ‘보편적’ 인권기준을 부인하고 있다.¹⁶⁾

이러한 ‘우리식 인권’론에 따라 “우리는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정정당당하게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것이며 궤변으로 가득찬 서방식인권론을 철저히 배격할것”¹⁷⁾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서방식’이란 정치적으로 다당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 서방식 인권기준을 의미한다.¹⁸⁾

우리식 인권의 내용은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¹⁹⁾로 구체화되고 있다.

11)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718.

12)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920.

13) 송지영, “북한의 ‘우리식 인권’ 외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p.30~31.

14) 김일성, “미국 《워싱턴타임즈》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서적집」 제44권, 1996, p.371.

15) 「로동신문」, 2001.3.2.

16) 「로동신문」, 2001.3.16.

17) “참나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6.24.

18) “〈서방식〉은 망국 자기식이 제일”, 「천리마」 9호 (평양: 천리마사, 2000), p.61.

19)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제13권, 1998, p.477.

'자주적 권리'로 정형화되는 '우리식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이다. 인권의 본질에 대한 주제적인 이해는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하는데, 인권은 본질상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권리"이며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사회적으로 행사하며 보장받으려는 권리"라는 2가지 중요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자주성과 창조성이 사람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참다운 인권이 보장되려면 사람이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와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이러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주적 권리라는 우리식 인권에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위'라는 권리와 함께 '역할'이라는 의무개념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 즉, "사람은 자주적권리를 가질 때에만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사람답게 살아나갈수 있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지위와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의 내용과 수준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따라 심화되고 발전된다.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주인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면 곧 인권이 보장되는데, 이를 통해 사람은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며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려고 하게 되므로 인권의 내용과 수준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며 높아지게 된다는 논리이다.²²⁾

이러한 북한의 인권개념에 입각할 때 현실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의 구체적 내용은 1995년 2월 8일 북한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인권문제 담화에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인권에 대한 개념을 자주권, 생존권, 평등권, 발전권을 포함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 정리하고 있다.²³⁾

20) 조성근, "인권의 본질", 『철학연구』, 1998.3, pp.34~35.

21) 김일성, "온사회를 주체사상화 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김일성주체집』 제37권, 1992, p.112.

22) 조성근, "인권의 본질", p.35.

23) 『조선중앙방송』, 1995.2.8; 김병로, 『김정일정권의 인민정치 변화과정』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45.

2.3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한 북한의 인권관 평가

2.3.1 인권의 주체: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국제인권규범 상의 인권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주체와 관련하여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집단적 인권'은 독립국가의 대외적인 주권과 원주민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고 있다.²⁴⁾ 그런데 북한의 인권관은 개인주의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각자는 자기자신을 위하여'라는 개인주의적 생활원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이해관계와 사회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회로서 개인의 이해는 다른 사람의 이해에 대한 침해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즉, 개인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위주로 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므로 '만인은 만인에게 승냥이'이라는 약육강식의 '승냥이법칙'이 지배하는 개인주의사회에서 사람다운 '인간성'이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박애'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²⁶⁾ 반면,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사회생활이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전체 인민이 공통된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투쟁해나가는 집단주의사회"²⁷⁾라고 주장한다. 즉, 공통된 목적과 이해관계 내 약육강식의 내립·갈등관계로 내비하여 인권의 주체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와 인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람은 혼자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을 이루며 단결과 협력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람은 사회와 집단으로부터 삶의 권리를 보장받아야만 그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²⁸⁾ 즉,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성에 있어서 집단적인 것이며 사회적 것이다. 반대로 사회와 집단을 떠난 개인은 무력하며 그러한 개인의 삶은 본질에서 짐승의 삶과 같다"는 논리이다.²⁹⁾

다만, 집단주의가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여도 주체로서의 개인의 이익을 완

24) 이원웅,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1호, 1998, p.227.

25)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본질", pp.93~95.

26) 『로동신문』, 2000.5.6.

27)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제12권, 1997, p.283.

28) 조성권, "인권의 본질", pp.34~35; 정경섭,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pp.12~13.

29)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본질", p.96.

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상호관계라는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람의 이익에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있는데, 이 양자의 결합방식이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사회제도의 진보성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대립되고 집단의 이익 위에 개인의 이익을 올려놓는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사람들 사이에 대립관계를 가져오므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위에 놓고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일치시키며 집단의 이익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³⁰⁾ 즉, 온 사회가 하나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대가정을 이루는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치시킨다. 사회주의적 집단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우위에 놓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실현해나가는 것이므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가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 자체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¹⁾

이상에서 보듯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인권과 관련하여 대비되는 점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 중 어느 것에 우위를 두느냐라는 점이다.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우위에 두지만 양자를 대치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치시키기 때문에 집단의 이익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조화로운 관계라는 것이다. 반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는 대립과 갈등만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집단주의적 사회가 와해될 때 실업, 빈궁, 범죄와 사회악의 희생이 되어 인권이 유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와 사회악을 인권유린의 범주에 넣고 있는 데 이를 통해 인권의 범주에 대한 시각의 차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와 사회악이라는 인권유린으로부터 인민대중의 인권을 지키는 방식을 '병영식'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²⁾

30)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제11권, 1997, pp.46~47.

31)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될수 없다", 「김정일선집」 제13권, 1998, p.365.

32)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될수 없다", 「김정일선집」 제13권, 1998, p.361. 범죄와 사회악을 인권유린으로 보는 것은 아시아적 가치에 걸맞은 리얼리티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Fareed Zakaria,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4.

2.3.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 다원주의 vs 집단주의

위에서 설명한 집단주의는 다원주의와 대비되는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북한의 체제문제와 관련된 시민적·정치적 측면에서의 권리에 대한 북한의 인권관을 살펴볼 수 있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서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사회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라는 다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입장이다.³³⁾ 이와 같이 다원주의에 기반해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사상에서의 자유’, ‘정치에서의 다당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상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사상의 자유’, ‘개성의 절대적 자유’는 부르주아반동사상을 강요하는 ‘자유’로서 돈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민들을 억압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부패타락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³⁴⁾ 계급적 속성이 다원주의와 결합되면서 사상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식은 계급적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계급과 계층으로 분열되어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이한 사상과 사조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을 사상의 ‘자유’라고 떠벌리고 있지만 금권을 이용해 출판물, 텔레비전 등 언론매체를 장악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주의사회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유일적 지배가 본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낡은 사상을 낳는 사회경제적 기초가 청산되고 계급적 대립이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³⁵⁾

다음으로 다당제를 중심으로 체제와의 연관속에서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북한이 대응논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동계급의 당과 다당제를 대비하여 일당독제의 정당화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데, 인민이 정치의 주인인가 아니면 정치의 대상인가 라는 점이 논지의 핵심이다. 정치는 일정한 정치조직을 통하여 실현되며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자면 자기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33) 김성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제12권, 1987, p.283.

34) 한하린,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의 반동성과 그 해복성”, 『철학연구』 2001년 제1호(무계 제84호), 2001.1, p.44.

35) 김성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제11권, 1997, p.66.

정치조직을 가져야 하는데,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의 대표자는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이라는 주장이다. 즉,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은 최고정치조직이며 정권은 가장 포괄적인 정치조직으로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것이다.³⁶⁾ 즉 노동계급의 당과 정권을 통하여 인민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가 진정한 민주주의이므로 다른 정치조직이 노동당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다당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이다. 인민대중의 의사를 하나로 집대성하고 집대성된 의사를 인민대중의 의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정치인데, 참다운 민주주의는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 하에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당이 영도하는 정치조직에서의 정치조직생활을 자유에 대한 '구속'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 역량으로서의 노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의 일정한 계층을 망라하는 대중적 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은 그 성격 상 노동계급의 당을 대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영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또한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적 차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차이가 남아있는 과도기적 사회로서 노동계급의 당과 함께 다른 정당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정치세력과 계층만을 대표하는 낡은 낱은 결코 노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결국 사회주의사회에서 다른 정당들은 노동계급의 당과 집권경쟁을 하는 정치조직이 아니라 온 사회에 대한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전선적으로 협조하는 정치조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³⁷⁾

부르조아의회제란 부르조아독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선거제도를 만들어 동 집자본가들과 그 대변자들이 부르조아사회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부르조아정치방식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당제란 계급적으로 분열·대립되어 있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부르조아정당들의 '경쟁'을 통하여 통치배들의 반인민적인 억압과 전횡을 '민주주의'의 명분으로 포장한 부르조아정당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³⁸⁾ 따라서 여러 부르조아당이 '조작'되어 선거경쟁을 하며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당이 권력을 행사하는 '다당제'와 '의회제'를 '민주주의적 정치방식'으로 보는 것도 그것된 환상이다.

36)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왜곡은 허용될 수 없다", 『김정일선집』 제1권, 1995, p.357.

37)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제1권, 1997, p.38.

38) 김영수,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사회주의를 좌절시키는 요인", 『전향연보』, 1992년 제1호·부록 제76호, 1992.2, p.33.

주로 계급적 속성에 기반하여 정치체제의 관점에서 다당제, 의회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권리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을 살펴보았는데, 변호사제도를 중심으로 '법권'의 관점에서 시민적 권리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시민적 권리와 관련된 북한의 인식은 평등과 자본이라는 2가지 요소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정립되고 있다. 미국이 법에 의하여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법 앞에서는 빈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의 헌법에도 이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미국의 사법제도는 죄를 범한 부자는 죄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를 '무죄의 추정' 원칙에 따른 변호사제도에서 찾고 있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모든 피의자들에게 '무죄의 추정'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여 모든 피의자들이 자기의 무죄를 변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변호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비용으로 인해 부자나 가능한 일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돈없는 사람을 위한 공선 변호사 제도가 있지만 이들은 임금이 적고 실력도 낮은 '가난뱅이' 변호사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개인들의 의탁을 받아 채용되는 민간변호사는 보수도 많고 실력이 높기 때문에 부자들로부터 많은 보수를 받고 변호를 맡은 민간변호사들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부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공하지만 임금 외에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보수도 바라 수 없는 공선변호사들은 불성실하며 무책임하다는 것이다.⁴⁷⁾

2.3.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우월성 인식

이상에서는 주로 B규약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A, B규약은 국제적 규범으로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세계간에 이견이 노출되었는데, 북한의 입장도 이러한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B규약은 법률의 조문상으로 구체적으로 권리의 보장여부가 명료하게 규정될 수 있는 반면, A규약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B규약이 진부적 권리로서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인권침해를 다루고 있는 반면, A규약은 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획득해야 할 권리에 해당된다. 전자는 정치체제라는 체제안보와 관련된 미묘한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국가가 집단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 북한은 체제의 안보에 관계된 B규약보다는 A규약에 대해 최소한 법률상, 제도상으로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46)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제13권, 1998, p.465.

47) 「로동신문」, 2000.3.9.

개인의 '자유권'과 '평등권', '재산권'만을 내세우면서 추상적이며 초계급적인 권리를 '인권'으로 보면서 노동할 권리, 먹고살 권리, 무의부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 살 권리 등 사람의 삶의 권리, 생활의 제일차적인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재국주의자들은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⁴⁸⁾ 이러한 주장에서 보듯이 노동의 권리, 먹고 살 권리, 무의부탁자들과 고아들의 먹고살 권리 등 삶의 권리, 생활의 제1차적인 권리가 인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권리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은폐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해 '복지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명목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에서의 인민적 시책은 자본주의의 '복지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노동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라는 문제는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권리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의 하나라는 인식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노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민은 국가로부터 무상이나 다름없는 험값으로 식량을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과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온갖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어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A규약과 관련된 권리보장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⁴⁹⁾ 이러한 권리는 발전권과 연관되어 인식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의 결과가 전적으로 사회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므로 사회의 재부가 늘어날수록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⁵⁰⁾

이러한 법률상, 제도상, 인권인식상 우위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료, 교육, 노동의 권리 등의 우월성을 주장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발전권, 즉 경제적 수준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는 분야이다. 따라서 제도상, 인식상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90년대가 되면 경제상황의 악화로 이러한 권리보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즉, 오늘날 인민들이 "비록 유족한 생활을 한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생활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며 노동자, 농민과 사무원, 도시주민과 농촌주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르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상황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⁵¹⁾

48)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제13권, 1998, p.477; "장미꽃, 인권을 옹호하여", 『노동신문』, 1995.6.24.

49)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선집』 제11권, p.63.

50) 김종필, "재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분절", pp. 95~96.

2.4 주권관할권으로서의 인권문제 인식

북한의 우리식 인권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식별되어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주로 B규약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안보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냉전 종식이라는 세계질서의 변화로 인권이 세계정치의 핵심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인권이 국제회의의 중요한 의제의 하나를 점하고 있으며 '인권옹호'가 '열병처럼' 퍼지고 있는데, 인권문제가 논쟁의 차원을 넘어 국가간 관계분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인권을 국제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⁵²⁾

냉전의 종식으로 세력균형이 파괴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적 범위에서 배편주의를 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는데, 식민지시대와 같이 마음대로 침략과 약탈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침략과 약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신식민주의적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마취제'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마취제가 '인권'과 '자유'의 초국가성 논리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 인간은 평등하고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국가를 생활영역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어떤 권리와 자유가 향유되고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정책을 통하여 규정되고 인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인권을 주권보다 우선시 하는 것은 인권과 자유를 '국제화'하려는 것인데, '국제화'는 외세의 간섭을 합법화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⁵³⁾

인권의 보편성과 초국가성을 내장간섭을 위한 책동으로 규정하고 인권을 국가간 정치분제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중요한 대응논리는 '주권의 원칙'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신성한 자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문제는 매개 나라의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을 생각할 수 없으므로 인권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철저히 고수되어야 한다고 자결권을 내세우고 있다.⁵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의 보편

51) 김일성,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김일성저작집」 제42권, 1995, p.298.

52)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6.24. 주권이라는 국제정치적 속성과 인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Chris Brown, "Human Rights",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을 참조.

53) 「로동신문」, 2000.1.12.

54)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선집」 제13권, 1998, p.477.

상은 내정간섭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권은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 가치',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강도적인 논리, 흑백이 진도된 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권은 국권이며 국권은 곧 자주권으로서 자주권을 상실한 인민은 그 어떤 인권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이다.⁵⁵⁾ 이와 같이 국권과 주권이 우선이고 주권이 수호될 때만 인권도 보장된다고 하여 북한의 인식들 속에는 인권이 종속변수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인권, 보편성, 주권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은 2000년 3월 29일 제56차 인권위원회에서 북한대표가 한 연설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일부 세력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선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권존중 원칙의 재정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보호'라는 간판 아래 무력에 의해 약소 독립국가를 복속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권은 모든 국가와 민족의 생명선으로 인민은 국가의 관할 영토 내에서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법질서 제적 조치에 의해 보장된 인권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 주권이 없는 인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권존중의 원칙이 재정의되거나 약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재강화되고 공고해져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시각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다.⁵⁶⁾

3. 국제인권규범과 북한의 대응

3.1 「세계인권선언」과 북한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편적 기준'을 부정하고 '우리식 인권'에 입각한 인권론을 펴고 있지만 북한 역시 각종 국제인권규범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따라서 당사국으로 자신이 가입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식 인권' 기준을 내세우는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이 제시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논리를 구사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국제인권규범은 「세계인권선언」인데, 북한은 각종 문헌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채택 시기, 내용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인류사회의

55) "장대운 인권을 옹호하여", 「보통신문」, 1995.6.24.

56) Statement by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Fifty Six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29 March, 2000.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것은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초로 되며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것은 인류의 량심을 보독하는 반행을 초래”하였다”는 전분의 내용과 “기본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남녀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다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⁵⁷⁾ 이러한 문건 등을 통해 북한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규정한 「세계인권선언」의 기준을 수용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언론에서 논설을 발표하고 있는 데서도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설들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과 기준을 전파하고 이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북한의 인권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논설들은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대립구도 속에서 인권을 인식하는 북한의 인권관을 선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계급성과 서방식의 인권에 의한 사회주의 압살도구라는 인식들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역사상 각종 인권선언이 상이한 계급적 이해를 대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세계인권선언」의 계급적 속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인 특권계층의 자유와 권리만이 절대시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은 유린되는 돈을 가진 부자들의 특권이라는 계급적 인권관을 반복적으로 선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서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자유가 없다”고 ‘깨변’을 늘어놓지만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인권이 주권우에 놓인다”라는 논리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인권기준’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무력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인권관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반인민적인 ‘인권관’을 ‘국제적기준’으로 주장하면서 강요하고 있다고 인권을 국제정치사안으로 인식하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인권옹호’를 인정하면서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인권은 사회주의인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선진하고 있다.⁵⁸⁾

이러한 논설들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인권의 내용들을 시행하는 기준에서는 보편적인 기준의 존재를 부인하는 북한의 인권관이 투영되고 있다. 체제에 따라 인권선언 내의 인권을 실현하는 기준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기본태도는 북한의 우리식 인권 기준이 인권선언을 구현하는 최상의 방식이라는 점을 대내적으로 선진하는데 세계인권선언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기준’이라고 내장간섭을 강요하는 대외적인 움직임에 대한

57) 정경섭,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p.12.

58) 「조선중앙통신」, 1998.12.10; 1999.12.10; 2000.12.10.

대응을 제기할 때 「세계인권선언」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인권재판관’ 행세를 한다는 미국의 인권을 비난하기 위한 정당화의 근거로서 세계인권선언을 활용하고 있다.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첫 머리에서 생존권과 평등권 등을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으로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생존권과 평등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미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데 세계인권선언을 근거로 들고 있다.⁵⁹⁾

3.2 「국제인권규약 A규약」과 북한

3.2.1 최초보고서와 북한의 대응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A규약에 가입하였고 최초보고서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였다. 1984년 12월 18일 A규약의 제6조~제9조와 관련된 사항, 1986년 7월 8일 A규약의 제10조~제12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이사회는 1987년 3월 23일 1차 심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1989년 1월 14일 A규약의 제13조~제15조와 관련 사항에 대한 세 번째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동 위원회는 1991년 11월 27일 2차 심사를 실시하였다.⁶⁰⁾ 첫 번째 보고서와 두 번째 심사기간에 7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제적 상황과 권리의 보장이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 A규약에 대한 상황변화를 유념하면서 보고서 내용과 심사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보고서 내용에는 주로 선전적인 차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보고서 내용과 현실과의 괴리를 파악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1차 보고서는 규약 제6조에서 9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회주의 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 등의 조문을 통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 실업자 전무, 아동의 노동에 대한 법적 금지, 11년 의무교육의 실시, 평등한 노동과 평등한 보수, 남녀 동등한 근로권 및 동일한 보수, 여성에 대한 배려 등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보장을 선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치료, 병원 등 의료시설, 평균수명 등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1차 보고서의 특이사항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조선직업총동맹의 목적과 기능이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것과는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당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동맹은 노동계급의 대규모정치조직으로 노동계급과 노동당을 연

59) 「노동선문」, 2000.4.2.

60) 관련된 유엔문서는 E/1984/6/Add.7; E/1986/3/Add.5; E/C.12/1987/SR.21, 22; E/1988/5/Add.6; E/C.12/1991/SR.6, 8, 10.

결사키는 역할을 하는데, 동맹의 구성원들을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의 혁명적 이념으로 무장시키고 이데올로기 교육의 작업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인으로서 기업의 운영에 참여시키고 3대혁명, 붉은기운동을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가속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사회주의헌법, 인민보건법, 사회주의노동법, 어린이보양교육법, 환경보호법 등을 통하여 모성보호, 아동의 보호의 상황, 충분한 식량의 권리, 충분한 의복의 권리, 주거의 권리로 세분화한 충분한 생계조건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예방의학, 의사담당구역제를 강조하면서 콜레라 등의 전염병이 완전히 퇴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특별히 환경보호에 대하여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세 번째 보고서는 1977년 김일성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헌법의 관련 조항 등을 근거로 11년 의무교육, 무료의무교육체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1년 의무교육을 마치면 희망, 재능, 적성에 따라 고등교육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 정규고등교육도 무료이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여행, 하이킹과 같은 집체활동, 교사훈련 시스템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맹의 완전퇴치, 모든 성인이 중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습득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통한 문화적·물질적 조건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최초보고서는 권리보장의 우월성을 법률근거를 통해 선전하면서 경제난 이전이기 때문에 선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를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최초보고서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우월성이라는 인권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반영되고 있다.

3.2.2 보고서 심사와 북한의 대응

북한의 보고서를 통하여 권리보장의 실상에 대하여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심사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사안과 북한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1, 2번째 보고서에 대한 심시시 주요 논쟁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고서에 설명한 노동조합의 결성권이 관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규약은 노동조합의 가입뿐만 아니라 결성권도 규정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노동조합의 결성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시도 여부와 그 결과, 노동조합의 내적 민주화 보장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서구의 노동조합과 다른 점을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노동조합

은 서구의 노동조합과는 달리 자신의 이익, 공장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기술교육을 개선하고 안전규칙과 기준을 준수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스트라이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내적 민주화, 새로운 조합의 결성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업과 보건분야 등의 국제협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가 아니고 사회주의국가, 제3세계국가 북한을 존중하는 서방국가와 문화적, 기술적, 상업적, 기타 연계를 맺고 있는데, 농업분야에서 아프리카에 농업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는 등 국제협력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내적 민주화에 대한 관심으로 정부가 제공한 정보 이외에 외부에서 제공한 정보가 없는 문제점,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내부의 토론상황,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견해 표현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 사회정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대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그러한 반대표현의 존재 여부,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한 정부의 사회, 경제정책에 대한 공공 논의 존재여부, 1인당 GNP, 이웃나라의 GNP, 군사비 지출 비율 등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당과 국가의 시혜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 민주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4년의 시차를 두고 실시된 세 번째 보고서에 대한 두 번째 심사에서는 주로 정치적 권리와 연관 속에서 A규약의 권리보장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도 B규약이 보장되어야만 이를 통해 보장되는 권리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B규약과 연계된 형태로서 A규약의 이행여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먼저 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처벌의 위험 없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존재여부를 통해 A규약의 권리 이행여부를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극장과 텔레비전에서 어떤 종류의 작품이 창작되고 공연되는 지, 국가와 당이 조직한 문화활동 이외의 문화활동의 존재여부와 그러한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여부를 질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예술창작활동은 자유로우나 책이 발간되고 예술작품이 전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발표를 위해서는 국가검열위원회에 작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위원회는 당 간부가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당의 간여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국가검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작품은 사적으로 즐길 수는 있지만 출판, 전시를 할 수 없는데, 모든 국가가 영화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정당화 논리를 구사하고 있

다. 그리고 국가와 당이 만든 지침이 그러한 원칙에 반대되는 모든 작품을 금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책결정과정의 개방과 민주적인 절차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특히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된다는 주체철학이 무엇이며 주체사상적 접근이 규약의 13조와 양립하는지 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 수령이 모든 교육문제에 대해 “완벽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면 어떻게 “진정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커리큘럼의 모니터 여부 및 그 주체와 개선과정, 커리큘럼의 구상을 위한 정기절차, 고등교육의 입학에 위한 객관적 기준의 존재 여부와 존재할 경우 객관적 기준의 공개, 교육체계에 관하여 상이한 견해를 표현할 실질적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지 여부, 교육체제발전에서의 국가의 독점을 주목하면서 그 과정에 학부모, 학생, 종교집단, 교사 등 다른 참여자가 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주체사상과 교육의 기본이념과의 관계에 대해 정부의 교육, 과학, 기술과 문화에 대한 관심은 주체의 기본원칙으로부터 유래된 이념에 기반 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인간을 모든 활동의 중심에 놓는다고 주체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사과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민주적 참여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교육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 사회조직, 국가가 교육을 개선하는데 관여하고 있으며, 학교는 한 달에 한번 학부모교사지도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들이 변화를 위한 제안을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와 당의 영도 이외에 A규약의 권리 향유를 주도할 사적 영역의 존재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어떤 수준에서 사설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그러한 기관의 존재 여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그러한 학교를 설립하는데 이해를 표명하고 있는지 여부, 당노선과 다른 개인이 사설출판시설을 갖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당과 국가 이외에 국가의 문화생활을 다루는데 관여하는 구조가 있는 지 여부, 국가교육체제와 동등한 사설교육체제가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예술, 문학작품의 발전을 인도할 조직이나 기구의 존재에 관한 질문과 관련하여 당과 국가만이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다. 사설출판사, 사설영화사는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사적 조직으로부터 사설출판사를 설립하겠다는 내적 요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답변하고 있다. 당과 국가 이외의 학교조직과 관련하여 많은 학교가 종교재단, 여성동맹, 농민동맹과 같은 사회조직에 의하여 설립되어졌으며 컴퓨터훈련과 같은 소수의 사설학교와 재능 있는 아동을 위한 특별학교가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내외개방과 문화적 권리의 향유라는 관점의 질문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작품의 질이 인정된 해외의 걸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 여부, 외국영화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여부, 외국의 발간물에 대한 학생들의 열람가능 여부 등을 질의하고 있다. 외국작품의 개방과 관련된 A규약 권리의 향유에 대하여 외국영화는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방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영화는 인도, 소련, 중국, 이집트, 알제리 등으로부터 들어오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미국의 고전작이 상영되었고 북한의 어린이들은 미국으로부터의 만화영화를 즐기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서적의 발간, 외국서적의 번역 등과 함께 과학과 교육분야에서 68개국과 180개 이상의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국제협력국을 통한 개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헌법 65조는 외국과의 문화교환과 과학협정을 규정하고 있다고 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개방과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인적 교류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영어, 불어 등 언어장벽으로 외국문화의 습득에 장애가 된다고 개방에 소극적인 상황에 대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재정과 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와의 연관성과 관련된 질문이다. 국가가 교육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는지 여부 등 당시는 경제난이 본격화된 시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A규약 권리의 향유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예산의 18%가 교육과 문화에 할당되고 있으며, 학급당 아동수는 30~35명,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수는 20명이라고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목적 등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여부, 종교교육의 형태, 학생들이 자유롭게 종교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에 대하여 학부모가 교회, 사찰 등에서 아동이 종교교육을 받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대학의 종교학부로 진학할 수 있다고 종교학부의 존재사실을 최초로 공개하고 있다. 규약의 권리 등 인권교육에 대하여 인권은 교육기관에서 별도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아동의 권리와 규약에 관한 정보가 주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번역본이 도서관과 학교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특별강연을 통해 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체육교육의 목적은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유일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심사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사회는 보고서의 내용이 법률적이론적 측면에 치중하여 있고 실제 인권상황을 반영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A규약과 B규약이 발

개의 규약체계가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당사국의 권리이행 실태 심사에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규약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통계수치의 정확성과 사실에 대한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끝으로 A규약의 권리 이행문제는 제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A규약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2차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B규약에 대해서도 16년만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B규약보다는 A규약을 중시하는 북한의 인권개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인권규약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나타내는 태도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사회가 2001년 4월 30일, 5월 1일 이틀간에 걸쳐 우리 정부가 제출한 A규약 2차 정기보고서를 심사할 때 북한대표도 참석하여 보고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심사내용과 과정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3.3 「국제인권규약 B규약」과 북한

3.3.1 최초보고서 및 추가보고서와 북한의 대응

북한은 1981년 9월 14일 유보 없이 B규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선택의 정서와 사형폐지를 위한 제2의정서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은 1983년 B규약의 규정에 따라 1983년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보고서 작성 양식의 미흡으로 인하여 1984년에 추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⁶¹⁾

최초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규약에 규정된 권리의 이행상태를 조항별로 분류하여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B규약의 권리이행과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노동자의 인격과 권리의 불가침성, 완전보장, 민주적 선거권, 피선거권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비롯하여 사회·정치활동에서 진정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제공 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나열하면서 보장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법규의 조항, 실천적 방도와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일성의 시해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B규약의 이행실태를 보고하는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B규약보다는 A규약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양적으로 더 많은 부분을 할당하여 상세하

61) CCPR/C/22/Add.3; 법무부, 「국제인권규약보고서」, 법무자료 제142집,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고서 작성양식에 대해 지침서를 작성하여 그에 입각하여 작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HRI/GEN/2/Rev.1.

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자국의 권리이행상황을 보고하는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의 인권침해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면서 부각시키고 있다. 끝으로 국제사회에 대하여 인권과 관련한 북한의 견해를 역으로 '권고 및 견해'라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교육과 관련하여 각국이 실제적인 현실과 조건에 따라 초·중등 의무교육의 점차적인 실행을 고려하기를 바라며, 장기적인 목표로서 고등의무교육의 실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이사회에서 작성되고 있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안의 작성에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끝으로 남한이 인권침해국가로 전환된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권이사회가 남한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사태에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고 남한에서 인권을 억압하는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조치의 제거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초보고서 작성단계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조차 미비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기준의 수용수준은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다. 또한 B규약에 관한 보고서이면서 A규약의 권리를 보다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은 국제인권규범의 어느 부분에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이 당시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무상의료, 무상의무교육 등 북한이 자랑하는 권리의 보장에 커다란 애로사항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한의 인권침해를 역공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인권문제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과 무관하게 상당히 자신감을 표출하는 시기로 판단된다.

이러한 자신감과 별도로 북한은 인권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인권규약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거하여 1984년 추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추가 보고서에서는 이사회의 작성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 근거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북한의 국내법규를 통하여 모든 규약의 권리가 이행되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선전하는데 그치고 있다.

3.3.2 유엔인권소위의 결의안 채택과 B규약 탈퇴선언

북한이 최초보고서 제출 이후 5년마다 정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997년 8월 21일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여형의 자유 보장 등 B규약 관련 사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⁶² 그런데 북한은 결의안이 채택되기 직전인 8월 18일 자

62. E/CN.4/SUB.2/RES/1997/3. 1998년 8월 19일에도 인권소위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 E/CN.4/SUB.2/RES/1998/2.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결의안의 채택된 내용은 대

네바주제 북한대표를 통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하여 인권규약들을 유보없이 비준하였고 당사국으로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탈퇴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인권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초안이 기초된 것은 북한의 주권과 위엄을 손상할 의도로 인식된 수밖에 없으며 북한을 고립시키고 절식시키려는 적대세력의 정치적 기도에 대항하여 '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코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⁶³⁾

이 결의안이 인권소위에서 채택되자 예고한 대로 북한은 1997년 8월 23일 국제인권규약을 탈퇴한다는 서한을 기탁자인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인권소위의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의 유린이며 내정간섭적인 '악랄한' 도전행위이므로 국제협약에서 탈퇴하는 것은 '정당한 자위조치'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결의안을 주도한 나라들을 불순세력으로 규정하고 협약의 본연의 사명으로부터 이탈하여 자주성을 건지하려는 나라들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불순세력들의 어용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탈퇴하는 것이란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불순세력들이 인권문제로 계속 자주권을 해치며 다른 협약들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러한 협약에서도 탈퇴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⁶⁴⁾

북한의 B규약 탈퇴선언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계속되자 북한은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북한대표 연설을 통해 입장을 다시 표명하고 있다. 서방을 적대세력으로 설정하면서 이들이 북한의 인권상황과 「공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탈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적 도발을 제현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인권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금을 하지 않은 채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주권을 상실한 인민에게는 그 어떤 인권도 있을수 없다"는 북한식 인권관념에 입각하여 '인권의 구실' 하에 자주권과 존엄을 해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전명하고 있다. 북한의 기본입장은 인권을 구실로 한 불순세력의 내정간섭에 대하여 주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탈퇴한 것은 '정당한 자위조치'일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위의 어용도구화를 배제하고 객관성, 공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⁶⁵⁾

해서는 제성호,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 평가와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를 참조.

63) E/CN.4/Sub.2/1997/43.

64) 「조선중앙통신」, 1997.8.28.

65) 「조선중앙통신」, 1998.4.24.

이러한 탈퇴선언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규약 B규약을 비준, 가입 혹은 계승한 당사국이 B규약의 실효를 통고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6을 결의하였고 10월 북한에 탈퇴불가를 통보하였다. 또한 B규약을 관장하는 인권이사회뿐 아니라 각 규약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의장회의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이사회에서도 탈퇴가 불가하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⁶⁶⁾

3.3.3 2차 정기보고서와 북한의 대응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1997년 8월 18일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를 통하여 탈퇴를 경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규약의 실행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999년이 되면서 1984년 추가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이행하지 않고 있던 2차 정기보고서의 제출을 표명하기 시작하는 등 소극적, 부정적 자세에서 적극적, 능동적 자세로 전환하고 있다.⁶⁷⁾ 경제난의 악화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세기에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북한은 2000년 3월 2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제인권규범 기준의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2차 정기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⁶⁸⁾ 먼저 최초 보고서와는 달리 헌법 수정 및 보완, 형법의 개정(노동교화기간의 단축, 사형조항의 감소), 형사소송법의 개정, 민법의 제정, 가족법의 채택, 조약법의 채택 등 법률적 차원에서 규약의 권리이행을 위한 그 동안의 조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 민사소송, 형사보상 절차 등 권리이행을 위한 손해배상 절차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둘째, 규약의 전파를 위한 노력과 국내법과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조약법을 채택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A규약과 아동의 권리협약 보고서 심사시 경험을 바탕으로 규약을 공공기관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자세하게 거론하고 있다.

66)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6은 CCPR General comment 26, General Comments, GENERAL COMMENT 26, Continuity of obligations, Sixty first session, 1997, E.C.12/1997/SR.27.

67) E/CN.4/SUB.2/RES/1999/5, Amnesty International, Annual Report 2000, 61쪽 북한부분.

68) 보고서 전문은 CCPR/C/PRK/2000/2, 4 May 2000. 2차 보고서에 대한 대표자인 연우는 최의철,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사보원, 2001, 67쪽을 참조.

셋째, 규약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 정책을 부각하기 위해 '판단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내 평등의 측정지표'라는 소분류를 통해 남녀평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함께 평균수명과 영유아 사망률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1995년 이후 자연재해와 외부적 요인, 식량부족과 의료품 부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영양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아동의 권리협약 보고서에서는 권리저하 사실을 보고서에는 언급하지 않은 채 전의, 응답과정에서 시인했었던 반면 보고서 내용에서 권리저하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끝으로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실태와 관련되어 제기되어 온 사안에 대해 북한은 나름대로 내용을 하고 있다. 먼저 사형가능범죄 수의 내복 축소 등 '사형의 제한과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교화와 형벌체제 이외에 별도로 법과 질서를 어긴 범법자에 대해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법률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제노동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 동안 북한의 인권중 국제사회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여행과 기주의 자유, 귀국과 출국의 권리에 대해 각급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여행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해외여행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고만 설명하고 있으며 공민을 해외로 추방할 법적 기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종교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구성, 공개 또는 비공개된 종교행사, 종교를 가르칠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조선기독교연맹 중앙위원회는 평양신학교,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는 불교 학교,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는 천도교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종교단체와 종교교육기관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교리나 주장을 담은 출판물 간행이 허용되고 있으며, 1989년에 학부형들의 요구에 따라 김일성 대학에 종교학부를 개설하였다고 A규약 및 아동의 권리협약 보고서에 이미 반복하여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분야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다당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과 관련하여 기존 정당에는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이 있지만 신생정당의 형성을 요구하는 대중적 요구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정당조직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기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권연구협회, 장애인지원협회, 법률가협회, 민주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 농민근로대중조합, 청년동맹, 여성연맹, 문화예술조합총연맹, 아프리카-아시아연대위원회 등도 기본사명 이외에 인권을 위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공장, 기업소 또는 사회협동 조직의 노동조합과 외국기업과 같은 사기업의 노동조합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전자는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소속

조직이나 기관의 주인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자신들의 권리를 기업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시위를 할 필요도 없으며 정치조직의 역할도 한다고 A규약 보고서 심사시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외국기업 등 사기업의 피고용인들은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권리와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행동이 가능하다고 국내와 외국기업을 구분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상에서 드러난 사실은 정당에 대한 인식에서처럼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조선의 특수성을 들어 새로운 해석논리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B규약 권리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북한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2차 정기보고서에서는 한층 세련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최초보고서 및 추가보고서와 비교하여 2차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조문, 통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방식만으로 평가할 때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기준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법제의 변천사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북한이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취해온 법률, 기타 수단에서의 조치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각 조에 대한 설명도 분야를 자체적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끝으로 규약의 조건과 비교하여 짧은 재판기관과 상대적으로 긴 공판전 구금기간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두 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데서 보듯이 북한 내부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내부적인 논의가 전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3.3.4 보고서 심사와 북한의 대응

2차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북한은 형식상, 법률상으로는 상당부분 국제기준의 수용에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이 취한 대응논리와 국제인권규범간에는 여전히 괴리가 존재하고 나아가 현실인권상황과도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이사회의 문제제기와 북한의 대응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NGO들의 견해 및 정보 제공 등을 종합하여 4월 5일 29개 항목에 달하는 시정건의서를 사전에 북한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7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2차 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7월 27일 최종검토의견를 발표하였다.⁵⁹

59) CCPR C 72 L PRK; CCPR CO 72 PRK.

인권이사회의 주요 관심사안과 북한의 대응논리를 살펴보면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의 국제인권규약의 이행여부가 주된 관심사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규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한 '조약법'의 채택과 규약에 대한 최고의 법률적 유권해석의 권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다는 보고성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국내법 규정이 없는 경우 국제협약이 우선된다고 답변하면서 사형최소연령을 실례로 들고 있다. 국제규약과 국내법이 상충할 때 협약에 대한 최고의 법률적 유권해석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있으나 재판소의 협약 적용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규약과 국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독립적인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관심이다. 인권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독립적인 NGOs의 법적 지위와 역할, 단체 숫자들에 관한 정보·자료, 신소와 청원을 처리하는 독립적인 기구의 존재 여부,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s)의 존재여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독립적인 인권전담 NGO에 대하여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 여성동맹, 학생위원회 등과 같은 사회단체들이 자신의 기본사명과 함께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병행하는 수준에 있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인권연구협회, 불구자지원협회,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등의 단체가 인권분야에서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들 독립적인 인권전담 단체들은 자체 강령과 규약에 따라 인권증진을 위한 연구활동, 해당 전문분야에서의 인권보장 실태에 대한 이해와 조사활동, 집체적인 토의와 결정을 통하여 최고주권기관 및 해당 정부기관에 대한 입법건의안, 행정적 건의안을 제기하거나 개별적 인권문제에 있어서의 처리안 등을 제기하고 국제적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신소청원법에 따라 사회의 최말단 개별적 기관·기업소로부터 최고주권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자유롭게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는 필요하지 않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이번 심사를 앞두고 북한내 NGO로부터 전달받은 정보가 없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자 "활동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돌아가게 되면 이런 의견을 해당 NGO에게 알려주겠다"고 답변하였다. 즉, 독립적인 NGO의 존재를 적극 홍보하면서도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질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미흡을 인정하는 등 홍보와 시인을 병행하여 대응하고 있다.

셋째, 정치체제와 인권과의 관계에 대한 대응인데,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식 인권관에 기초하여 답변하고 있다. 먼저, '정치체제를 국민들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결정한다'는 자결권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정치제도를 포함한 사회제도의 정립, 발전과정은 위민이천의 이념에 따라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구현되어 온 노정이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즉, 식민지의 폐허 하에서 사회주의제도의 확립은 그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인민의 절실하고 성숙된 요구를 바탕으로 선택된 것이며 인민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주체사상과 종교와의 관계 즉, 국가이념인 주체사상과 종교적 신념이 양립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계승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인 동시에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해 복무하게 만드는 정치학설로서 생활에 발전적으로 구현되고 있다고 주체사상이 인권의 기반이라는 우리식 인권관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에서 '우리식' 인권이 곧바로 주체사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주체사상에 접근하기보다는 종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치고 있다.

특히 정치체제, 다당제와 관련하여 정당설립의 요건과 절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새로운 정당을 허용하는 절차는 없다. 앞으로 있을 경우 등록절차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당 설립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 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등 3개 정당이 있으나 "새로운 정당을 조직하려는 세력이 현실적으로 없어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조직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다"고 정당설립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 입각하여 내적 요구가 없기 때문이지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방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2장에서 살펴본 다당제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는다고 있다.

종교의 자유도 내적 요구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구체적인 종교시설의 숫자, 종교별 신도 수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북한에서는 원래 교인들이 많지 않았다. 3년간의 조선전쟁기간에 교인들이 적지 않게 죽었다", "나이든 교인들이 세상을 떠났으며 세세대 사람들은 종교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간섭하거나 장려도 하지 않는다"고 종교인이 많지 않은 이유를 역으로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어 국가가 종교에 대해 간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넷째, 주요 관심사안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상이한 개념정의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강제적인 방식에 의한 실종, 즉 행방불명에 대한 답변 요구에 대해 행방불명은 자연재해에 의한 실종만으로 정의하면서 북한을 적대하는 측에서 퍼뜨린 허위 날조로 강제적 혹은 분의 아닌 실종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종문제는 당사국이 모른다고 해서 발생 사실이 부인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위원들이 반박하고 있지만 실종의 정의에 대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접근하면서 체제안보라는 관점에서 적대세력의 음해로 대응하고 있다.

개념정의라는 관점에서의 또 다른 대응이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분, 가을철 나무심기 등 국토건설 사업을 벌이고 학생들이 학습과 생산노동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다. 공공작업 대상들에서 강제 혹은 의무노동이 적용된다는 주장은 이러한 현상을 업무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라와 자신, 즉 사회를 위한 '애국적 노동'으로 북한에서는 이를 강제노동, 혹은 의무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논리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을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보는 북한의 독특한 개념이 담변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다.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노동의 권리와 의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데 노동을 권리만이 아닌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생활을 진정으로 고양하고 고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노동을 의무로 강조하는 북한의 관점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헌법은 처벌법이 아니며 형법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죄로 간주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헌법상의 노동의무조항은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집회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 등 공공기관들이 필요와 자체 계획에 따라 동원하는 군중집회를 '집회'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1998년의 언설이기는 하지만 유엔인권위에서의 북한대표 언설에서 "구라파동맹이 언설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유엔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의 방분문제를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에 대한 무지의 표현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많은 유엔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이 장기 또는 단기 채유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있다"⁷⁰⁾는 주장에서 보듯이 인권이사회가 집중적으로 기문한 개방성과 접근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다섯째, 2장에서 언급한 주권의 원칙과 인권관에 기초하여 체제안보라는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식이다. 사형성립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사형가능 범죄의 대부분이 정치적 범죄라는 지적에 대해 북한측 대표인 리철 대사는 서두 발언에서 분단이 인권의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남용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그는 법률적으로 교전상태에 있는 한반도 징세의 특수상황 하에서 "사회주의를 암살하려는 적대국의 준동과 그에 추종하는 국내반동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설명하면서 조국이 통일되어 외세침략과 간섭, 남북의 적대적 대치상태가 없어질 때, 인민의 생활에 대한 외부의 침투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오늘날의

70) 『조선중앙통신』, 1998.4.24.

경제적 난관을 이겨내어 남부럽지 않은 강성대국을 이루어낼 때 극형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두발언에서 인권에 대한 북한의 중요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인권이 국가의 자주권, 자결권 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국가인민의 정치, 경제, 군사적 안정은 개개 인권보장의 전제이고 담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들도 역시 국가주권을 전복하려는 무장반란을 피하거나 국가기밀을 넘겨주는 행위 등 조국반역행위, 민족반역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고 국제적 관례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⁷¹⁾

교화소 외에 비밀 ‘감옥 캠프’(secret “prison camp”)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밀 ‘감옥 캠프’의 존재설은 북한을 비방·증상하려는 사람들이 날조·유포시킨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주권국가로서 하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없는 사실을 자꾸 얘기하라고 하는데 대해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참으로 불쾌하다”며 주권의 원칙을 내세워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도청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도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세워진 북한에서 주민들의 사생활을 도청 등을 통한 불법적 방법으로 내적 감시를 한다는 주장은 적대세력이 퍼뜨린 낭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체제유지적 관점에서 답변하고 있다.

개방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답변도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대응논리가 구사되고 있다. 국제적십자사의 구치소와 교화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보장 여부에 대해 한반도의 첨예한 정치·군사적 환경, 최근 인권문제를 북한에 반대하는 불순한 의도에 악용해 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곤란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AI, 국제고문 반대기구, 여성문제 특별보고관 등이 북한을 방문하여 교화소를 직접 보고 학자들과 토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북한의 현실을 왜곡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기 때문에 해당기관에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는 외교관들의 입장과 인권을 담당하는 국내기구 간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엔 인권소위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여행의 자유에 대해서도 체제안보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국내 여행에 대한 행정적 허가의 필요성 여부 및 외교관이 아닌 북한 주민의 외국여행 건수, 지난 3년간 외국여행을 한 일반주민의 수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다. 여행의 자유는 전적으로 보장하지만 국민들은 여행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여행증의 발급목적은 북한이 처한 환경에서 간첩, 파괴, 알레분자

71) Press Release, Human Rights Committee Starts Examination of Repor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 July, 2011.

들의 준동을 박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답변하고 있다.

여섯째 대외기방에 대한 대응이다. 인도적 지원활동과 관련하여 국제단체들과 사전에 준수해야 할 기준을 합의하였는데, 분배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장되지 국제기구들은 접근이 불허되는 지역에서는 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할 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활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구호단체인 「기아반대행동」이 대해 취한 조치는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이지 모니터링 활동을 제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해외여행자 수의 증가 등 통계를 제시하면서 해외여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여행이 기각된 통계를 제시하면서 모두 다른 나라의 동의를 없었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혀 내적 통제를 부인하고 외적 요인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일곱째 국제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 정면 돌파하는 자세도 취하고 있다. 외국에 난민지위를 요청하거나 강제로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법적·실질적 대우에 대해 “외국에 망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실제적으로 개의치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특히 2000년 1월,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사람은 7명이 아니라 6명이며 병단과 근황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7명의 난민들 가운데 재탈북에 성공,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나머지 1명을 고려한 답변으로 생각된다.

여덟째, A규약과 연관된 권리에 대해서는 경제난으로 인한 권리저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들의 기본욕구 충족 및 식량을 얻을 권리를 포함한 생명권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종자와 야채의 개발, 동물들의 식용 도입, 양어 등을 통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다른 분야의 국제규약의 이행을 위한 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난을 자연재해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먹는 문제 이외에 생필품, 현대적 살림집, 봉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핵심고리가 전력문제의 해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동학대 등 가정안전을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질의에 대하여 최근 심각한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가정생활에서의 불안정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홉째, 증거제시에 대해서는 마지 못해 인정하고 있다. 공개처형에 대해서는 공개 처형에 관한 주장이나 보도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1992년 친조부모를 살해한 주수만은 지역 주민들의 군중적 요구로 딱 한번 공개처형을 실시하였다고 사실상 공개처형을

서인하고 있다.

열째, '우리식 인권'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논리를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집단주의와 관련하여 헌법에 사상적 통일, 노동계급의 영도, 사상혁명, "온 사회를 집단적으로 동지적인 것으로 만든다", 조선노동당의 영도원칙, 인민민주주의 독재원칙,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등 집단주의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은 개인을 위한 것이며 북한의 국호 중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형태의 독재도 인권이념과 배치되며, 인권의 집단주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 조선의 독특한 사회주의인지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사상적 통일, 노동계급 영도, 사상혁명, 사상의식, 사회주의 완전승리 등의 독특한 용어가 헌법에 반영되고 있고 집단주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조선식 사회주의라는 점을 긍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집단주의 원칙은 집단과 개인을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융합시키는 원칙이다. 개인 혹은 개별적 사람을 떠난 집단을 상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을 떠난 개인을 생각할 수 없다. 북한사회에서는 일체 집단과 개인의 견해가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는데 집단주의는 이것을 구현한 사회적 원칙이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른 조건에서 집단과 개인간의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이러한 불일치 문제는 개별적 인간의 인식상 제약으로부터 생기는 극히 일시적·부분적 현상일 따름이다. 그러한 불일치는 개인이 집단에서 생활하는 실천적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2장에서 살펴본 집단주의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에 입각하여 답변하고 있다.

노동당의 영도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은 집권당으로 인민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종합 반영하여 노선을 세우고 국가활동 방향을 밝혀주고 국가기관들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활동하도록 정책적으로 이끌어주는 '정책적 지도'라는 영도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당의 영도는 결코 국가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간섭이나 대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가기관들의 독자성과 자립성을 철저히 전제하고 있다고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리철 대사가 서두연설에서 주장한 '우리식 인권제도'에 대하여 우리식 인권 개념이 보편적 인권을 부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인민들의 사상의식을 높인다" 등 헌법상의 표현은 규약이 인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과 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리철 대사가 인권사상의 기본을 설명하면서 "인민들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곧 인권기준"이라고 한 우리식 인권관의 핵심 표현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의 원칙, 규약에 따르는 당사국의 의무와

일지하는지 법리론적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수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소수자가 원하는 것도 '인민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기준으로 충족될 수 있는 지 질의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식 인권관에 대하여 북한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있지만 2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북한이 리철 대사의 발언을 통해 '인민이 좋아하는 것이 인권기준'이라고 북한식 인권관을 유엔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제사회가 유엔의 인권이념에 입각하여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우리식 인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작성된 인권이사회의 최종검토의견서는 북한의 국제인권규범 수용수준과 북한의 대응논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담고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이사회의 최종검토의견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협약과 배치되는 사형제도 등 일부 형법조항의 개정과 공개처형에 대한 제도적인 금지대책 마련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수용수준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자료의 부족과 접근의 제한이라는 공개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실질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부족과 협약 이행에 관한 사실과 자료의 부재 등에 유감을 표시하고 국제인권단체와 관련 국제기구의 정기적인 접근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교화시설 등 구금·투옥장소에 대한 독립적인 국내 및 국제시찰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인권증진과 보호와 관련한 필수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요청했다. 또한 개방성과 관련하여 특정 간행물을 금지하는 사유를 구체적인 명시하고 일반 국민의 외국 신문 구독을 금지하는 조치를 삼가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신뢰성 결여'라는 차원의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기자들의 해외 여행 제한을 완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국가안보의 위협'의 개념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북한이 인권에 상애가 된다고 내세우는 분단논리 즉, 체제안보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였다. 독립된 감사제도의 결여가 인권보장에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행의 자유, 종교별 신자와 시설, 신앙생활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 여성의 지위, 강제노동 등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과 보완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대응논리도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실제적 현황에 대한 자료의 요구가 강도 높게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조급씩 내부적인 적용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와는 별도로 북한은 보고서 심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등 국제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대표단은 7월 20일 인권이사회의 심사가 종료된 이후 곧바로 본국으로 철수하지 않고 제네바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위원들과의 개별접촉 등을 통해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는 등 설득노력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⁷²⁾ 국제사회로부터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식량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방·개혁과 더불어 인권분야에 대해서도 개선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주된 이유로 작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3.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북한

3.4.1 최초보고서와 북한의 대응

북한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아동분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B규약 최초보고서의 '권고 및 견해'에서 보듯이 이미 1983년 인권이사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입장에 따라 북한은 1990년 9월 21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1996년 2월 13일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위원회는 1998년 5월 20일, 22일 양일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6월 5일 최종검토의견서를 발표하였다.⁷³⁾ 북한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 행정부처의 전문가들로 '보고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보고서는 협약비준일로부터 1994년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김일성의 시체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일제 하에서 폐허가 된 상황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무상치료, 의무교육 등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72) 「연합뉴스」, 2001.7.27.

73) 관련 유엔문서는 CRC/C/Add.41; CRC/C/SR.458; CRC/C/SR.459; CRC/C/SR.460; CRC/C/15/Add.88.

보고서는 9개 장, 총 20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북한정부의 입장과 노력, 협약가입의 목적과 중요성, 보고서 준비를 위한 조치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대별하여 보편 무료의료체계 및 11년 무료의무교육체계의 확립, 국가의 책임 하에 어린이의 양육,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배려, 어린이 고용 금지 등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하여 자신감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아동에 관한 보고서는 다른 규약의 보고서에 비교하여 내각에서 아동문제를 다루는 각 부처 내의 실무부서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문제를 연구하는 각종 연구소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서론을 보면 B규약 최초보고서, A규약 최초보고서에 비해 유엔의 요구기준에 입각하여 잘 작성되고 있다.

제2장 일반적 조치에서는 국내법과 정책에서 협약의 요구조건의 구현, 아동정책관련 정책의 수행과 협약의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구조, 협약의 원칙과 규정의 전파를 위한 조치, 국제협력과 교환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협약의 규정과 원칙을 전파하는 노력과 협력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정기보고서를 고지하였고 복사본을 중앙, 시, 군에 배포하였다고 부각시키고 있다. 제3장 아동의 정의에서 북한은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라는 1990년 9월 5일 채택된 민법 제20조에 따라 협약보다 1살 아래인 17세를 성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정의에서 1살이라는 연령의 차이에 대한 북한의 기본입장은 16세에 보편적 11년 의무교육을 수료하지만 실제로 1년간 직업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4장 일반원칙에서는 비차별, 아동에 대한 최상의 관심, 생명권, 아동견해의 존중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형은 18세 이하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며, 소년범죄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취급되지 않고 인민보안기구에 의한 교도, 부모와 학교의 책임하에 교육을 통해 교화시키므로 노동교화소에 소년수감자는 없다고 아동에 대한 사법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김일성대학에 종교학부가 있고 조선기독교연맹에서 운영하는 평양신학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5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서는 국적, 출생등록, 표현의 자유 등 B규약 관련 권리가 아동에게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6장 가족환경과 대안적 보호(Alternative Care)에서는 부모의 후견, 책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7장 기본건강과 복지에서는 생존과 성장, 장애아동, 사회조장, 생활수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제공 등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부각시키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로서 3개의 맹인학교, 농아를 위한 9개의 학교가 존재하고 9

세 이상 1,800명의 이상의 맹인, 농아가 등록되어 있다고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병원 및 병상의 수, 150일의 출산휴가 등 여성에 대한 특별배려에 대해 통계를 제시하면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보고서를 작성하던 1996년에는 경제난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수준과 관련하여 1994년 현재 공화국에는 거지로서 거리를 방황하는 고아는 없으며, 식량, 의복, 주거에 대하여 걱정이 없다. 이것은 국가의 책임 하에 인민들의 삶을 돌보는 대중정책의 결과이다. 또한 북한에는 아동의 영양실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권리저하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 제8장에서는 교육, 레저와 문화적 활동, 제9장에서는 특별보호수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유네스코, 유니세프 등과 국제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3.4.2 보고서 심사와 북한의 대응

북한이 정기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아동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우월성과 아동권리위원회가 제기하고 있는 아동의 인권실태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통계지표와 국제협력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통계수집체계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국제기구와의 대화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어떤 진전이 있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동의 상황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에서 부처간 협조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유니세프와 기타 국제기구의 협력으로 극복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핵심지표를 모니터링 국가팀을 설립할 의향을 갖고 있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유니세프와 합의가 된 상태인데, 협약의 이행에 공헌할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하는 등 경제난에 따른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권리분야에서는 국제협력에 적극적인데, 핵심교리가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니세프가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야, 특히 의료분야에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 보다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법률상 국제수준의 수용과 관련하여 아동분야에서는 개방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시민법에서의 협약의 효력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답변하면서 이혼을 신청한 여성에 대해 협약 제12조에 따라 법원이 기각한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아동의 직무에 적용할 협약에 대한 실제적 이해를 획득할 수 있는지, 이러한 목적의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해 법률 담당하는 관리들은 협약의 법

이론을 대조, 분석하고 있으며 의사와 교사는 협약교육 과정에 참가하는 등 관련 전문가들이 협약의 이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제정과 아동의 권리의 질의 문제이다.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예산배분을 아동부문에 더 할당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아동들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장기보고서 내용과는 달리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으로 영양상태, 교재, 의료공급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경제난이 협약의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강성대국 건설과 '고난의 행군'으로 극복 중이며 국제적으로는 유니세프, 유네스코 등을 통한 국제공동체와의 협력과 지원으로 곤경을 극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매일 100g의 식량배급을 줄었는데, 4세 이하의 아동과 아동을 가진 어머니에게 자연재해 이전의 배급으로 회복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 무료점심과 우유급식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아동은 점심도시락을 갖고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동은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가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이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홍수로 상수시설이 파괴되어 전염병 등이 우려되며 퇴치되었던 병이 다시 소생하였는데, 세계보건기구의 지원이 있지만 인프라 세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영양지표가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비해 감소했으며 예방백신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 국제협력을 환영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홍수 등으로 인해 아동의 필요불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제협력 등 한계 내에서 노력 중이며 원조가 제공되면 아동에게 최우선 배분할 방침이지만 현 상황에서 예산을 재분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B규약과 관련된 아동의 권리상황의 문제이다. 사적 영역의 존재 여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간의 협력 여부, 양 영역간 활동의 조정문제에 대해 '사적 영역'은 새로운 낯선 개념이며 협약의 이행은 공공조직의 책임하에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특히 B규약의 탈퇴선언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탈퇴가 모든 시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B규약을 이용한 불순한 자에 대하여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B규약의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인권규약 보고서 심사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권리 등 학교에서 인권을 교육하고 있는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사에 대한 특별한 훈련이 있는지, 인권교육이 학교의 커리큘럼에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다양한 규약과 협약의 규정을 가르치기 위해 유엔과 기

타 국제기구로부터 기술지원과 권고서비스(advisory services)를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내 성폭력, 외국어 교육, 아동의 비닐노동, 거리의 아동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북한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질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된 최종검토의견서를 통해 위원회는 전통적 경제관계의 와해와 1995년과 1996년 홍수로 인한 협약을 이행하는데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하여 국제수단들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법정에서 적용된다는 점, 국가가 교육과 의료를 무료로 담당한다는 점,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 기술협력을 요청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권리의 저하와 이를 개선할 메커니즘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영양실조로 인한 아동사망률의 증가, 식량, 의약, 식수부족으로 인한 아동건강상태의 악화, 아동을 위한 예산분배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 협약이 포괄하는 모든 영역에서의 진전을 모니터링할 특별메커니즘의 부재, 진전과 영향을 평가할 특별한 지표를 개발할 능력의 제한, 아동을 위한 국가전략, 정책, 프로그램이 협약에 내제된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못한 점, 가정내 체형의 문제, 환경오염이 아동의 건강에 미칠 해로운 영향, 장애인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적인 태도, 사춘기 건강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조치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산 재할당을 통해서 계속하여 아동의 영양실조를 막고 투쟁할 것, 규약의 원칙, 규정과 국내입법을 완전하게 조화시킬 것, 아동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같은 다른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할 것, 적절한 지표의 개발에 우선적 관심을 둘 것, 취약집단을 모니터링할 메커니즘의 수립, 체형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소년 자살, 조기 임신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 장애를 예방할 판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대안 조치를 이행할 것 등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권고사항에도 있듯이 아동의 권리협약에서와 같이 각종 규약들에 규정된 권리들이 다른 규약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바, 현실적으로 상호 연관된 다른 규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규약의 보고서 심사 시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제규약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협약 보고서 심사 시 계속 제기되고 있던 기술지원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기구, 국제사회와의 협

력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기준에 점차 부합하고 개방의 효과도 거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 이후 북한은 아동분야에서 활발하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유니세프의 세계 어린이통합정보체계(Global Information System and ChildInfo) 구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 중앙통계국 관계자 4명은 호주 국제개발처의 자금 지원으로 금년 10월 호주 시드니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통계분야에서의 협력과 더불어 북한은 의료, 보건분야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보건, 의료분야의 해외연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2001년 5월 인도 뭄바이의 세계보건기구 소아마비연구소에 4명의 전문가를 파견, 바이러스학 연수를 받았다. 또한 북한은 6월 4일~15일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열린 소아병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간 연수과정에도 대표단 4명을 보내 유니세프가 주관한 설사, 호흡기 질병, 홍역, 영양실조 등 어린이 질병 퇴치를 위한 종합관리 교육에 참가했다. 그리고 6월 20일~22일 세계보건기구/유엔아동기금 공동주관으로 필리핀 마닐라의 세계보건기구 사무소에서 개최된 모자(母子) 파상풍 퇴치 워크숍에도 대표단을 파견, 아시아-태평양 8개국과 산모 및 신생아 파상풍 예방을 위한 각종 정보를 교환했다.⁷⁴⁾

또한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하여 북한은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아동 발전에 관한 자료급 협의회」에 최수현 외무성 부상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여전히 주체사상이 시책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난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영양상태를 자연재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권리저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⁷⁵⁾

3.5 미가입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아동분야와 더불어 자신 있게 대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가 여성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동

74) UNICEF Humanitarian Action: DPR Korea Donor Update, 12 Jul 2001; 「연합뉴스」2001.7.16.

75) 「조선중앙통신」, 2001.5.18; 「연합뉴스」, 2001.5.16.

의 권리협약 보고서 심사 시 위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다.

다음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인권분야의 하나가 인종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종차별문제 토의 시 북한대표의 발언을 통하여 인종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과거 일부 나라들이 비과학적이며 위험한 인종, 민족우월론에 기초한 식민주의, 노예정책을 실시한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 강자가 약자를 차별, 멸시하고 억압, 착취하는 약육강식의 법칙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현재 인종차별은 민족, 종족, 종교적 집단들간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남의 사상과 문화,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현 시기 인권분야의 기본도전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⁷⁶ 즉, '우리식 가치기준'에 대한 서방식 가치관의 일방적 강요를 인종차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인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실제 현실에서 타국의 실태에 대한 문제제기로 표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일 조선인의 차별, 미국 내에서의 인종차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 내 인종문제를 제기할 때는 실제로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들고 있다. '온갖 형태의 인종주의를 없앨데 대한 국제협약'이 체결된 지 20년이 되어 가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수백만 사람들의 생활에 파국적 영향을 주고 있는 인종주의적인 인권유린행위가 국가의 묵인 하에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⁷⁷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인종과 민족차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각종 인권규약 보고서 심사시에 일관되게 표출되고 있는 것처럼 단일민족으로 내부에 민족이나 인종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 하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주요 6대 인권규범 중 하나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정기보고서 심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북한 내에는 고문의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이 협약에 가입할 의향이 없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B규약과 관련하여 2개의 선택의정서가 있다. 특히 B규약 2차 정기보고서 심사에서 개인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 B규약 신

76. 『노동신문』, 2001.3.26.

77. 박인혁, 「(인권옹호)의 관판위에 인권을 유린하는 법제」, 『국제평화』 1990년 제3호 50호, p.27.

백의정서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유보 없이 규약에 가입하였고 국민의 권리를 원만히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주장과 협약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하고 엄격한 신소와 청원제도를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 밖으로 이 문제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내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의 권리 보고서 심사 시 다른 국제규약 가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북한대표는 무국적자 관련 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할 적절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바 있다.

4. 결론: 대북인권문제 접근 방향

북한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리식 인권'의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우리식 인권에는 자본주의(제국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구도라는 역사발전단계가 바탕에 깔려 있어 기본적으로 계급적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계급적 속성은 인권의 주체 문제와 관련하여 집단주의라는 인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계급적 속성과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1990년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은 체제안보라는 차원에서 인권문제에 접근하고 있고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가 그대로 투영되는 형태로 '우리식 인권관'이 형성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와 직결된 인권관은 주로 국제인권규범 중 B규약의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권관에 임각할 때 다당제와 의회제에 대하여 체제를 위협하려는 책동으로 인식하는 대응논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편적 기준을 부인하고 우리식 인권 기준을 주장하는 북한도 유엔회원국이면서 각종 인권규범의 당사자이므로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인권규범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문에서 A, B규약과 아동의 권리협약의 세 가지 규범의 당사자로서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와 심사과정 및 각 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대하여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3개의 인권규범 심사 시 북한의 대응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3년 B규약의 최초보고서를 시작으로 2000년 B규약 2차 정기보고서까지 3개 인권규범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양식을 기준으로 할 때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기준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고서 작성이 개선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단순한

작성양식뿐만 아니라 법률과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에 규정된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법률과 정책, 그리고 특정사안에 대한 인식논리 등을 통하여 당사자로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권리이행을 옹호하고 있다.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의 관계에 대해서는 A규약을 시발로 아동의 권리협약에서 국내법 체계의 적용을 시사하더니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에서는 조약법을 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에서 보듯이 체제와 직결되지 않는 국제적 기준의 수용에 대해서는 북한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체제문제와 관련하여 3개의 인권규범의 심사과정에서 각 규범을 관장하는 위원회는 인권보장을 위해 각 규범이 별개의 체계가 아닌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B규약을 중심으로 하여 A규약과 아동의 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먼저 체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북한은 획일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대북결의안 채택에 대응하여 B규약 탈퇴선언이라는 극단적인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탈퇴선언과 함께 B규약 2차 정기보고서의 준비도 밝히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권문제에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대응에서 보듯이 북한이 국제인권규범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둘째, 북한은 체제와 연관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우리식 인권'을 선택적으로 준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이 유엔무대에서 북한식 인권관을 피력하고 북한식 인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다. 먼저 당과 국가의 영도, 주체사상과 인권과의 연관성이 국제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북한식 인권관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체제와 관련하여 세 번에 걸친 보고서 심사시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의 개진, 논의 여부 등 내적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표출되었는데 당과 국가의 시혜적 시책과 지침을 내세워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성권과 내적 민주화 보장여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은 국내와 외국기업으로 구분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입장은 국내기업의 노동조합에 대해 표출되고 있다. 개별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조선직업총동맹이 노동계급과 노동당을 연결하는 정치

조직으로 혁명이념의 무장, 교육이 주된 목적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셋째, 체제안보와 직결되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 주권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불순한 정치세력의 날조, 음모라는 방식의 대응을 들 수 있다. 강제실종 문제, 도청,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형가능 범죄가 모두 정치범죄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단의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넷째, 체제와 관련된 결사의 자유 및 사적 조직의 존재에 대하여 내적 요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회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사설출판사, 정당의 설립 등이 이러한 대응의 구체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주체사상과 종교의 자유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종교를 믿지 않으려 한다는 내적 요구의 관점에서 답변하고 있다.

다섯째, 결사의 자유의 또 다른 형태로 독립적인 인권전담 NGO의 존재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지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북한은 인권연구협회 등 3개의 전문 NGO가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적극 홍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 만든 것으로 판단하여 북한의 NGO로부터는 유엔 무대에 전혀 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나름대로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이들 단체를 통한 문제제기와 정보의 전달에 대하여 고민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강제도동 등에서 보듯이 상이한 개념정의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방식으로 우회하여 대응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처형의 경우에서 보듯이 체제문제라고 하여도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을 때는 일단 시인하지만 극악한 범죄에 대해 군중의 요구로 공개처형을 하게 되었다고 변론하고 있다.

다음으로 체제와 직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솔직한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세정과 A규약, 아동의 권리와 의 상관성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하여 권리가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아동의 권리분야에서는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호소하기까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협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통계분야, 의료, 보건 분야에서 유니세프 등을 통하여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A규약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외국서적, 외국신문, 외국영화 등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는데, 북한은 2가지로 대응하고 있다. 외국서적과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개방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대응에 대해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외국서적의 분야와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방하고 있는 서적의 종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반면, 외국신문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다만, 대외개방을 선전하면서도 외국어라는 장애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커리큘럼 내에 인권교육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각종 규약을 전파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방식을 고려하여 향후 대북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대북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인권존중의 원칙을 대외관계의 핵심으로 삼고 인권유린국에 직접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인권실태를 비판하면서 인권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포용적인' 노선을 바탕으로 한 '인권대화'를 통하여 북한의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근 EU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구체적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방식은 기존의 동향에서 보듯이 주로 정치적 권리를 중심으로 체제비판적 차원에서 인권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체제안보적 관점에서의 북한의 대응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은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탈퇴선언이라는 북한의 극단적인 대응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현실 인권실태간에는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후자만을 통한 접근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인권대화를 중심으로 접근하되 전자의 접근도 병행하는 절충적인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 '인권대화' 접근방식에 중점을 두고 대북인권문제 접근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제사회에서의 움직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조율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키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국 정부, 국제기구, NGO 등 각 주체들의 역할이 중복되는 점이 있는가 하면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는 등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이러한 각 주체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종합적 결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인권대화를 추진할 때 먼저 EU 등 국제사회를 통하여 북한의 우리식 인권이 국제인권규범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북한으로 하여금 인지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당제와 의회제를 요건으로 체제안보와 관련된 북한의 노동당 영도를 단 시일 내에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선 국제사회의 문제제기가 북한이 인식하듯이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남돋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각종 규범 심사과정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는 외교관과 인권문제를 관장하는 국내의 기구간에 미묘한 입장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규범의 국내이행문제를 놓고 국내에서 토의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인권규범 심사과정에서 북한의 대응이 현실인권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대화를 통하여 인권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이 갖추고 있다고 제시한 북한법규가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화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대외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전략과의 연계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인권은 사회주의체제 유지라는 체제안보에 대한 위기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안보위기를 분식시키면서 점진적인 개방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국제공조 하에 추진해야 할 사안을 검토해보면 먼저 강제실종, 강제노동 개념정의 문제로 회피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준을 남돋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권리협약 보고서 심사 시 권고사항에도 있듯이 각종 규범들에 규정된 권리들이 다른 규약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바, 현실적으로 상호 연관된 다른 규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각종 규약의 보고서 심사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국제규약에 가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⁷⁸⁾

셋째, 아동협약 보고서 심사 시 계속 제기되고 있던 기술자원을 통하여 북한이 국제기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기준에 점차 부합하고 개방의 효과도 가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A규약 2차 보고서의 제출을 권유해나갈 필요

78) EU와 북한간의 최초의 '인권대화'시 북한 측에 대하여 6대 인권규범 중 가입하지 않은 2개의 규범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한다.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 인권담당 서기관의 발언, 2001.7.6.

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B규약에 대해서도 16년만에 2차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B규약보다는 A규약을 중시하는 북한의 인권개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B규약 2차 정기보고서 심사 시 최종검토의견서에서 1년 내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정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개처형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수집하는 노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공보처 편, 「'93년도 및 '94년도 국제사면위원회 북한 관련 보고서」 (서울: 공보처, 1994)
- 구수희 편저, 「북한법연구법전」 (서울: 행법사, 1996)
- 국제사면위원회, 「북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우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국, 1993)
- 김병기, 「북한주민의 인권과 국제법」 (서울: 법서출판사, 2000)
- 김병로, 「김정일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_____,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김병복, 「북한의 인권 그 실상과 허상」 (서울: 다나, 1995)
- 남북문제연구소 편, 「북한의 인권 오웬의 악몽」 (서울: 남북문제연구소, 199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편, “북한인권문제” 국제 학술 심포지엄 논문집, 1995
- 법무부 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청원」 (과천: 법무부, 1995)
- _____, 「국제인권규약보고서」 (과천: 법무부, 1991)
- 법원행정처 편,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 (서울: 법원행정처, 1995)
- 북한연구소, 「북한형법의 실상」 (서울: 북한연구소, 1990)
- 아시아감시위원회·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 송철복 외 역, 「북한의 인권」 (서울: 고려원, 1990)
- 이원웅,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 _____,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성남: 현대사회연구소, 1996)
- _____, 「북한 인권문제와 유엔 인권제도」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1997)
- 전현준, 「북한의 인권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재성호, 「유엔인권소위원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 평가와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최성철 편, 「북한인권의 이해」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 _____.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서울: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6)
- 최성철, 「북한인권론」 (서울: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8)
- _____.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 : 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최의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2차 정기보고서: 내용분석 및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_____.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자료원, 2001)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1999~2001」 (서울: 통일연구원, 1999~2001)
- 통일원, 「북한의 인권실태」 (서울: 통일원, 1994)
- _____. 「인권관련 법규 및 동·서독 사례연구」 (서울: 통일원, 1994)
- 김근식, "북한의 인권: 안으로부터의 시각", 한국인권재단 주최 제3회 인권학술회의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에서 발표한 논문, 2001.2
- 김동한, "북한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 변천에 관한 고찰",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년 여름호
- 김영중, "북한의 정치부패와 인권",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년 여름호
- 김일수, "북한형법의 체계와 특수성", 세종연구소 편,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세종연구소, 1994)
- 송지영, "북한의 '우리식 인권' 외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원웅,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과 인권정책의 방향",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1호, 1998
- _____.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장명봉, "북한의 기본권보장의 제도적 문제점", 「통일연구논총」 제3권 제2호, 1994
- 재성호,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국제법학회논총」, 제39권 제1호, 1994

-,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방향”, 『북한연구』, 제6권 제2호, 1995년 여름호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통일연구논총』, 제6권 1호, 1997
- 최성철, “북한인권의 현황과 전망”, 『북한학보』 제21집, 1997
- Baylis, John and Smith, Steve, ed.,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 Press, 1997)
- Bauer, Joanne R. & Bell, Daniel A., ed.,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Choi, Sung-Chull, e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1995)
- Choi, Sung-Chull, ed.,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oul: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1996)
- De Bary, Wm. Theodore, *Asian Values and Human Rights: A Confucian Communitarian Perspec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 Donnelly, Jack, *The concept of human rights* (London: Routledge, 1985)
- McGoldrick, Dominic, *The human rights committee its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1994)
-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e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North Korea)*, 1988
- Zakaria, Fareed,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March/April, 1994

북한원전

- 김영수,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사회주의를 좌절시키는 요인”, 「철학연구」, 1999.1
- 김창렬,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본질”, 「근로자」, 1990년 2호
- 리기순,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자유>, <인권>의 반인민성”, 「국제생활」, 1990년 제10호
- 박인혁,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인권을 유린하는 미제”, 「국제생활」, 1990년 제3호
- 안명혁, “미제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자”, 「근로자」, 1990년 8호 (평양: 근로자사, 1990)
- 전인철, “제국주의자들이 <평화적어행> 전략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근로자」, 1990년 11호 (평양: 근로자사, 1990)
- 정경섭,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조성곤, “인권의 본질”, 「철학연구」, 1998.3
- 한하련,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의 반동성과 그 해독성”, 「철학연구」, 2001.1

「로동신문」

「김일성지작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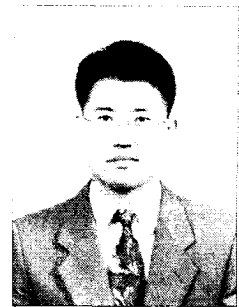
「김정일선집」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조선중앙방송」 등

국가주도형 심천모델과 시장주도형 상해모델의 북한적용가능성 연구



박 병 광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연구위원)

목 차

【 요약문 】	63
1. 머리말	65
2. 중국 경제개혁의 배경과 내용	66
3. 중국의 경제개혁과 심천모델	74
4. 중국의 경제개혁과 상해모델	81
5. 결론 :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와 적용가능성	86
※ 참고문헌	90

【 요약문 】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최근 수 년 사이 극심한 식량난과 에너지난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탈북으로 인하여 내부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체제불안정요소와 당면한 경제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외경제환경에 걸맞는 개혁과 개방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개방체제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해 간다면 중국식 발전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대두된다고 하겠다. 실제로 당면한 북한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이라는 과제에 근거하여볼 때 북한의 집권엘리트에게 있어 중국식 개혁프로그램은 하나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중국의 개혁개방은 기존의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집권층으로 하여금 개방정책으로 인해 예견되는 충격요소를 최대한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중국과 북한의 긴밀하고도 전통적인 정치·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지리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북한이 중국식 개혁프로그램을 참고할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식 경제발전전략과 대외개방의 경험이 북한의 경제개혁에 과연 어떠한 함의와 시사점을 지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상해발전전략의 사례와 심천경제특구모델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비록 북한의 집권층이 단기적으로 중국과 같은 대담한 경제개혁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해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 중국의 개방은 하나의 선형적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르는 발전모델을 80년대 深圳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도형 경제특구모델과 90년대 이후 포동지구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주도형 上海모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북한이 참고할 수 있는 경제발전모델로는 심천식 경제특구모델의 북한적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상해발전모델은 기존 경제특구보다 한 단계 높은 시장개방과 후방에서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배후지역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상해는 그 자체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양자강을 따라 중서부지역경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단순히 수출가공기지가 아닌 중국 내수시장의 전초기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수출가공

지역으로서 그 외 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인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존 경제특구와는 달리 개방초기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시장개방효과가 크게 희석될 수 있다.

물론, 상해는 중국을 포함한 중화경제권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부상을 위해 보다 고도화된 시장경제시스템의 도입을 준비해온 곳이다. 즉 상해는 장차 홍콩을 대신하여 동북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라 하겠다. 따라서 북한이 특징지역을 상해식 발전모델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 시장경제시스템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뿐 아니라 개방 후보지역을 상호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배후지역이 존재해야 하며 또한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성을 포함한 북한의 개방후보지역은 이러한 기능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내에 금융의 중심지를 육성한다고 할지라도 국제금융 중심지의 하나인 서울의 존재는 또 다른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상해발전모델은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원칙을 확인해줄 수는 있지만 북한이 채택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은 아니며 오히려 심천특구와 같은 기존의 경제특구를 기본으로 한 중국식 점->선->면의 단계적 개방정책을 북한식 개방모델로 개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1. 머리말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최근 수 년 사이 극심한 식량난과 에너지난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탈북으로 인하여 내부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체제불안정의 심화는 북한식 폐쇄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국제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에서 탈피하고 경제의 쇄생 및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외경제환경에 걸맞는 개혁과 개방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침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개방체제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마다 북한의 정치·경제적 좌표를 제시해주는 로동신문의 2001년도 신년사에서는 “기존 관념에 사로잡혀 지난 시기의 낡고 뒤떨어진 것을 붙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없애버릴 것은 없애 버리고 기술 재건을 해야 한다”라는 소위 ‘신사고’를 강조함으로써 마치 북한이 구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으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었다.¹⁾ 또한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6일 동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중국 경제개혁의 대표적 상징도시인 상해의 경제발전현황을 집중적으로 시찰하였다. 김정일의 상해방문은 연초 제기하였던 ‘신사고’의 실천을 위한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으로의 정적 전환을 시도해 간다면 중국식 발전모델을 참고하여 북한 현실에 맞는 개방 모델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새로운 판상사항으로 대두된다고 하겠다.

실제로 당면한 북한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이라는 과제에 근거하여볼 때 북한의 집권엘리트에게 있어 중국식 개혁프로그램은 하나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중국의 개혁개방은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집권층으로 하여금 개방정책으로 인해 예견되는 충격요소를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둘째, 중국과 북한의 긴밀하고도 전통적인 정치·경제적 관계뿐 아니라 지리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북한이 중국식 개혁프로그램을 참고할 가능성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중

1) 자세한 내용과 분석은 민주평통사무처(2001, 1, 3), 『2001년도 북한 신년 공상사실 분석』, 북한경제 해설자료집 2001-01 참조.

중국식 경제발전전략의 선택적 수용 가능성은 하나의 가설로서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중국의 다양한 경제발전모델 가운데 북한이 과연 어떠한 방식의 발전경험을 채택할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 어느 유형의 개방모델이 북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북한의 경제개혁이 중국식 개혁개방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실시된다고 가정할 때 그 주요 실천모델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深圳경제특구모델'과 '上海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 이미 일부 북한 전문가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김정일의 상해방문과 연관지어 북한의 상해식 개방발전모델 채택에 대한 가능성을 추론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이 개혁개방초기에 추진하였던 심천식 경제특구모델의 채택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예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단지 추상적 시론수준의 발표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을 뿐 심도 있는 연구업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중국식 경제발전전략과 대외개방의 경험이 북한의 경제개혁에 과연 어느 정도의 적용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을 지니는지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최근에 김정일의 방문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上海발전전략의 사례와 중국 경제개혁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深圳경제특구모델의 비교를 중심으로 그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 경제개혁의 배경과 내용

2.1 중국 경제개혁의 배경

1976년 毛澤東이 사망한 후 중국은 국내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결하기 위해 중국지도부는 과거 모택동 시대에 추진해 온 소련식 계획경제와 자력갱생정책을 수정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중국은 또한 1969년 소련과의 국경충돌 이후 소련의 안보위협 증대로 인하여 미국, 일본 및 서구 등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인식은 새로운 지도부로 하여금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추구하도록 하는 직접

2) 深圳모델은 개혁개방초기 중앙정부 주도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하에 추진된 국가주도형모델의 성격을 띠지만 上海모델은 개혁개방의 경험과 시장경제화의 토대 위에 상해라는 지방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시장주도형모델이라 할 수 있겠다.

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체제가 봉착한 대내외적 도전을 주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이점에서 볼 때 중국의 개혁·개방은 소련이나 동구유럽에서와 같이 총체적 체제위기에 대한 방어적 성격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체제 향상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성격의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³⁾

2.1.1 국내경제적 요인

중국은 건국초기의 1차5개년 계획기간(1953~57) 동안 주로 스탈린식 계획경제모델에 입각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가계획체제의 장점은 사회의 전반적인 수요와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경제안정과 신속한 발전을 꾀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스탈린식 경제발전모델을 원형으로 하는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일반적으로 명령형 계획기제의 결합, 중공업위주의 불균형한 발전전략, 인센티브체제의 미비, 연성예산제도에 기인한 결핍현상의 악순환이라는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⁴⁾ 특히 농업인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농업생산의 비율이 높으며, 지역간 경제환경의 격차가 큰 반면 사회간접시설이 미비하였던 중국의 실정에서 소련 모델의 비효율성은 명백한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1차5개년 계획 완료이후 지속적으로 소련경제모델의 변용을 시도해 왔으며 중국에서의 스탈린모델 변용은 주로 주기적인 물자배분 및 기업관리체제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⁵⁾

그럼에도 개혁개방이전까지 중국에서의 경제관리 및 운용방식은 기본적으로 스탈린식 발전모델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는 자력갱생과 중앙통제라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중국에서의 폐쇄적 자력갱생노선은 일시적으로나마 생산력 증대에 기여했을지라도 경제규모의 증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는 적합한 것이 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부각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지나친 자력갱생의 강조는 대외무역의 억제, 인위적인 수출입통제, 외국투자의 제한,

3) 『북한의 改革·開放전망과 政策課題』, 민주평통 정책연구자료 제27호(2001.4), p.23.

4) 사회주의 계획체제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David A. Dyker, "Decentralization and the Command Principle: Some Lessons from Soviet Experienc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5, No.2 (June 1981), pp.121~148; Alec Nove,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London: Allen & Unwin, 1983), pp.73~80 참조.

5) 스탈린식 발전모델의 문제점과 사회주의권의 탈스탈린화 과정에 대해서는 박형중, "탈스탈린화와 사회주의권의 분화: 사회주의권에서의 발전과 저발전의 문제" *중경연구*, 18권 2호(1994), pp.157~200.

대외교류와 협력의 단절에 따른 국내 과학기술의 낙후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았을 뿐이다.⁶⁾ 중앙통제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역시 당과 정부가 생산단위에 대해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일관하는 관료주의적 폐단을 낳을 뿐 아니라 자원배분과 활용에 있어서도 비효율성을 유발하여 경제발전의 지혜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와 각 부문으로 하여금 단지 하달된 정책의 집행과 제시된 목표달성이라는 수동적 입장을 고수하게 만들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국내경제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국 지도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존에 유지해오던 스탈린식 발전모델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정책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1.2 국내정치적 요인

또한 중국의 경제개혁추진은 경제환성화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공고화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셔크(Susan L. Shirk)는 덩소평이 개혁개방초기 중앙 정치부대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자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자 지방실력파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분권화 중심의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고 본다.⁷⁾ 실제로 1970년대 후반 모택동 사후의 중국은 어느 한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어려운 상황하에 놓여있었으며 공식적으로 통치권을 위임받은 華國鋒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⁸⁾ 이런 가운데 덩소평을 중심으로 한 反좌파연합세력은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기간 동안 피해와 정치적 박해를 받았다는 공통점을 배경으로 실용주의적 경제개혁노선에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분권화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과 자율권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지방의 사채이익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결국 지방이 중앙의 개혁에 적극 동조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물론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6) Jan S. Prybyla, "Changes in the Chinese Economy: An Introduction", *Asian Survey*, Vol.19, No.5(May 1979), p.413.

7) 자세한 내용은 Susan L. Shirk, "Playing to the Provinces: Deng Xiaoping's Political Strategy of Economic Reform",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23, No.3/4 (Autumn/ Winter 1990) pp.227~258.

8) 하딩이 설명한 바와 같이 모택동 사후 중국의 정치구조는 문화대혁명 중심의 '혁명적 모택동주의파'와 화국봉 중심의 '문화이전체제로의 복구파' 그리고 덩소평 중심의 '개혁파'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들은 문화주도그룹, 문화기간중 부상한 그룹, 문화기간에 박해를 받은 그룹이라는 정치적 위치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Harry Harding, *China's Second Revoluti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참조.

추진되면서 개혁의 방향, 범위와 속도 및 이론적 해석 등에서 지도부 내 견해차이를 보이게 되었지만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의는 덩소평 주도하의 개혁개방에 대한 타협적 노선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덩소평은 성공적인 개혁정책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정치원로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권력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며, 안정된 정치적 기반 위에서 더욱 과감한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구 소련에서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인민대중을 동원하여 대중의 정치참여에 의존한 것과 달리 중국의 경제개혁은 분권화를 통한 지방세력과의 연합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도컨대 중국의 경제개혁정책은 개혁이전의 사회주의 건설노선 및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반성과 비판 속에서 시작된 것으로 특히 대약진운동기와 문화대혁명시기에 집중적으로 표출된 毛澤東主義의 오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토대로 한다고 보겠다. 또한 이는 시장지향적 개혁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스탈린식 발전모델에 따른 국가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엘리트간의 타협에 의한 과감한 개혁정책의 실행으로 경제적 위기 및 사회체제의 한계가 가시적인 갈등을 내부적으로 소화해내기 위한 의도에서 추진되었다고 하겠다.

2.2 중국 경제개혁의 원칙과 기초

2.2.1 경제개혁추진의 원칙과 목표

중국지도자들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던 근본적인 목적은 문화대혁명이후 직면하게된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완성·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중국지도부는 개혁초기부터 '4개 현대화'를 통한 '중국특색적 사회주의'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은 반드시 '4항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¹⁹⁾

4개 현대화란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 등 4개 부분의 현대화를 가리키는 말로서 중국지도부는 모택동 사후 21세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4개 현대화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여 재반 정책적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경제건설에 힘을 기울여왔다. 또한 4개 현대화의 실현은 개혁초기 당과 국가의 대목표로서 당규약과 헌법에도 명기되었다.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계승된 정

19) 4항 기본원칙이란 첫째, 사회주의노선 둘째, 무산계급의 지배 셋째, 공산당의 지도 넷째, 인민민주주의 및 모택동사상을 반드시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정 대중은 「鄧小平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1984), pp.144~174 참조.

작용하였다.

중국의 경제개혁 중 가장 먼저 실시된 농업개혁의 주목적은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농민소득의 증대에 있었다. 그 주요내용은 농산물 매입가격의 인상과 생산청부제의 실시이다. 전자에 있어서는 수차에 걸쳐 수매가격이 인상되어 1984년의 경우 농산물 수매가격지수가 개혁전에 비해 53.6% 증가하게 된다. 생산청부제는 종전의 집체농업에서 벗어나 농지를 소집단, 농가들에 분할하여 개별경작케 하고 할당생산량 만큼은 정부가 매입하고 그 초과생산량은 자유시장에서의 처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보급률은 1980년 전체 生産隊의 14.9%에서 82년에는 78.8%로 증가하였으며 83년에는 거의 전국적 수준이 98.3%로 증가하였다. 이 제도하에서 농민은 독립적 생산자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농민의 창의력과 근면성에 따라서 사적 농가부업, 초과생산량의 자유판매를 통한 수입증대가 가능하였다.¹³⁾ 이처럼 중국의 경제개혁이 농업부문에서 제일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농업부문의 경우 공업부문에 비해 상호의존도 등의 측면에서 단순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없이 실험적 개혁조치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국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자본주의적 성향'을 이용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농업생산책임제 등을 추진함으로써 모택동 시대의 유물인 인민공사의 해체와 농민들의 '생산력 해방'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¹⁴⁾

2.3.2 대외경제부문의 개혁

1978년 중국은 대외개방을 선언한 후 외국과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되 그 장구를 지역적으로 몇 개 지역으로 제한하여 경제개방을 실험한 후, 점차 그 집적장구와 개방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점진적 방식을 택하였다. 대외개방을 시작한 후 중국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경제개방구를 설치 운용하면서 개방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1979년 6월 廣東省과 福建省이 개혁추진을 위해 요구한 외자도입과 대외무역발전 등 개방요구를 당중앙과 국무원이 인가(1979년 7월)하는 형식을 통해 이들 두 개의 省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광둥성의 深圳과 珠海가 '수출특구'로 지정되는 등 부분적인 개방을 시도하였

13) 개혁초기 생산책임제를 중심으로 중국의 농업개혁에 대해서는 이일영, "중국 농업구조개혁의 성과와 한계" 『中蘇研究』 19권 1호(1995), pp.69~98.

14) 개혁초기의 농촌경제정책과 인민공사의 해체에 관해서는 서진영, "농소평체제의 농촌경제정책", 『亞細亞研究』 제27권 2호(1983), pp.256~281 참조.

으며 이러한 개방조치가 성공을 거두자 1980년 5월 중국은 광둥성의 深圳, 珠海, 汕頭市와 복건성 廈門市의 일부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광범위한 무역자유권을 부여하기로 확정하였다.¹⁵⁾ 그 후 중국은 1984년 上海, 天津, 大連 등 14개의 연해도시를 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하였으며 1985년에는 長江三角洲, 珠江三角洲 그리고 閩南三角洲를 연해개방지역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1987년 13차 공산당대회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88년 海南島를 다섯 번째 경제특구로 지정하였고 외국기업에게 토지사용권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¹⁶⁾

즉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중요한 전략적 선택 가운데 하나는 대외개방을 전면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梯度理論'¹⁷⁾에 기초하여 동부연해지역의 일부를 개방정책의 실험지구로 설정하여 점차 서부 내륙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이처럼 點, 線, 面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외개방정책은 국내경제 개혁체제에서 개혁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외개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대외개방정책은 연해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 경영방식 등의 도입을 수반함으로써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불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국경제의 대외개방과정에서 정책적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개혁초기 농가생산책임제와 경제특구로 대표되는 실험적 경제개혁 정책의 성공적 결과는 정책수용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으며 새로운 개혁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개혁정책의 성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점차 계획과 시장기구의 역할 및 관계가 이론적으로 재정립되었다. 즉 계획기구에 대해 중속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던 시장기구의 역할이 점차 계획기구를 대체함으로써 계획경제의 결함을 보완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이념적 개념 역시 개혁의 진척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효율적인

15) 경제특구와 대외개방도시 지정에 관한 개혁초기 중공 당중앙의 논의에 대해서는 曾德波, "一項重要決策的產生: 對外開放的新步驟" 瞭望, 1984년 4월24일, pp.9~13,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國務院特區辦公室 編, 中國對外開放地區投資環境和政策,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93) 참조바람.

16) 개혁이후 시기별 연해지역 개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Jude Howell, *China Opens Its Doors: The Politics of Economic Transition* (Exeter: Harvester Wheatsheaf, 1993); 秦百川, "區域開放戰略論",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6), pp.35~57 참조.

17) 梯度理論이란 중국경제발전의 과급효과와 영향이 梯度(사다리)모양으로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단계적 과정을 밟아 발전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장기구의 확립'은 중국경제 개혁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결국 중국은 점진적 실험을 통한 실용적인 접근방법 속에서 심각한 정치적 반발 없이 경제개혁정책을 심화·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3. 중국의 경제개혁과 심천모델

3.1 경제특구의 전략적 의의와 설립목적

3.1.1 경제특구의 국가전략적 의의

중국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하고 경제특구의 설치를 결정한 것은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공 11기 3중전회의에서였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조성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처음부터 4개 특구가 동시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먼저 홍콩에 인접한 廣東省 深圳과 마카오에 가까운 珠海가 실험적인 '수출특구'로 지정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서 심천과 주해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광둥성 동부의 汕頭와 또한 臺灣과 마주하고 있는 福建省의 廈門을 특구로 지정하는 문제가 고려되어 1980년 5월부턴 이들 두 지역을 경제특구로 확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¹⁸⁾ 이후 1988년에는 海南島가 추가되어 1988년 말 현재 중국 전역에는 모두 5개의 경제특구가 있다.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의 제일보로 경제특구를 설치한 의도가 매우 다각적인 만큼 그 전략적 의의 역시 매우 크다고 하겠다. 경제특구설치의 의도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 및 선진 경영관리의 경험을 배움으로써 특구 자체의 공업화를 가속시키고 그것을 중국경제 전체에 확산시켜 나간다는 경제적 목적 뿐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특구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시킴으로써 그것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 융합하게 하여 소위 '중국식사회주의'체제를 구축하는 체제의 실험장으로 특구를 활용하고 더 나아가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의 경제통합 기반을 조성한다는 통일적 목적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제특구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은 국무원이 제정·공포한 "경제특구조례"이며 일반지역(15~30%), 경제기술개발구(10~30%)보다 낮은 법인세 혜택이 있다. 또한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전력,

18) 오용석, 『중국경제특구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pp.25~26.

용수,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을 개발·설치해준다. 실제로 특구 내에는 관공서, 은행, 호텔 등 각종 부대 편의시설 등이 있으며 특구행정을 총괄하고 기존진출 외자기업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외자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상담, 등록, 세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구관리위원회가 있다.¹⁹⁾ 이처럼 경제특구는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주도형 발전모델의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3.1.2 경제특구의 설립목적

한편 중국정부가 개혁초기에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경제특구를 설치한 목적은 명확하다.

첫째, 외국인 직접투자를 집중 유치함으로써 중국 개방정책의 성공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선진적인 기술, 경영노하우를 흡수·활용하여 원자재를 가공한 후 수출함으로써 부족한 외환을 벌어들이는 수출가공구로서 역할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는 수출가공구로서 중국의 내지(內地) 시장과 해외시장간의 완충지대(buffer zone)역할을 하였으며 홍콩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개방초기에 해외시장·기업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어려운 중국 기업이나 중국 내지 시장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는 외국기업이 경제특구에 진출함으로써 보다 용이한 시장접근 혹은 효율적인 가공수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유사한 수출가공구를 설치·운영경험이 있는 臺灣(高雄), 한국(마산), 홍콩, 멕시코의 자유무역지대를 면밀히 연구한 후 이를 특구운영시 반영하였는데, 수출용 원자재·자본재의 수입, 완제품의 수출에 대한 무관세의 원칙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경제특구에 수출가공산업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종합경제개발구적 성격이 강해 수출가공산업 이외에도 농림목축업, 상업, 금융·보험업, 건설, 부동산 개발, 관광업, 사회간접자본, 내수지향형 제조업, 각종 서비스산업의 진출도 가능하다. 또한 초창기 경제특구는 주로 해외시장과의 연계가 주목적이었으므로 정책적으로 내수시장의 연계를 차단시켰으나 1990년대 들어 전면개방정책이 실행되면서 이 같은 구분이 유명무실해지고 내지 경제와의 연계가 강화되었다.

둘째로 경제특구는 연해지역 위주의 부분개방전략의 선봉대 역할을 담당해왔다. 부분개방정책의 핵심은 외국인투자를 유치, 이를 국내산업과 연결시키고(外引內聯), 원자재와 시장을 외부에 의존하여 수출을 확대하며(兩頭在外), 연해의 경제특구·개방구를 부채의 양면(兩個側面)으로 삼아 우선 개

19) 김익수, 『중국투자론: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1999), pp.46~47.

방·발전시킨 뒤 추후 개방의 범위를 내륙으로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둥성, 복건성의 경제특구는 부분개방정책 실행의 '경험'을 다른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에 전수시켜주는 학습장 역할을 할 수 있다.

끝으로 중국의 경제특구는 시장지향적 경제체제 개혁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덩소핑은 21세기의 사회주의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나 내부 경제를 갑자기 개방할 경우 부패, 밀수, 투기, 인플레이 등의 부작용이 창궐할 것이므로 일부 지역만을 경제특구로 지정·개방할 경우 이들 부작용을 지역적으로 국한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사실 深圳 경제특구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陳雲 등은 특구설립을 통한 외자유치는 특구의 홍콩화를 가속화시키고 자본주의 폐해를 증대시켜 중국을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할 수 있으므로 수출입 확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특구 지지론자들은 경제특구가 수출가공구로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홍콩·대만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특구는 우리나라의 마산 수출공단이나 대만의 高雄자유무역지대보다는 그 목적과 역할이 훨씬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3.2 중국에서 경제특구의 역할

1978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중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 인민의 총소득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지난 2001년 3월 6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4차 회의에서 쑹웨이안(曾培炎) 중국 국가발전위원회의 대표는 200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8조 9,40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하였고, 물가상승률은 불과 0.4% 였으며, 국유기업 및 국유지주기업의 이익은 전년도 대비 86.2% 증가한 4,262億元이라고 발표하였다. 중국 경제발전의 원인을 설명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경제특구를 효율적으로 운용한 정책과 그에 따른 편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개혁 착수 당시 미비한 투자환경 및 체제의 불안정성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개혁개방에 따르는 외자유치 전망은 불투명했으며 선진제조 기술이나 관리기술을 곧바로 낙후된 중국산업에 적용하기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더욱이 해외의 잠재적 투자자들은 대체로 홍콩, 대만 경제인과 해외 화교자본가들이었으며 이들은 중국의 낙후된 경제구조와 경직된 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정비된 투자환경과 수출에 유리한 입지제공을 통해 이들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즉 중국은 개혁초기에 잠재적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경제특구를 건설했던 것이다. 이후 중국정부는 홍콩 및 대만경제인과 해외화교자본의 대중국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대만동포투자촉진을 위한 국무원규정', '화교투자우대를 위한 국무원 규정', '대만동포의 경제특구 투자 특별우대방안에 관한 국무원 규정' 등 법률적 장치를 갖추어 나갔다.

중국의 경제특구에서 성공적으로 실험된 개혁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 채택되었으며 경제특구의 완충지대적 역할은 특히 홍콩 및 대만 경제인의 투자심리를 자극하여 중국은 성공적으로 이들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었다. 특히 홍콩 및 대만으로부터의 직·간접 투자는 개혁초기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수출상품의 제조기술은 물론 시장경쟁을 위한 기업관리 기술유입의 주요 통로로 작용하였다. 1993년과 1994년 홍콩 및 대만으로부터의 투자가 중국 전체 외자유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4.1%와 68.4%에 달했으며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홍콩과 대만의 비중은 감소하여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47.1%와 47.0%를 기록하고 있다.²⁰⁾

한편 개혁초기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주로 수입대체 산업과 수출지향 산업에 대한 지원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또한 중국의 경제특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학습하는 실험실이었다. 즉, 경제특구는 계획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모순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시험장의 역할과 외국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窓口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겠다.

특히 경제특구 밖에 있는 중국 국내 기업의 경우 외국 산업에 대한 정보나 기술, 판로, 운영방식 등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특구에 진출한 자국 및 외국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특구에 진출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도 자극을 받아 특구 내의 기업과 기술이전 및 공동개발과 같은 협력관계를 이루어 발전의 틀을 갖게 되었다. 이미 특구에 진출한 기업들은 외국기업과의 제휴, 외자도입, 외국기술 획득 등을 통하여 성장·발전하였고, 그 결과 대외 수출의 비약적 성장을 가져 왔다.

요컨대 중국정부가 1979년에 시도한 경제특구 건설정책은 홍콩, 대만 및 해외화교자본과 기술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중국의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겠다. 또한 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운용은 중국의 경제구조도 변화시켜 생산기술 이외에도 교육, R&D, 관광 등 서비스 업종에까지 기술이전 효과가 파급되어 자연스럽게 선진 자본주의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학습하는 효과를 낳았다.

20) 國家統計局編, 『中國統計年鑑』(北京:中國統計出版社), 해당년도.

3.3 심천경제특구의 발전현황

1990년대 상해의 포동지구에 대한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해가 중국의 중심적 경제도시로 부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바탕은 1980년대까지 심천 등 경제특구를 통한 개방과 개혁실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특구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중국이 21세기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개방은 지리적으로 점진적인 방식을 채택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몇 개의 지점을 개방하고 다음에는 일정한 해안선이나 강을 따라 긴 연결지대를 개방하며 마지막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개방하는 소위 점→선→면의 점진적 개방정책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중국의 점진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전략의 출발이 바로 경제특구이고 심천은 바로 그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3.3.1 심천경제특구의 지리적 배경

개혁초기 중국지도부가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심천을 지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심천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 지도부는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개방에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북경에서 멀리 떨어진 주장(珠江) 삼각주의 작은 국경도시 심천이 개방의 정치적·사회적 파급을 최소화하면서 홍콩을 비롯한 자본주의세계의 장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던 것이다.

광둥성의 남부연안에 위치한 심천경제특구는 동쪽으로 大亞灣, 서쪽으로 珠江口(Zhujiang Estuary)를 끼고 남으로는 동서로 深圳灣과 大鵬灣에 면한 九龍半島 新界에 인접한 深圳市 남부에 걸쳐 설치되어 있다. 개혁개방이 시작되기 이전에 심천은 원래 寶安縣에 속해 있던 소도읍인 深圳鎮으로 寶安縣의 중심지였으나 오랜동안 변방지역 봉쇄정책의 영향을 받아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기본건설이 낙후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지방 사람들은 홍콩, 마카오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노동력의 부족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었다. 심천특구는 원래 기본건설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외국인 투자가의 흥미와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중국정부는 공업, 상업, 농업, 목축업 및 주택, 레저산업 등 모든 업종을 함께 건설할 필요성을 느끼고 심천에 종합형 경제특구를 개발한 마스터플랜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특구 안에 蛇口工業區를 별도로 건설하여 경공업, 화학공업, 중공업을 위주로 개발하게 되었다. 오늘날 蛇口工業區는 심천 경제특구 내에서 가장 크고 주요한 산업생산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²¹⁾

개혁·개방초기 심천경제특구는 '특구관리선'이라는 철조망에 의해 시와 경제를 이루고 있었는데 동서의 길이는 49Km이고 남북간의 평균길이가 약 6.7Km로서 전체 면적은 327.5평방 킬로미터이다.²²⁾ 특구의 면적은 심천시 전체 면적의 16.2%에 불과하나 인구의 비중은 53.6%에 달하고 특구 인구 중에서도 절대 다수가 특구 밖에 거주하면서 취업 등의 이유로 이 지역에 드나들고 있다는 것은 심천시의 중추기능을 경제특구가 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중국지도부의 개방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기대에 찬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운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특구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조심스런 개방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물론 심천의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개방은 중국의 지도부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사회주의중국과 자본주의세계를 연결하는 창구에 그쳤던 것을 결코 아니다. 경제특구는 무엇보다도 홍콩과 대만 등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것이었다. 기기에 외국자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경영기법과 선진적인 기술의 학습도 기대되었다. 따라서 특구 내에서의 경제시스템은 원래 중국지도부가 생각했던 계획적 요소는 설자리가 없었고 결국 시장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장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심천에서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조치들이 처음으로 실행되었는데 1983년 주식 발행, 1987년 공개매찰 방식에 의한 토지사용권의 양도, 1990년 증권거래소의 설립 등이 그 예에 속한다.

3.3.2 심천경제특구의 발전현황

심천은 중국지도부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였다. 오늘날 중국 경제특구의 대명사로 알려진 심천의 총면적은 327.5평방km로 珠海, 汕頭, 廈門보다는 훨씬 큰 편이나 홍콩 면적의 1/3, 싱가포르 면적의 1/2 크기이다. 이런 작은 면적의 경제에서 1997년도에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넘어섰고 수출은 약 28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국내총생산도 약 3천만 달러에서 1백90억9천만 달러로 연평균 31.2% 증가하였다. 또한 심천은 중국 내 전체 국내총생산에 있어서 전국 제6위의 도시가 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에 있어서도 전국 수위로 상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²³⁾ 특구지정 이전 심천의 도시면적은 3평방km에 불과하였고 인구

21) 백권호, 『中共經濟特區에 관한 研究』, (서울: 산업연구원, 1989), p.18~21, 참조.

22) 오용식, 앞의 책, p.47.

23) 深圳經濟特區年鑑編纂委員會, 『深圳經濟特區年鑑(2000)』,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000), p.54.

는 3만 명이 못되었으며 주민의 80%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였고 지역의 총생산량은 광둥성 전체 GDP의 1% 미만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개혁초기 심천의 전기,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열악하였고 숙련 노동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런 심천의 열악한 초기조건을 중국 정부는 상당 부분 국가지원으로 해결하였다. 심천이 개발될 때 중국 정부는 48%의 고정자본을 자체적으로 투자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존하기 보다는 해외자본의 유치와 특구 내에서 조달되는 자체기금, 채무 등으로 충당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세출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는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홍콩과 대만 등 화교들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은 끊임없이 들어왔고 중국의 국내기업들도 심천을 해외진출의 발판으로 삼았다.

심천특구가 성공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늘리고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1979년 중국 정부는 기업소득세를 30%에서 15%로 인하하였다. 당시 싱가포르와 홍콩의 기업소득세가 각각 35%와 18.5%에 달한 것을 감안할 때 실로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외국기업이 토지를 사용할 때에도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하여 저비용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생산과 소유 방식에서도 임가공, 단순조립, 보상 무역, 공동생산, 합작투자(joint venture), 100% 자체지분을 가진 외국기업 등 기업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외국자본의 유치에 성공하였다.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도 심천특구가 생산요소의 저렴한 제공 이외에도 특허보호, 마케팅 허용, 화폐교환의 자유 보장 등 다양한 투자유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투자의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감소하여 투자를 계속 하게 되었다. 이러한 심천특구의 사업환경의 개선은 많은 홍콩 기업을 유인하였고, 장기적으로 막대한 화교자본이 유입되어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다.

오늘날 심천을 비롯한 광둥성 경제특구의 역할은 과거에 머물고 있지 않다. 심천이 위치하고 있는 주강 삼각주는 정보기술(IT) 산업의 세계적 생산거점이다. 세계 컴퓨터 마더보드(주기관) 시장의 30%, CD롬의 80%, 키보드의 60%, 복사기의 50%, 프린터의 50%가 주강 삼각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항만 등 기초시설 등이 심천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4. 중국의 경제개혁과 상해모델

4.1 중국의 경제개혁과 상해

上海는 19세기 중엽 아편전쟁이래 서구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문호개방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초 이미 금융, 교통, 공업 등 중국의 정치경제 중심지로서 자리잡았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당시 상해는 중국 제1의 상업도시가 되었으며 이러한 비중에 맞추어 건국직후 상해시 지방정부의 지도부도 비교적 중량급의 정치가들로 채워졌다.²⁴⁾ 일찍이 서방과의 교역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경공업이 발달했던 상해는 중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원으로서도 불가결한 존재였다. 그러나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상해는 廣東이나 江蘇省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답보상태에 머물렀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90년대 들어 浦東地區개발이 추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개혁·개방초기 상해가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거점도시에서 소외되고 그로 인해 기존의 경제기반이 무너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혁초기 중앙의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四川省, 廣東省, 江蘇省이었는데, 사천성은 새로운 실권자인 鄧小平의 고향이었으며 개혁실험의 성공으로 총리직을 이어받게 될 趙紫陽을 배출한 곳이었다. 광둥성은 등소평정권 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葉劍英의 거점이었으며 그리고 강소성은 재정개혁을 포함한 개혁조치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와 달리 四人幫의 출신지이자 문화대혁명의 전면에 나섰던 상해는 중앙정부의 배려와 관심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문헌에 대한 대가를 상당히 치러야 했던 것이다.²⁵⁾

한편 80년대 전반에 걸친 경제개혁 자체도 상해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가격개혁과 그에 따른 중앙으로부터의 값싼 원자재 공급 등의 유리한 상황이 없어지게 됨으로써 상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거기에 개혁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국유부문의 발달이 지체됨으로써 국유부문에서의 정책이 보충되지 못

24) 1950년대 초반까지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출신의 譚鐵任과 제4군 사령관이었던 陳毅가 각각 상해시 당제1서기와 시장 등으로 임명되었으며 陳毅가 외교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정치국원이었던 柯慶施가 문혁직전까지 당제1서기와 시장을 겸임하였다. Klein, D and Clark, A., *Biographic Dictionary of Chinese Communism 1921~196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p.446~442.

25) 김영진, “개혁기의 중국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간 차별적인 재정관계의 분석: 상해시와 광둥성을 예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3호(1995), p.616.

하였다. 대외개방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광둥성이나 강소성과 달리 상해는 외국투자를 끌어들이는데 뒤졌고, 그 결과 상해 경제는 이들 지역보다 국영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았던 것이다. 이를테면 1984년 전국적으로는 공업생산치의 평균 73.6%가 국영부문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같은 해 상해시는 여전히 84.0%를 국영부문이 차지하였고 반면 광둥성과 강소성은 각기 53.5%와 63.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²⁶⁾

상해가 현재와 같이 다시금 중국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은 1989년 봄 '천안문사태' 이후 江澤民이 당총서기로 등용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후 강택민에 뒤이어 朱鎔基, 吳邦國 등 상해시 당위원회의 제 1서기 출신들이 중앙의 정치무대에 진출하여 새로운 상해인맥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적인 차원에서 포동지구개발이 추진되면서 상해는 다시 개혁시대의 총아로 떠오르게 되었다. 1990년 4월 국부원은 상해 포동지구의 개발을 승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는 포동에 대한 사회간접시설의 개발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10億元의 지원과 5億3千萬元의 차관을 지원 받았다.²⁷⁾ 포동지구의 개발은 상해시 정부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상해시 정부는 포동개발구에서 국내외기업의 진출과 함께 부동산산업대를 통한 수입으로 1991년 한 해 12.15億元을 조달하였다.²⁸⁾ 그리고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1992년 한해동안 약 33억 6천만달러의 외국투자를 끌어들이었는데 이는 그 이전까지의 12년간 외국투자액과 맞먹는 액수이다.²⁹⁾

이처럼 상해의 발전은 80년대 후반 이후 중앙에 진출한 상해인맥의 형성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들 상해인맥의 특징은 고학력의 전문기술관료들이란 점에서 개혁과 개방시대의 인사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정치안정을 바탕으로 대담한 경제개혁을 추구하는 등소평의 중국적 사회주의를 대표한다고 하겠다. 또한 상해인맥들은 상해시에 제직 당시 이미 상해발전전략에 대한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중앙부대 진출과 더불어 포동지구개발로 대표되는 상해발전전략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³⁰⁾

26) 國家統計局(編), 『中國統計年鑑 1985』(北京: 中國統計出版社, 1985), p.319.

27) Thomas Chan, "The Policy of Opening and Special economic Zone", in Kuan Hsinchi and Maurice Brosseau (eds.), *China Review* (Hong Kong: Hongkong University Press, 1991), pp.11~19.

28) 『經濟日報』 1992年 9月 30日.

29) J. Bruce Jacobs and Lijian Hong, "Shanghai and the Lower Yangzi Valley", David S. G. Goodman and Gerald Segal (eds.), *China Deconstructs: Politics, Trade and Regionalism* (London: Routledge, 1994), p.245.

30) 상해인맥의 형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서진영, "中國政治에서 上海인맥의 역할: 王洪文에서 江澤民까지" 『中國研究』(대륙연구소) 제1권 1호(1993), pp.44~69.

4.2 상해발전전략의 수립과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초기 상해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관심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자체적인 경제발전전략이나 청사진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상해는 기술, 인력, 교통, 통신 등 기본적인 산업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진 지역의 하나였으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경제적·재정적 의미가 큰 곳이었기 때문에 상해의 상대적인 낙후현상을 방지할 수단은 없었다. 1983년 8월 상해시를 방문한 당총서기 胡耀邦은 상해시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상해가 국민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당부하였다. 이후 상해는 자체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에 나시기 시작했으며 그것의 전개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단계는 1985년 상해시에 의해 수립된 “상해발전전략요강(上海發展戰略綱要)”을 전후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마침 1983년 상해시에는 芮杏文과 江澤民的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하였으며 그해 12월에 상해는 이미 “상해시 경제발전전략에 관한 제안(關與上海經濟發展戰略的議報提報)”을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 상해시는 이 보고서에서 사회간접시설과 기술개발투자를 통해 상해시를 국제무역, 금융, 상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더 많은 자율권과 재원을 주도록 요청하였다.³¹⁾ 그러나 중앙정부는 대도시인 상해가 실패했을 경우의 충격을 우려한 나머지 심천 등 남부지역의 경제특구 운용이 성공적이란 평가가 내려진 뒤에야 상해를 본격 개발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후 상해는 다시 1987년 12월에 “개혁을 심화·확대하며 외향형 경계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에 관한 보고(深化改革,擴大開放,加快上海經濟外向型轉變的報告)”를 국무원에 제출하였고 1988년 2월 국무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상해시에 대한 재정상의 몇 가지 우대정책이 도입되었다.

상해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단계에 접어드는 포동지구개발계획의 확정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1990년 4월 국부원은 상해의 포동지구개발을 승인하였으며 이듬해 개혁개방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을 주장하는 덩소평에 의한 南巡講話는 상해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덩소평은 1991년 12월에 남부지역의 경제특구를 시찰하고 상해에 들었는데 여기서 그는 경제특구를 만들었을 때 상해를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을 커다란 실수라고 유감을 표시하였다. 그렇게 했더라면 양자강(長江) 델타와

31) Lin Zhimin, “Reform and Shanghai: Changing Central-Local Fiscal Relations” in Jia Hao and Lin Zhimin (eds.), *Changing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 Reform and State Capacity* (Boulder: Westview Press, 1994), p.247.

인근지방 그리고 나아가서 전국의 개혁개방의 국면이 달랐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등소평은 상해시가 인재, 기술, 관리 면에서 분명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우위에 있으며 그 영향권이 넓다고 지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³²⁾ 등소평의 이러한 언급은 90년대 상해를 개방정책의 중심에 자리잡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하겠다.

상해발전전략의 3단계는 90년대 중반 이후 21세기를 대비하여 수립된 T자형 발전전략으로 설명된다고 하겠다.³³⁾ 이는 상해를 용의 머리로 하고 포둥을 용의 여의주에 비유하면서 그 꼬리인 重慶으로 파급된 상해의 발전 원동력이 남쪽인 雲南省 昆明과 멀리 티베트(西藏)소수민족자치구까지 퍼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발전전략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에 인접한 운남성 및 네팔, 인도와 연결될 티베트 자치구를 양자강 개발의 연장선상으로 끌어들이어 아세안과 인도를 파고드는 중점기지로서 상해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획은 보다 장기적인 것으로서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적어도 상해를 중심으로 중경까지 이어진 양자강 유역의 70여 개 도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연해지방의 개혁개방성과를 중시부 내륙으로 전파시켜 중국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은 보다 분명한 21세기 상해발전전략의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3 상해발전전략의 내용과 성과

90년대 상해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주요목표는 2000년까지 GNP를 1980년의 4배로 늘려 생활수준을 '小康'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상해시를 합리적인 산업구조와 선진과학기술, 고도의 문화수준을 보유한 현대적인 다기능적 국제도시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실현을 위한 상해의 각 부문별 주요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다.³⁴⁾

첫째, 상업·유통업의 경우 상해를 중국 최대의 무역·상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상가건설, 기존 상가의 개조에 주력한다. 포둥지구에 대형 쇼핑분을 건설하고 각 지역에 상호 연결되는 상업·서비스·유통망을 구축한다. 또한 유통구조를 혁신, 거시관리를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시장조절 기능을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상업과 유통부문간의 횡적 연계를 실현한다.

32) 鄧小平南巡講話和的二號文件(全文), 『爭鳴』1992年 第4期, p.25.

33) 중국의 지역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최수용,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참조.

34) 1991년 4월에 열린 제9기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上海市國民經濟社會發展十年計劃和第八個五年計劃綱要』 『上海經濟年鑑(1991)』 pp.52~65에서 발췌, 요약함.

둘째, 대외무역업의 경우 수출상품구조를 초급단계의 가공제품에서 정밀가공제품으로 개선, 기계·전기제품 수출에 주력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고품질 방직제품을 개발한다. 虹橋經濟技術開發區의 대외무역기능을 강화하고 포동의 外高橋保稅區를 활용, 수출상품의 가공생산에 주력하며 중계무역을 개척함으로써 상해를 亞·태지역의 무역중심지로 발전시킨다.

셋째, 금융보험업의 경우 증권시장의 신설과 개설, 외환조절시장 확대, 証券市場의 활성화, 보험업 육성, 외자은행 및 금융기구 유치, 각종 금융기구가 병존하는 금융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포동개발과 연계하여 포동지구내 금융센터를 형성한다.

넷째, 이외에 레저산업으로 상해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레저상품을 개발하여 매년 10% 이상의 관광객 증가를 꾀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정보 서비스망을 구축한다. 또한 포동신구를 중심으로 토지사용제도를 개혁, 토지사용권의 유상양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한편 상해의 종합발전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포동지구개발의 기본구상은 포동을 새로운 국제무역, 금융 및 공업중심지로 육성하여 상해경제권은 물론 양자강(長江)삼각주개발의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동지구에 대한 우대조치는 경제기술개발구³⁵⁾보다 우월하며 대체로 경제특구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 즉 금융과 보험업 등 제 3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포동지구 내에 있는 外高橋保稅區에 대해서는 경영범위와 금융관리 등에서 경제특구보다도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³⁶⁾

이와 같은 발전전략의 결과 상해시의 경제는 90년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일례로 1999년 현재 상해의 국내총생산은 4,035億元으로 전년 대비 10.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인당 GDP는 30,805원으로 전국 1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수출입총액은 1,093억 달러로서 대외무역부문은 전년 대비 무려 44.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³⁷⁾

요컨대 상해발전은 기존에 이루어진 중국 개혁·개방경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21세기에 상해를 전국 최대의 경제중심지와 태평양연안 최대의 금융, 무역중심지로 만들려는 거대한 구상 아래 전개되어 왔다고 하겠다. 특히 상해는 포동지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상해를 복합적인

35) 경제기술개발구의 설립주체는 성·직할시·현·지구 등 각급 지방정부로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자체예산을 투입, 설립하는데 해당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36) 이학규, "上海 浦東新區개발계획연구" 『中國研究』(대륙연구소), 권1권1호(1993년 봄), p. 81.

37) 國家統計局編, 『中國統計年鑑 2000』(北京: 中國統計出版社, 2000), pp.60~63.

기능을 갖춘 경제중심지와 현대화된 국제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은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추세와 잠재력을 고려할 때 결코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상해발전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임금억제, 도로 등 인프라확충, 포동과 포서지구간 적절한 산업배치 및 경쟁문제 등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혜정책의 한계성이라 하겠다. 정책결정자들의 과도한 정책개입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으로 인해 특혜정책이 존재기묘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³⁸⁾

5. 결론: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와 적용가능성

5.1 북한 경제체제개혁에 대한 함의

북한은 90년대 이후 대내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과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대외적인 고립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내외개방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중국과 북한의 경제발전과정의 연계성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비록 북한의 집권층이 단기적으로 중국과 같은 대담한 경제개혁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해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명 중국의 개방은 하나의 선형적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와 공산당 1당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의 구조적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개혁,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룩해온 중국의 개혁·발전모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개혁개방초기 등소평이 '중국식 모델'을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으나 북한의 경우 정치영역에 있어서의 변화를 최대한 절제하면서 경제영역에 있어서 시장경제 등 자본주의 요소의 적극 도입을 통한 질적 변화와 발전을 이룩해온 중국형 개혁·발전모델은 그들의 개혁과 경제발전 모색에 훌륭한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과 중국간에 존재하는 상황과 조건상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북한이 중국식 개혁·발전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38) Qi Luo, "Shanghai: The Dragon head of China's Economy", *Issues & Studies*, Vol.33, No.6, (June 1997), pp.28~32.

우선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은 보수세력과 개혁세력간의 심각한 노선투쟁의 산물이었고 천하대란의 혼란으로 점철되었고 중국 사회발전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했던 문화대혁명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데 비해 오늘의 북한사회에는 이러한 개혁을 위한 원동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개혁을 주도하는 개혁파 지도부가 과거 문화대혁명이나 모택동 체제의 가장 혹독한 피해자들로서 개혁의 강력한 추진세력으로 나타난 반면 북한의 경우 간부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현 체제의 기득권세력으로서 적극적인 체제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등소평의 지도적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당시 중국의 개혁정책결정과정과 모택동 사상이 대한 해석권에 있어서의 등소평의 위상이나 역할은 오늘날 북한에 있어서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주체사상의 해석권에 대한 김정일의 지위와는 비교될 수 없는 많은 차이성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 기존 모택동 사상이나 정책노선에 대한 수정이나 조정은 상당히 신중하고 우회적인 접근이 불가피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정책확립이나 집행에 앞서 이러한 우회적 접근보다는 필요에 따라 편의적인 수정이나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심이 앞을 북한은 중국에 비해 개혁의 공간적 여백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산업종사자의 구성비나 개혁개방을 위한 국제적 환경 등에서 과거 중국의 개혁개방당시와는 많은 상황적 이질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북한이 경제개혁과 발전을 추구하고 간다면 중국식 개혁개방모델의 기계적 도입보다는 중국식 모델과 북한의 현실적 상황을 결합한 '북한식 발전모델'을 모색해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북한은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나 중국에 비해 더욱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계획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조성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등을 고려할 때 개혁에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른다.

5.2 심천모델과 상해모델의 적용 가능성

북한이 중국식 대외개방과 경제개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 향후 북한에게 있어 선택 가능한 경제발전모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이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구 하는데 있어 선택 가능한 효율적 수단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구함으로써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시장중심인가 아니면 국가중심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인데 북한은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합리적 선택.

효율적 방식을 모색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발전의 제약조건으로서 낮은 저축율, 1차산품수출에 대한 의존, 교역조건 악화, 국내시장의 협소함, 경제제도의 후진성, 취약한 기술 및 숙련도, 기업가계층의 부재 등 후진국경제의 전형적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자본형성이 미약하고 민간자본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최대의 금융가, 기업가, 소비자로서 경제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결국 이와 같은 제약조건 하에서 시장중심적 발전전략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합리적 선택은 국가주도적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르는 발전모델을 80년대 심천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주도형 경제특구모델과 90년대 이후 포동지구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주도형 상해모델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북한이 참고할 수 있는 경제발전모델로는 심천식 경제특구모델의 북한적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개혁개방초기 중국의 발전모델이 深圳, 珠海, 汕頭, 廈門 등 4대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외자를 도입하고 대외교역을 활성화하는 것이었으며 상해가 주목받게 된 것은 90년대 초 포동지구를 개발하면서부터임을 감안할 때 상해식 발전모델보다는 기존의 경제특구모델이 북한의 실정에 맞게 적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상해발전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해 기존 경제특구보다 한 단계 높은 시장개방과 후방에서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배후지역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상해는 그 자체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양자강을 따라 중서부지역경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단순히 수출가공지지가 아닌 중국 내수시장의 전초기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수출가공지역으로서 그 외지역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인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기존 경제특구와는 달리 개방초기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시장개방효과가 크게 희석될 수 있다.

둘째, 상해는 중국을 포함한 중화경제권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부상을 위해 보다 고도화된 시장경제시스템의 도입을 준비해온 곳이다. 즉 상해는 장차 홍콩을 대신하여 동북아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라 하겠다.

따라서 북한이 특정지역을 상해식 발전모델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 시장경제시스템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개방 후보지역을 상호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배후지역이 존재해야 하며 또한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성을 포함한 북한의 개방후보지역은 이러한 기능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북한내에 금융의 중심지를 육성한다고 할지라도 국제금융 중심지의 하나인 서울의 존재는 또 다른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상해발전모델은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원칙을 확인해줄 수는 있지만 북한이 채택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적합한 모델은 아니며 오히려 심천특구와 같은 기존의 경제특구를 기본으로 한 중국식 점->선->면의 단계적 개방정책을 북한식 개방모델로 개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심천모델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여 대외개방을 시도하였고 1991년 11월 나진·선봉지역을 개방하였으나 외자유치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인 환경은 중국의 특구를 모방한 개방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비해 낮은 정치적 위상, 협소한 시장의 규모, 지리적 고립, 화교와 같은 인적 뒷받침의 결여 등에서 북한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개방과 경제개혁성공은 이러한 환경적 제약의 극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1970년대 말 일본 및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여 정치적 고립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 의미를 갖는 화교자본에도 많은 특혜를 부여하였다. 그러면서 개방과 동시에 국내 경제체제의 시장화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즉 중국은 국내외 정치적·경제적 환경의 개선으로 경제특구의 지속적인 성공을 뒷받침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경우 중국과 남한의 지원은 매우 유리한 환경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동시에 특구의 설치를 장기적으로 경제체제의 개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영진, “개혁기의 중국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간 차별적인 재정관계의 전개: 상해시와 광둥성을 예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3호, 1995.
- 김익수, 『중국투자론: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1999.
- 박형중, “脫스탈린化와 사회주의권의 분화: 사회주의권에서의 발전과 저발전의 문제” 『中蘇研究』 18권 2호, 1994.
- 백권호, 『中共經濟特區에 관한 研究』 서울: 산업연구원, 1989.
- 서진영, “등소평체제의 농촌경제정책” 『亞細亞研究』 제27권 2호, 1983.
- , “中國政治에서 上海인민의 역할: 王洪文에서 江澤民까지” 『中國研究』 (대륙연구소) 제1권 1호, 1993.
- 오승렬,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모델: 북한에 대한 함의”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과 남북경협모델』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전문가워크숍 발표논문(2001. 6. 12).
- 오용석, 『중국경제특구전략의 평가와 한국기업의 대응』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1.
- 이일영, “중국 농업구조개혁의 성과와 한계” 『中蘇研究』 19권 1호, 1995.
- 이학규, “上海 浦東新區개발계획연구” 『中國研究』 (대륙연구소), 제1권 1호, 1993.
- 최수용,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 민주평통사무처, 『북한의 改革·開放전망과 政策課題』 민주평통정책연구자료 제27호(2001.4).
- 國務院特區辦公室, 『中國對外開放地區投資環境和政策』昆明: 雲南人民出版社, 1993.
-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 『鄧小平文選(1975~1982)』北京: 人民出版社, 1983.
- 潘名山, 『上海對外開放戰略和政策』(上海: 上海財經大學出版社, 1999).
- 桑百川, 『區域開放戰略論』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6.
- 曾建微, “一項重要決策的誕生: 對外開放的新步驟” 『瞭望』 1984年 第24期.

- 鄧小平南巡講話和的二號文件(全文),『爭鳴』1992年 第4期。
- 羅清和,『特區經濟學導論』北京:中央編譯出版社,2001。
- David A. Dyker, "Decentralization and the Command Principle: Some Lessons from Soviet Experience"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5, No.2, 1981.
- Alec Nove,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London: Allen & Unwin, 1983.
- Jan S. Prybyla, "Changes in the Chinese Economy: An Introduction", *Asian Survey*, Vol.19, No.5, 1979.
- Harry Harding, *China's Second Revolution*.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 Susan L. Shirk, "Playing to the Provinces: Deng Xiaoping's Political Strategy of Economic Reform",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23, No.3/4, 1990.
- Jude Howell, *China Opens Its Doors: The Politics of Economic Transition*. Exeter: Harvester Wheatsheat, 1993.
- Klein, D and Clark, A., *Biographic Dictionary of Chinese Communism 1921~1965*.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Thomas Chan, "The Policy of Opening and Special economic Zone", in Kuan Hsinchi and Maurice Brosseau (eds.), *China Review*. Hong Kong: Hongkong University Press, 1991.
- Lin Zhimin, "Reform and Shanghai: Changing Central-Local Fiscal Relations" in Jia Hao and Lin Zhimin (eds.), *Changing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 Reform and State Capacity*. Boulder: Westview Press, 1994.
- Qi Luo, "Shanghai: The Dragon head of China's Economy". *Issues & Studies*, Vol.33, No.6, 1997.
- J. Bruce Jacobs and Lijian Hong, "Shanghai and the Lower Yangzi Valley", David S. G. Goodman and Gerald Segal (eds.), *China Deconstructs: Politics, Trade and Regionalism* (London: Routledge, 1994), p.245.

북한의 사회법률직업에 관한 연구

-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을 사례로 -



이 동 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빙연구원)

목 차

【요약문】	63
1. 서론	97
2. 변호사와 무역중재원 개혁의 배경	98
3.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의 개혁 과정	105
4. 중국과의 비교	112
5. 결론	119
※ 참고문헌	123

【 요약 문 】

북한은 대내 개혁 없는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중국의 대내 개혁과 대외 개방의 동시 추진 정책과는 다르다. 중국은 비록 경제 부문에서의 개혁에 제한되기는 하였지만 개혁과 개방이 선순환을 이루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내 개혁을 하지 않는 채 대외 개방을 추진한 결과 대외 개방이 성공을 거두지도 못하고 또 대외 개방의 성공에 힘입은 대내 개혁의 추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대외 개방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밟아왔다.

북한의 정책의 변화를 헌법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보면 1972년 헌법 이후에 제1차 대외 개방, 1992년 헌법 이후에 제2차 개방, 1998년 헌법 이후에 제3차 대외 개방이 이루어졌다. 제1차 대외 개방은 1984년에 공포된 <합자경영기업법>, 제2차 대외 개방은 1992년에 공포된 <외국인투자법> 등 일련의 외국인투자관계법 등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북한은 대외 개방의 대내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제특수지대에서만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8년에 공포된 <무역법>을 보면 무역도 계획경제 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에서는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분쟁 해결 절차로서는 민원 제기(신소), 협의, 중재, 소송 등이 있다. 중지는 무역중재(해사중재를 포함)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인이 기업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대외민사관계에서도 외국인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변호사가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면 외국인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사회법률직업일 필요가 있다. 1987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변호사회가 재판소의 지도를 받는 체제를 개혁하여 변호사회를 재판소로부터 분리시킨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993년 <변호사법>을 보면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변호사회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대외적인 경제법률관계와 민사법률관계를 각각 규제하는 법률로서 1992년과 1995년에 각각 <대외경제계약법>과 <대외민사관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대외경제법률관계에서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규제하는 법률로서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에서는 중재협의회가 재판기관과 달리 사회적 조직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을 법률상으로 사회법률직업으로 규정할 것은 그들의 고객이 외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 만약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이 국가법률직업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그들을 선임할 리가 없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사회법률직업이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사회'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전의 중국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변호사를 국가법률직업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그 영향으로 변호사는 사회법률직업으로 개혁하게 되었다. 이것은 개혁·개방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회'가 성립할 여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개방과 개혁이 맞물려 발전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변호사와 무역중재원과 같은 사회법률직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 결과 내외 개방을 위한 법적 하부구조의 하나로서의 구실을 헤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개방과 함께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1. 서론

무역·외자 유치·기술 도입과 같은 대외 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하부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 개방을 추진하면서 입법과 사법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서 사법, 특히 사회법률직업으로서의 변호사와 무역중재원 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북한의 대외 개방과 관련된 법률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을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도 '경제법', 특히 '점외경제법'을 중심으로 법적 하부구조가 정비되었고, 이 과정이 선순환을 이루어 개혁·개방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북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이 글의 배후에 깔려 있다. 이 점에서 이 글은 역사적인 연구인 동시에 비교적인 연구이고 법 현상을 사회 현상과의 관련에서 설명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법률의 외부에서 관찰한다는 점에서 법사회학적인 연구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양자가 당사자와 민사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사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이 국가법률직업과 구분되는 사회법률직업으로 존재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의 존재 양태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 한 국가에서도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의 존재 양태는 하나의 존재 양태로 고착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래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이 어떻게 개혁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중국을 비교 맥락으로 하여 이를 평가할 것이다. 북한의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이 사회법률직업으로 등장하는 데는 사회가 미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이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획득할 것인가, 그리고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이 자율성이 미약한 상황에서 어떻게 당사자의 신임을 획득할 것인가의 이중의 함정이 붙어 있다. 북한의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이 이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을 이룰 것이다.¹⁾

1)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변호사의 직업은 무역중재원의 직업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변호사는 무역중재원을 겸임할 수도 있고 또 당사자의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대외 개방, 곧 외국인투자관계법이나 무역법 등과 관련된 변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북한의 변호사와 무역중재원 개혁의 배경을 대외 개방의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대외 개방 시기를 1972년 헌법 체제, 1992년 헌법 체제, 1998년 헌법 체제로 나누어서, 각 시기의 대외 개방의 환경,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제정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의 개혁 과정을 개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각각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의 개혁 과정을 중국과의 비교 맥락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대외 개방 환경, '경제법' 제정 과정, 변호사와 무역중재원 개혁 과정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볼 것이다. 제4장은 결론으로서 북한의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의 개혁을 사회법률직업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한계와 성취를 평가해 볼 것이다.²⁾

2. 변호사와 무역중재원 개혁의 배경

2.1 1972년 헌법 체제에서의 대외 개방

2.1.1 1972년 헌법

북한은 1948년에 제정된 <인민민주주의헌법>을 1972년에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정하였다. 구헌법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유형을 국가의 소유, 협동단체의 소유, 개인의 소유, 개인법인의 소유를 인정하였지만(5조1항), 신헌법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 유형으로 공유제, 곧 국가 소유와 협동단체의 소유만 인정하였다(18조). 이러한 소유 제도에 바탕하여 국가는 전면적인 계획경제를 실시하였고 사회의 모든 경제 활동은 국가의 예산편성과 경제계획에 의해 조정·통제되게 되었다(金雲龍, 1973: 64).

1972년은 6개년 경제계획(1971~76년)의 두 번째 해였다. 북한은 제1차 7개년 경제계획 기간(1961~70년)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2.8%로서 원래의 목표치인 18%에는 미달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 시기의 경제성장을 주로 대중동원을 통한 노동력 투입의 증가를 통해 이루었다. 대중동원으로는 정신적 자극을 강조하는 '천리마운동'과 정신적 자극(집단주의)과 물질적 자극(독립채산제)을 결합하는 '대안의 사업 체계'가 있었다.

목표지에 달하지 못한 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첫

2) 북한의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을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남한의 변호사와 무역중재원과 비교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제,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액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짜여진 것이지만 1960년 이후 구소련의 원조액이 크게 줄어들었고, 둘째, 군사비 지출의 증가였다. 1960~61년에 전체 예산의 19%였던 군사비지출은 1967~68년에는 31.1%로 증가하였다(金一平, 1973: 259~262).

북한에서는 경제계획 기간을 3년 연장한 후에 다시 6개년 경제계획(1971~76년)을 실시하면서 다시 연평균 목표 성장률을 14%로 잡았다(앞의 논문, 261).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것은 아니었지만 1960년대 남한은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을 기대 이상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다시 제2차 5개년 경제계획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과 비교할 때 경제에서의 실패가 두드러져 보였다. 1962년에 남북간의 국민총생산 규모는 1.3 대 1이었던 것이 1972년에는 2.2 대 1로 격차가 커졌다. 1972년은 미중관계와 중일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남북관계도 개선되어 군사비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남북간에는 <유신헌법>과 <사회주의헌법>이 각각 제정되어 긴장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기계류 및 플랜트 등을 의욕적으로 수입하여 일거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1차 오일쇼크를 맞아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짐에 따라 북한은 수출이 부진하여 외채가 늘어나게 되어 지불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반면에 남한은 3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1979년 남북간의 국민총생산 규모는 약 5 대 1로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1인당 국민총생산은 1974년부터 우리 나라가 앞서기 시작하여 1979년에는 2.2 대 1의 차이를 나타내었다(金永圭, 1981: 80).

북한이 경제가 낙후하게 된 데에는 내향성성장 추구 전략과도 관련이 있었다. 종래 이러한 내향성성장 추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무역거래는 경제계획 수행과정에서 국내의 수준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의 기자재 및 원료에 한해 수입하고(수입우선주의), 이들 수입품에 대한 대금 지불수단으로서 수출이 이루어졌고(수출입균형주의), 무역형태는 주로 쌍무적 바타무역제이고(바타무역주의), 결제방법도 수출액과 수입액을 협정된 소정통화를 단위로 하여 상호간에 스윙폭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후에 잔고만을 결제하는 청산결제형태를 취하였다(김영규, 1979: 138; 奎應烈, 1981: 78~79).

청산결제방식은 무역수지의 양국간 균형을 대체로 보장하고 외화를 사용하지 않고도 무역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점이 있으나, 현금실악을 위하여 무역량이 축소 균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그 결점이 있다. 즉, 어느 한 국가의 수출이 일방적으로 신장되어 흑자가 스윙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상대국으로부터 적당한 수입상품을 찾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의 흑

자는 경화와 교환될 수 없으므로 결국 한도 이상의 수출은 억제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그 국가의 수출신장에 부진을 초래하여 무역량이 축소균형으로 전환하게 된다(全應烈, 1981: 100~101).

구소련과 동구 국가들은 60년대부터 코메콘 역내의 국제분업뿐 아니라 서방국가와의 무역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었지만, 북한은 70년대에 들어와서도 바다세와 같은 특수무역의 절대적인 비중이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역질제에서도 청산질제방식을 비교적 엄격히 고수하고 있었다(ibid., 105). 이 때문에 남북한간의 무역규모 격차가 날로 확대되어 갔다. 남북한의 수출액 격차는 1965년에는 1 대 1.3이었는데, 1966년에는 1 대 1로 되고, 1969년에는 1.9 대 1, 1971년에는 2.8 대 1, 1972년에는 4.2 대 1, 1973년에는 6.6 대 1, 1977년에는 14.8 대 1로 확대되었다.³⁾ 남북한의 수출규모를 비교하면 남한의 경우는 1961년에 4,000만달러였던 것이 1964년에 1억달러, 1971년에 10억달러, 1977년에 100억달러로 확대되었는데 반하여 북한은 1958년에 1억달러였던 것이 1979년에야 10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남북한간의 국민총생산 규모의 격차가 무역규모, 특히 수출규모의 격차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2 제1차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제정

제2차 7개년 경제계획(1974~84년)의 마지막 해인 1984년에 북한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초로 <합자경영기업법(이하 합영법)>을 제정·공포하고 다음 해에 <합영법시행규정>, <합영회사소득세법>, <합영회사소득세법 세칙> 등을 제정함으로써 외자유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와는 내조적으로 합영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외자를 유치하려는 북한의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김일성은 1986년말의 시정연설에서 수출제일주의 원칙을 제시하고(김영규, 1988: 55), 제3차 7개년 경제계획(1987~93년)의 연평균 목표 무역신장률을 18.1%로 잡았다. 1987년에는 무역신장률이 13.7%에 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수출주종품은 아직도 광산물·농수산물에 38.7%를 점하고 있고 공산품의 대부분은 철강재·아연피와 같은 반제품인데, 수입품은 기계류·전기기기·화학제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에 처하게 되었다. 1987년의 무역적자폭은 7억 3,000만달러였고(앞의 논문, 60), 외채규모는 52억 1,000만달러에 달하였다.

북한에서는 1984년에 처음으로 합영기업을 허가하는 법령을 제정한 것이

3) 1979년에는 12.8 대 1로 약간 축소되었다(김영규, 1981: 82). 1979년은 남한의 경제불황기였다.

아니라 그 이전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쌓았다고 한다. 첫째, 1947년 3월 북조선인민위원회와 소련외국무역성 사이에 〈조선-소련해운주식회사조직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동년 4월 〈협정이행을 위한 합의서〉이 체결되어, 1948년 12월에 조선-소련해운주식회사가 창설되었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이었다. 1949년 12월 내각비준 제11호로 최초의 외국투자관계법규인 〈북한-소련해운주식회사규정〉을 공포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한다(강정남, 2000: 63).

둘째, 새로운 유한책임회사형태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하려고, 1965년 북한과 폴란드 정부간에 〈공동해운회사조직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다음 해에 내각결정으로 〈유한책임회사규정〉, 〈회사등록규정〉, 〈회사과산규정〉 등을 공포하고, 유한책임회사 형태인 조선-폴란드공동해운회사를 설립하였다. 〈유한책임회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조선-소련해운주식회사를 창설운영하는 규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 그리고 당시의 실정을 충분히 고려한 입법적 조치였다고 한다(앞의 논문, 63, 65).

무역상대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국가, 특히 가장 발달한 사회주의 국가인 구소련이 가장 주요한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당시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북한과 구소련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도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정책과 수정주의자들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광범하게 창설운영할 수 없었다고 하고, "수정주의자들은 '국제분업'을 형성하고 우리 나라가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온갖 비열한 책동을 다 하였다"고 한다(앞의 논문, 64).

1984년에 제정된 〈합영법〉의 경우에 그 대상은 사회주의 국가도 될 수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도 될 수 있었다. 중국의 예예기적립 외국인투자자는 주로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올 것으로 기대되었을 것이나 투자 유치 실적이 미비하였다. 무역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 직접 투자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북한의 내수시장이 좁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매력의 중국보다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후술할 것이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였다.

2.2 1992년 헌법 체제에서의 대외 개방

2.2.1 1992년의 헌법

북한은 1989년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톈안문 사건으로 중국의 경제 분황,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같은 대외 여건의 어려움을 맞았다.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되어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1991년 나진·선봉의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하고, 1992.2 새로운 무역체제 도입 선언을 하였다. 무역부부장에 의하면 새로운 무역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 밑에 대외경제위원회는 물론 생산을 담당할 위원회, 부들과 도들에서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무역을 한다. 대외경제위원회를 비롯한 위원회, 부들에서 하는 무역을 국가무역이라고 하고, 도행정경제위원회에서 하는 무역을 지방무역이라고 하는데, 종래에는 대외무역을 대외경제위원회에서만 한 것을, 대외경제위원회는 계획적 지도와 통제를 하고, 무역은 생산을 담당할 위원회, 부들과 도들에서 무역관리부서와 무역회사를 두고 자기 부문, 자기 지방에서 생산한 수출품들을 직접 내다 팔고 필요한 제품들을 직접 사다 쓰게 한 것이다(려신희, 1992: 30).

둘째,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함으로써 무역의 폭을 넓힌다(이를 무역의 다각화라고 한다). 새로운 무역체제는 사회주의 나라들은 물론이고 발전도상국가들이나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무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앞의 논문, 32).

셋째, 대외 무역의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능동적으로 활용한다(이를 무역의 다양화라고 한다).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는 주문자상표, 가공무역, 구상무역, 변경무역 등이 있다.⁴⁾

동년 4월 개정된 헌법에서는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개인들과의 기업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37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36조),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16조)는 규정을 신설하여 대외 개방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⁵⁾ 그러나 소유제에 대해서는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20조)"라고 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를 한층 강조함으로써, 대외 개방과 대내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국의 모형과는 다른 대내 개혁 없는 대외 개

4) 김일성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자면 위원회, 부들과 도들에서 무역활동을 직접 하게 하는 한편 대외시장을 끊임없이 넓혀나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앞의 논문, 30).

5) 1990년에 제정된 <민법>에서는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를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에 포함시켰다(11조2항).

방 추진이라는 북한 모형을 천명하였다.

2.2.2 제2차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제정

헌법에서의 외자 도입을 촉진하는 규정에 조응하여 1992년 10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대외경제계약법〉을, 1993년에는 〈외국투자은행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을 제정하고, 1994년에는 〈합영법〉을 개정하고, 〈외국인기업법시행규정〉, 〈외국투자은행법시행규정〉, 1995년에는 〈합영법시행규정〉, 〈합작법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 〈대외경제계약법〉에서는

그리고 1993년에는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하 지대법)〉, 〈토지임대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이하 세금법)〉, 1994년에는 〈토지임대법시행규정〉, 〈세금법시행규정〉, 1995년에는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건물 양도 및 저장 규정〉, 〈보험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외국인투자관계법 가운데서 지대법을 제외한 모든 법령과 규정에서는 분쟁해결을 규제하고 있다. 분쟁해결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① 당사자 협의,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경제기관, 합의시 제3국 중재기관인 경우로서 〈외국인투자법〉, 〈합영법〉, 〈대외경제계약법〉, 〈토지임대법〉, 〈보험법〉, 〈외국투자은행법〉 등이 있다. ② 당사자 협의,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인 경우로서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 등이 있다. ③ 신소·청원, 북한의 재판기관인 경우로서 〈세금법〉이 있다(법무부, 1997: 308-310). 이 가운데 재판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은 국가중재를,⁶⁾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은 무역중재를, 외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은 국제중재를 지칭한다.⁷⁾

국가중재의 경우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서(합영법 시행세칙 100조), 북한의 민사소송의 직권주의 구조로 볼 때 외국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으므로 무역중재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고 무역중재의 경우도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공정한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관련법 중에서는 제3국의 중재기관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거나 불허하는 경우도 있었다.

6) 북한에서는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에 중재부서를 설치하여 경제기관, 기업소, 경제단체들간의 국가경제계획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수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7) 1995년에는 국제사법인 〈대외민사관계법〉도 제정하였다. 대외민사관계법에는 국제민사소송법(5장)도 포함하고 있다.

2.3 1998년 헌법 체제에서의 대외 개방

2.3.1 1998년 헌법

1998년 헌법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대외 개방을 강화하고 있다. 첫째,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제도에서 국가·사회협동단체라고 하여 합영회사와 합작회사 등을 소유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협동단체는 집단소유체로서 공유체인 반면에 합영회사나 합작회사는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들을 사회협동단체에 포함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합영법 5조 및 합작법 시행규정 8조 참조).⁸⁾ 둘째,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36조)”로 고쳐, 대외무역활동의 주체를 합영회사와 합작회사 등에까지 확대하였다. 셋째, “특수경제지대 내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을 창설·운영한다(37조)”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특수경제지대내에서 여러 가지 합영·합작기업 및 외국인기업의 창설 등 외국인투자의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특수지대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뿐 아니라 일산·남포 등 보세가공지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제성호, 1998: 133).

2.3.2 제3차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제정에 대한 전망

1998년에 <무역법>을 제정하고 다음 해에는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였다. <무역법>에서는 무역거래 원칙, 무역회사의 설립과 관리운영 절차, 무역계획의 작성, 수출입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해 놓았다. 무역회사는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기관의 승인하에 설립되고 수출입허가는 정무원 대외경제기관이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申雄湜·安成旌, 273~276).

2000년 남북한 정상회담과 2001년 김정일의 상하이 방문에서의 ‘신사고’ 발언은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동시 추진 모형으로 정책을 전환해 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 내내 개혁을 추진한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외 개방과 관련하여 하나의 돌파구로서 남북경제협력을 들 수 있다. 아직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에서는 남한의 기업·개인의 투자에 관한 규정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8) ‘뒷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위경영에서 나오는 생산물’ 외에 추가적으로 “그 밖에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 수입에 속한다(24조)”고 규정하여 개인수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장마당이나 농민시장에서 생필품을 포함한 물건을 자유롭게 판매함으로써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제성호, 1988: 134~135).

2000. 11 남북 경제협력 실무접촉에서는 남기지연이나 제품 불량 등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하는 상사분쟁해결합의서를 채택하였다고 하는데 이 합의서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제3차 외국인투자관련법제가 정비되기를 기대해 본다.

3. 변호사와 무역중재원의 개혁 과정

3.1 변호사의 개혁 과정

3.1.1 변호사 개혁 이전

종래 북한의 변호사에 관한 연구에서는 1993년 이전에는 1948년에 제정된 <변호사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를 규제하는 법률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조병천(1996)의 논문으로 1961. 7 내각결정 제128호로 공포된 <변호사회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제도가 한차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변호사 체제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다. ① 1946. 3에 공포된 <인민위원회사법국·재판소·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에서는 사법국---도사법부---변호사의 체제로서 곧 변호사는 직접 사법행정부문에 소속하는 체제였다. ② 1947. 2에 공포된 <변호사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법국---(변호사회)---도사법부---도변호사회(상무위원회)---(도변호사회사무소)---변호사의 체제로서 변호사는 도변호사회에 소속하고, 도변호사회상무위원회가 변호사를 관리하며, 다시 도변호사회는 사법국과 도사법국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체제였다. ③ 1948. 11에 공포된 <변호사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법성---도사법부---도변호사회(상무위원회)---변호사분회---변호사의 체제였다. 1948년의 변호사 체제에 대해서 조병천(1996: 55)은 "사법성은 도사법부를 통하여 변호사회 사업에 대한 일반적 지도만 수행하며 변호사회 내부조직 및 그 분회 사업에 관한 일체 문제는 자치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여 변호사회의 독자성을 부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⁹⁾

이 체제가 개혁된 것은 1950년대 중반 일부의 변호사들이 사법부문에 기여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로 낙인찍히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¹⁰⁾ 1958년에

9 이 시기의 북한 변호사에 관한 연구로는 姜求眞(1975: 141-165)를 참조하라.
10) 이들은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한다',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등 부르조아적이고 수정주의적인 구호를 내걸었고, "견실치 못한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소위 '공정한 일방'에 서야 한다고 하고...용당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타당화와 같은 반혁명분자에

발간된 사법성 기관지인 <민주사법>에서는 “반당중파분자는 재판의 이익을 해하여서라도 피고인을 비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변호사가 활동에 관여한 사건에 있어서 무죄건수, 공소기각 또는 파기된 사건수의 다과에 따라 변호사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다(제1호)”고 하고, 이에 대해서 “그러나 양심적인 변호사는 그러한 불욕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은폐된 범죄행위, 반인민적 행위를 청취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에 알려 신속히 처리하게 할 의무가 있다(11호)”고 주장하였다(법원행정처, 1995a: 29).

김일성은 1959. 11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들은 범정에 나가서 우리 당 정책의 선전자가 되어야 하며 죄를 진 사람 자신이 자기가 왜 죄를 짓게 되었으며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이 변호사들의 임무”라고 하였다(조병진, 1996: 57).

이러한 정책 전환을 반영하여 <변호사회에 관한 규정>에 제정되었다. 위 규정에서는 변호사회의 기본 과업을 “변호사활동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되는 변호사의 조직과 임무, 변호사자격, 변호사보수 등을 규제하였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1961. 11 내각비준 제805호에 의하여 중앙변호사회와 도 변호사회가 조직되었다(조병진, 1996: 57). 위 규정의 원문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후술할 김정일의 지시에 따르면 당시의 변호사 체제는 재판소—변호사회—변호사의 체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변호사회가 재판소에 예속되게 된 것은 1959. 9 사법성이 폐지되어 최고재판소가 그 임무를 인수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호사 체제에 대해서 북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변호사 제도가 정연하게 수립되었으며 변호사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적 공간과 질차가 없어지고 근로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앞의 논문, 57).¹¹⁾ 변호사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적 공간과 질차가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변호사 사업은 개인영리업이 아니라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참다운 법률 활동으로 되었다. 또한 변호사들은 그 이

내해서 ‘인권 옹호’의 미명 아래 무죄로 변호하는 엄중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ibid., 56).

11) 이와 관련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각 도에 공민의 자원적 단체인 변호사회를 두어 상담, 대서,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다(1조, 2조, 3조). 변호사회는 변호사회의 내부조직 및 그 분회의 사업에 관한 일체 문제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이를 해결한다(5조). 변호사회상부위원회는 선거에 의해 5~9명으로 구성된다(8조1항). 변호사회는 사법성과 도사법부의 일반적 지도를 받는다(6조). 변호사회분회는 사법성이 승인하는 계획에 순거하여 필요한 수를 둔다(10조). 사법성은 상부위원회가 가입을 결정한 변호사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18조2항).

평한 부대조건이나 차별이 없이 인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성실하게 하며 그들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적극 이바지하는 참다운 인민의 법일꾼으로 되게 되었다”고 하는 진술에서 사회주의 변호사제도가 무엇을 뜻하는가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¹²⁾

변호사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7년 <변호사에 관한 규정>에서는 ‘변호사의 보수가 하나의 장(1개 조)을 이루고 보수액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¹³⁾ 1948년 <변호사에 관한 규정>에서는 “변호사회가 담당하는 법률적 원조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불한다. 보수는 사법성에서 제정한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체결하는 변호사회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다(1조)”라고 하고, “변호사회상무위원회는 변호사보수액의 준수여부를 감시한다(2(조5항))”고 하였다.¹⁴⁾ 그리고 1947년의 법률에서는 변호사회의 임무와 권한 중에 회원으로부터 변호사회에 들여놓을 회비 및 적립금의 지정을 포함시켜 변호사가 일부를 회비와 적립금으로 변호사회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갔을 것을 시사하고 있다.¹⁵⁾ 그러나 1948년의 법률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변호사의 보수는 모두 변호사회에 바치고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곧 1948년에 변호사의 자율성이 더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1년의 <변호사회에 관한 규정>에서도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변호사사업이 ‘개인영리업’이 아니라고 하고 ‘그 어떤 부대조건이나 차별이 없이’ 인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변호사 보수와 월급간의 연계가 더 약화되고 월금액도 더 낮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변호사가 고객보다는 국가를 대변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곧 변호사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12) 다음과 같은 평가도 시각이 다를 뿐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 않다. “북한의 변호사는 변호사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주의혁명의 도구, 사회주의 준법성의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강요되었는데, 이러한 기초는 새로운 변호사법이 채택되기까지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법원행정처, 1995a: 29).

13) 형사사건 변론은 3천원(동일한 사건의 제2심에서는 2천원), 민사사건 소송 대리는 소송 가격에 따라 천원에서 4천원까지이고(소속변호사회상무위원회의 허가를 얻는 경우에는 단원까지), 대서는 백원이하(상소서인 경우에는 300원이하)였다.

14) 사법성이 제정한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15) “변호사보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회로부터 매달 천원이상의 급여를 받는다(제2조3항)”고 하는 규정에서 유추하여 보면 변호사보수액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1.2 변호사 개혁

1987. 11 김정일은 변호사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재판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는 새로운 변호사회의 조직 체계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인민위원회 지시 제9호를 비롯한 해당 국가기관들의 결정·지시에 의하여 변호사회는 재판소로부터 분리되고 중앙과 각 도에 변호사회를 두고 도변호사회 변호사들을 인민재판소에 주체시켰다. 그리고 1988. 3에 각급 변호사회들이 자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조병천, 1996: 57~58). 따라서 변호사 체제는 중앙변호사회—도변호사회—(인민재판소)—변호사의 체제로 되었다.

1993년 공포된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체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중앙변호사회(변호사위원회)—도(직할시)변호사회(변호사위원회)/부분변호사회(변호사위원회)—(사무소 또는 법률상담소)—변호사.

변호사위원회가 변호사 선임 신청을 수리하고 사업분담을 조직하고 보수를 받는다(33조2항, 5항).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의 지도밑에 활동한다(8조).

각급 변호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6) (1) 변호사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을 제때에 알려주고 그들이 인민의 충실한 서비스제공자로 활동하도록 교양한다. (2) 법률적 지원을 요구하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의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분담을 조직한다(사업분담이 변호사 선임권을 제약하는가). (3) 변호사들의 우수한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며 그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한다. (4) 아래 위원회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통제한다. (5) 변호사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며 변호사 보수를 받는다(30조).

조선변호사회중앙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심사와 자격박탈심사를 하고(22조1항, 24조2항), 변호사보수기준을 정하고(26조1항), 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한다. <변호사법>에서는 사법성과 변호사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것이 변호사회가 국가로부터 자율적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사법행정부문의 변호사회에 관한 일반적 지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점은 변호사 개혁의 조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입법 목적으로서 “변호사의 역할을 높여 기관·기업소·단체 및 공민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1조)”는 규정은 1947. 2에 공포된 <변호사에 관한 규정>에서 법의 정확한

16) 변호사위원회는 위원장, 서기장, 위원으로 구성한다(29조2항). 서기장이 변호사 출신인가, 사법성의 파견위원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집행을 우선한 것과 비교하여 개혁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¹⁷⁾ 그리고 다음과 같은 규정들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지원을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체도를 옹호한다(2조 1항). 국가는 변호사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한다(2조 2항). 국가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보장한다(4조).¹⁸⁾ 국가는 변호사 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한다(6조). 국가는 변호사양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변호사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한다(7조).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또는 민사법률행위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대리의 위임절차, 대리행위의 법적 효과, 대리권의 소멸과 같은 것은 민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17조).¹⁹⁾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을 보면 변호사중앙위원회가 변호사 보수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여 변호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변호사 보수와 월급이 어떻게 연계되는가는 확인할 수 없다. 변호사회는 사단단체이지만 사회단체도 국가기관과 다르지 않으므로 변호사도 국가공무원에 준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변호사 보수와 연계하여 월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보수와 연계하여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받는 월급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²⁰⁾

3.2 무역중재원의 개혁 과정

3.2.1 무역중재원의 개혁 이전

북한의 중재에는 국가중재와 국제중재가 있고 다시 국제중재에는 무역중재와 해상중재가 있다. 1988년에 해상중재가 무역중재로부터 분리되었다. 국가중재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기관·기업소·단체들 사이의 분쟁을 심리·해결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이고 무역중재는 무역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리·해결하는 무역중재위원회와 중재당사자 및 그 대리인들의 활동이다(김춘영 1996: 59).

북한에서의 무역 관리기구로서는 1957년 설립한 내각 대외경제총국과 1958년 설립된 무역성(대내외상업성이 무역성과 상업성으로 분리)이 있었

17) 「변호사에 관한 규정」에서는 “변호사는 각급 재판기관에 법률적 원조와 협력을 다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시에 기여함을 그 임무로 한다”(1조)고 하여 개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대리인으로서보다는 재판소의 강화한 재판을 위한 협조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18) 그러나 형사변호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관계가 민사상의 위임계약관계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19) 북한의 민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1991년 국가법령으로 채택되었다.

20) 중국의 경우는 변호사가 중건 초기에는 전자의 방식으로 받았다가 점차 후자로 개혁되어 갔으며,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후자의 방식으로 월급을 받았다(이동진, 2000).

다. 1972년에는 대외경제사업부, 무역부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외경제사업부는 전 산업별 품목을 취급하는 무역에 대해서, 무역부는 특정 산업별 품목을 취급하는 무역에 대해서 관할하였다. 각 무역회사는 성질에 따라서 대외경제사업부나 무역부에 속하였다.

무역부와 대외경제사업부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관할하고, 비수교국인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관할하는 기구로서 국제무역촉진위원회(무촉회)가 있었다. 무촉회는 대외적으로 민간단체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무역부 산하의 국가기관이었다(이러한 사정은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촉회는 계약 이행에서 파생하는 무역단체들과 외국단체들간의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직속기관으로 무역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88. 8 정부원결정 제53호로 해사중재위원회가 조직되어 해사중재제도가 수립되었다(앞의 논문, 62).

1971년 평양에서 발간한 <법학사전>에서는 국제무역중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국제무역중재의 심의대상에는 각국 무역회사들간의 상품매매계약 및 위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청구와 관련된 분쟁과 기타 무역거래와 관련된 분쟁들이 속한다. 무역중재에서는 분쟁쌍방이 각각 재결원을 지명하며 지명된 재결원들은 다시 책임재결원을 선출하며 분쟁쌍방은 재결원의 지명을 중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북한의 무역중재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 국가들 및 만세만미공동투쟁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생독립국가들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들은 많은 경우 상호이해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간혹 국제무역중재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충분한 심의 밑에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하였다(최종고, 1993: 258).

그러나 아직까지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북한의 중재사례가 일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내에서 공정한 분쟁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북한의 회사와 상사분쟁을 해결하지 위해서는 중국의 상설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申漢東, 1993: 373).

3.2.2 무역중재원의 개혁

1984년에 공포된 <합영법>에서는 “합영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견상이(분쟁)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심의한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기관에 분쟁문제의 심의를 제기할 수 있다(26조)”라고 규정하였고, 다음 해에 공포된 <합영법시행세칙>에서도

이를 확인하면서(68조, 71조), 북한의 중재기관을 '무역중재기관'으로 특정하였다.

1992년 이후에 제정된 여러 외국인투자관계법에서도 유사한 구정을 두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북한의 재판기관은 국가중재재판소를 말하고, 중재기관은 무역중재위원회를 말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법인으로 취급되어 북한의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중재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국가중재는 민사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지만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국가중재원은 재판관과는 달리 인민위원회가 선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임명한다.

북한의 무역중재에 관한 법률로는 <무역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 및 <중재위원회에 있어서의 사건처리규정>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1989. 1 부속회 결정 제2호로 마련된 <중재심의규정>이 무역부 기사 제2호로 채택되었다(申策澁·安成強, 1998: 550).²¹⁾ 북한에서는 대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중재규정>을 제정하여 무역중재제도를 정비하였다. <무역중재규정> 제1조에서는 무역중재위원회의 수리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북한의 무역기관 및 그 밖의 경제기관들과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자인인들 사이에 맺어진 상품구매계약, 판매계약, 위탁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2) 상품의 수송과 보험, 보관, 은행업무 및 그 밖의 경제기술교류와 관련된 분쟁(김춘영, 1996: 62). 곧 무역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들 가운데서 해상수송과 해상경제업무활동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 모든 분쟁을 대상으로 하였다.

북한은 1995. 3에 통일적인 중재법전인 <중재법>을 공포하고 다시 1999년에涉外중재(무역중재와 해상중재)에 대한 법전으로 <대외경제중재법>을 공포하였다.²²⁾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투자·서비스에 관한 분쟁을, 해상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상손해 등의 분쟁을 각각 심리·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2조). 다음 규정들을 보면 국제중재제도의 개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대외경제분쟁의 해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분쟁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여 분쟁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공헌한다"(입법목적: 1조), "국가는 중재활동에서 국제조약 및 관례를 존중하고, 국제기구·여러 외국과의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킨다"(7조).

북한의 논문에서는 중재협의회[원문대로]는 재판기관과 같은 상설적인 권력기관이 아니라 재결원들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직체임을 다음과 같이 강

21) 중국 무역회는 1988. 9에 <중재규칙>을 채택하였다. <사건처리규정>과 <중재심의규정>에 의한 북한의 국제무역중재제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1995b, 제5장)를 참조하라.

22) <대외경제중재법> 전문은 법무부(2000: 870~876)에 실려 있다.

조하고 있다(김춘영, 1996: 63). ① 무역중재활동은 국가중재활동이나 민사소송활동과는 달리 권력적 활동이 아니다.²³⁾ 이를 비법률적 활동이라고도 한다. 곧 제결은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재원의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²⁴⁾ ② 무역중재위원회는 사회적 조직체이다. ③ 무역중재원은 국가공무원이 아니다.²⁵⁾ ④ 무역중재활동은 무역중재담당자(무역중재원과 중재당사자)들의 사회적 활동이다.

그리고 대외경제중재에 의해 심리·해결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다. ①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기업간의 분쟁, ②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와 외국인투자기업간의 분쟁, ③ 외국인투자기업간의 분쟁, ④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간의 분쟁, ⑤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과 해외동포·외국인간의 분쟁(4조).

4. 중국과의 비교

4.1 대외 개방 비교

1972년 중국은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루고 일본과는 수교를 하였으며 1978년 미국과 수교하여 경제 개방 이전에 정치 개방을 이루어 놓았다. 1979년에는 미국과 직접적인 해운통항을 회복하고 자산동결해제협정을 체결하였다(蔡明欽, 1979: 100). 1978년 양국 무역대표단의 방문을 상황을 보면 중국은 6개 대표단인데 미국은 18개 대표단으로서 미국측에서 더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 중국의 무역액도 증가하여 1978년에 수출액이 이미 거의 100억달러에 달하였고 1981년에는 수출액이 200억달러를 넘어섰다(藤野

23) "소송의 경우는 그것이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수권을 권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 그 국가의 정책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적 활동의 하나로 된다." 대외민사소송의 실제법은 1995. 9에 공포된 <대외민사관계법>이다. "재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재판 또는 중재 권할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49조)"라고 하여 섭외민사중재를 제기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전문은 법무부(2000: 859~869)를 참조하라.

24) 재판은 법률이 아니라 당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인의 다음의 진술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소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하는데 따라 사건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처리될 수도 있고 잘못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김형기, 1996: 57).

25) "무역중재원들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사회적 직위를 가지고 사업하다가 분쟁당사자들에 의해서 선정되거나 혹은 무역중재위원회위원장에 의해서 지명되는 경우에만 무역중재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활동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각에 의한 것이 아니다"(김춘영, 1996: 53).

匯, 1982: 64). 중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일본, 미국, 서독 등 자본주의 국가였다. 1981년 중국의 대 일본 수출액은 약 53억달러였고 대 미국 수출액은 19억달러였다.²⁶⁾

1979년말까지 중국이 외국과 협의한 차관액이 거의 276억달러에 달하였고 그중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과 체결한 수출신용대부가 118억여달러에 달하였다. 1982년초에는 중국국제신탁투자회사가 일본에서 약 4천5백여만 달러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1980년에는 국제화폐기금과 세계은행에 가입하여 각각 5억4천만달러, 1억달러의 차관을 빌렸다. 그리고 〈합영법〉에 따라 1981년 외국투자가와 20개 합영기업(총투자액은 약 1천만달러), 169개 합작경영항목(총투자액은 약 14억여달러)을 체결하였다. 1981년에 중국이 유치한 외자는 200억달러가 넘었다(앞의 논문, 63~64).

중국이 1980년대에 고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대외 개방으로 부족한 자본을 외자 유치로, 부족한 시장을 수출로 각각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과 비교하여 대외 개방을 위한 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것은 중국과 같은 대외 개방을 시험해 본 것이지만 대외 개방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 합영법을 제정한 것은 중국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점도 있을 것이지만 제1차 오일쇼크로 외채가 체불된 상황에서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제2차 외국인투자관계법을 제정하게 된 것도 동구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구소련의 해체로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급감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북한과 구소련간의 교역량은 1990년 25억6천3백만달러를 기록하며 북한 총교역의 56%를 점했던 것이 1991년 2억9천만달러로 급락했다(김영운, 2001: 68).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²⁷⁾

북한은 유엔개발기구의 두만강하구유역개발계획에 편승하여 1991년 12월 말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하여 외채상환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지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조성하였지만 중국과는 달리 실적이 저조한 형편이다. 이는 중국은 경제특구의 폐후에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을 그렇지 못한 것도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북한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도 타격을 받았다. 북한의 전체 대외 교역액의 약 75% 정도가 동아시아 국가에 집중하였던 탓으로 1998년 교

26) 1979년 중국의 대 미국 수출액은 약 6억달러였다.

27)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러시아와의 교역량은 3.2억달러, 5.4억달러, 1.5억달러, 0.7억달러, 0.6억달러, 0.9억달러로 감소한 반면에 같은 기간에 중국과의 교역량은 6.9억달러, 8.9억달러, 6.1억달러, 5.4억달러, 5.5억달러, 6.5억달러로 증가하였다(정은미, 2000: 41에서 재인용).

역규모가 14억4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일본으로부터 연간 5억달러 이상에 달했던 제일 조총련의 북한 송금도 일본경제의 위기심화이후 1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다(앞의 논문, 77).

북한이 중국과 비교하여 대외 개방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데에는 앞서 든 불리한 여건에 더하여 북한 자체의 전략 선택에도 문제가 있다. 중국은 대외 개방을 경제 체제 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하였다. 경제 체제 개혁에는 대외 개방과 함께 대내 활성화 전략을 채택하여 계획경제 일변도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결합하고 공유경제 일변도에서 공유경제와 시영경제를 결합하였다. 그리고 농촌집단경제를 생산책임제로 개혁하고 도시국영기업의 경영자주권을 확대하였다. 무역에서도 내외무역부가 독점하던 체제에서 성급 정부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²⁸⁾ 북한은 중국과 비교하여 대내 개혁을 추진하기에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내 개혁 없는 대외 개방이라는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한 중국과 같은 대외 개방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4.2 ‘경제법’ 비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영기업은 국가의 경제계획에 따라 경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영기업간의 경제거래는 개인간의 재산관계와는 구별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영기업간의 법률관계를 개인간의 법률관계와 구별하여 별도의 법률, 곧 ‘경제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간의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민법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전개되었다. 구소련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규제되었는데, 중국에서는 1981년 <경제계약법>이 제정되어 국영기업(집단기업을 포함하여)간의 계약(이를 ‘경제계약’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규제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경제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중국에서는 1985년 다시 <섭외경제계약법>을 제정하여 섭외경제법률관계를 따로 규제하고, 1986년 <민법>을 제정하여 민법의 규제 대상에 국영기업 등 법인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국영기업간의 경제거래는 민법이 아니라 경제계약법으로 규제하였다.

중국은 1982년에 제정한 <헌법>에서 계획 경제와 함께 시장 조질을 인정함으로써 대내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다.²⁹⁾ 이러한 대외 개방과 대내 개혁의

28) 1979년 광둥성과 푸젠성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한 후에 1981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29) “국가는 사회주의 공유제 기초 위에서 계획 경제를 실행한다. 국가는 경제계획의 종합 평형과 시장 조질의 보조 작용을 통하여 국민경제가 비례적으로 협조·발전하도록 보장한다(15조).” 그리고 개인적 소유권의 객체에 생산수단을 포함시키(75조) 개인경제, 나

동시적인 추진에 의해서 개방과 개혁이 맞물려서 증폭하여 개방과 개혁이 힘을 얻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92년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 개혁으로까지 나아갔고, 1993년 <회사법>, <무역법>을 제정하여 현대적인 기업제도로의 개혁과 자유무역체제로 나아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북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은 틀림이 없다. 북한의 제2차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제정은 이러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는 중국의 경제특구를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2년에 <대외경제계약법>을 공포하여 대외무역·투자 및 서비스관련 제반 대외경제계약의 체결형식 및 절차와 계약이행 내용 및 효과 등에 관한 법제의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법무부, 1997: 288).³⁰⁾

<대외경제계약법>은 북한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국제상사거래를 위한 대외경제계약, 곧 모든 형태의 무역, 외국인투자, 용역 등에 관련된 계약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다(2조). 그런데 북한기업의 경우는 경제계획을 집행하여야 하므로 대외경제거래를 하도록 북한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북한의 기관·기업소·단체에 한하고(3조), 승인된 업종, 상품, 수량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9조). 그리고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계약은 반드시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고(11조), 또한 대외경제계약의 양도, 변경, 취소 등은 그 계약을 승인한 북한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32조).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을 중국의 <섭외경제계약법>과 비교하면 중국의 경우는 경제계약을 일반적인 경제계약과 섭외경제계약으로 구분하여 후자인 경우에는 민사계약과 같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998년에 공포한 <무역법>에서도 중국의 <무역법>과 같은 자유무역 체제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하였다. 북한이 제3차 외국인투자관계법을 제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결국 북한의 대내적인 경제 개혁이 어느 정도 추진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아직 중국의 1982년 헌법 체제에서의 개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비교할 때는 외국인투자관계법에 대해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헌법과 민법 그리고 '경제법' 전체를 비교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1999년 <계약법>을 제정하여 경제계약이 민사계약에 통합됨으로써 경제법은 민법에 통합되거나 상법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과 중국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

아간 사영경제가 등장할 길을 열어 놓았다.

30) 이 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단순히 북한 정부의 대외경제사업부의 법해석이나 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국경이 지속되어 왔다(선용식, 1995: 법무부, 1997: 289에서 재인용).

이다. 현재의 북한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경제법' 시기, 곧 시장경제로의 개혁 이전의 중국이 될 것이다.

4.3 변호사 · 무역중재원 비교

4.3.1 변호사 비교

중국은 1980년에 <변호사임시조례>를 제정하였고, 1996년에 <변호사법>을 제정하였다. <변호사임시조례>에서의 변호사 체제는 다음과 같다. 사법행정부문---(변호사협회)---변호사사무소---변호사. 곧 변호사는 변호사사무소에, 다시 변호사사무소는 사법행정부문에 소속하고, 변호사협회는 거의 변호사에 대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체제는 북한의 <변호사회에 관한 규정>에서의 변호사 체제와는 다르다. 후자는 구소련의 변호사 체제를 계수한 것이지만 중국의 경우는 '단위 체제'라는 독특한 중국 사회주의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단위인 변호사사무소가 어떻게 개혁되는가에 따라 그 성질이 결정되었다. 중국의 경제 체제 개혁과 맞물려서 변호사사무소는 점차 국가로부터 떨어져 나가 시장으로 나아갔다. 변호사사무소는 '도급제', '합작제', '조합제'라는 경로로 개혁이 진행되어 소유제 형식으로는 전인민적 소유로부터 집단소유로 다시 사적 소유로 탈바꿈되어 자본주의 국가의 변호사와 거의 유사하게 되었다.

중국의 <변호사법>에서의 변호사 체제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협회---(변호사사무소)---변호사. 사법행정부문은 변호사협회, 변호사사무소, 변호사에 대해 지도와 감독의 관계, 곧 일반적인 행정 관계에 있다. 아직 변호사가 국가로부터 자율적인 것은 아니어서, 국가의 행정관리와 변호사사무소의 업종관리가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혁의 방향이 변호사의 국가로부터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인 것은 틀림이 없다.

북한에서는 변호사사무소가 아니라 변호사단체가 중요하므로 변호사가 변호사단체로부터, 그리고 변호사단체가 국가로부터 얼마나 자율적인가가 중요하다. 북한의 경우는 변호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고 변호사회에 의해서 사무소 또는 법률상담소에 배치된다. 더욱이 변호사단체는 변호사의 이익단체라기 보다는 국가기관의 하위기구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변호사회로부터, 그리고 변호사회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일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변호사가 자율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사무소 또는 법률상담소가 하나의 경제적인 실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국 변호사와 북한 변호사의 전문 지식 수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자. 법정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국 변호사: ① 법학전문대학 이상 학력 또는 동등 전문수준(변호사통신대학),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갖춘 자로서 변호사자격고시에 합격한 자(6조1문), ②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으로 법률연구·교육 등 전문활동에 종사하고 고학 직칭 또는 동등 전문수준을 가진 자로서 사법행정부문의 고과에 합격한 자(7조). 북한 변호사: ①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 ② 법부문에서 5년 이상 일하던 자, ③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21조).

북한의 경우는 법률전문가의 자격, 법부문,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격, 단기 법률교육 등이 무엇을 지칭하는가가 모호하다. 중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실제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는 법률상의 자격 규정에 미달된 자가 다수였다가 법학·법률교육이 발전하고 변호사 개혁이 추진되어 변호사가 인기 직업이 됨에 따라 법률과 실재가 부합되게 되었다. 북한의 경우에도 법학 교육 발전과 변호사 개혁을 병행한다면 우수한 법률인재가 변호사로 충원되어 북한의 법적인 하부구조의 정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법조 인력의 양성을 대학과 사회과학원에서 받고 있는데 법학부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사회안전부정치대학 등 소수의 대학에 불과하다(민병천 등, 2001:1102). 최근에는 김일성대학법학부를 법학원으로 승격하였다. 북한에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거나 학생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법률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국외 연수를 포함하여) 등이 필요할 것이다.³¹⁾

중국 변호사와 북한 변호사가 어떠한 일에 종사하는가를 살펴보자. 북한 변호사의 법정 직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의 법과 규정 해설(11조), ② 형사사건의 변호인(12조), ③ 소송대리인, 민사법률항위의 대리인, 법률고문(13조), ④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문서 작성·심의(14조). 중국의 변호사 직역에는 대서 업무와 함께 상담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의 법과 규정 해설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중국에서도 개혁 이전에는 변호사 직역에 법제 선전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직역 상으로는 양자간에는 큰 차

31)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의 법학학위, 학직 소유자는 겸직변호사³¹⁾ 일할 수 있다(21조1항). 1995년 현재 북한의 전체 변호사 약 500명 가운데서 300여명이 교수와 연구원 등을 겸하는 겸직변호사이다. 북한의 판사나 검사의 경우를 보면 이들을 모두 법률전문가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 가운데 법률전문가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하나의 예를 들면 김일성종합대학법학부 법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재판소나 검찰소에서 3년 내지 5년 정도 일반직원, 지도원, 책임지도원, 재판서기를 거쳐 판사로 승진되거나 검사로 임명된다고 한다(법원행정지, 1995a: 50). 사회주의 국가에서 변호사보다 판사와 검사가 더 선호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의 예를 보면 변호사 개혁이 이루어지면 변호사가 더 선호되는 직업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중국에서는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 데리를 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법률고문 업무에서도 중국은 기업이 시장 경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북한을 그렇지 못하다.

4.3.2 무역중재원 비교

중국의 심외중재 체계는 북한과 유사하다. 중국의 심외중재는 1950년대부터 국제경제무역중재(이하 무역중재)와 해상중재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이하 무역촉진회) 산하에 중재기구들 두었는데 무역중재기구는 대외무역중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1980년에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개칭하고, 1988년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이하 심외중재위원회)로 개칭하였다. 심외중재위원회는 중재규칙과 관련법규 및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중재를 담당해 왔다(成百營, 1998: 85).

1983년 <합영법실시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간의 무역분쟁을 중재나 사법절차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제3국에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6년에 중국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조약(1958년의 뉴욕조약)에 가입하였고, 1987년에는 GATT의 회원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으며 1988년에 '다자간 투자담보기구조약'에 가입하였다. 1988. 9 무역중재위원회는 새로운 중재규칙을 제정하여 1956년에 제정된 중재임시규칙을 대체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중재사건의 수리범위를 일체의 국제무역 관련 분쟁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같은 해에 선전 연락사무소를 분사무소로 승격하고, 1990년 초에 다시 상하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같은 해에 국가와 타국 국민간의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조약(워싱턴조약)에 서명하였다(1993. 2부터 효력 발생).

중국은 1994년에 <중재법>을 제정하여 심외중재와 국내중재를 통합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중재제도와 심외중재의 이원적 구조를 탈피하고 자본주의 국가의 중재제도와 유사하게 되었다.³²⁾ 그리고 <중재법>의 시행에 맞추어 1995년 중재규칙을 수정하였다.

중국 중재인과 북한 중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중국 중재인: ① 중재업무 만8년 이상 종사자, ② 변호사업무 만8년 이상 종사자, ③ 재판관 만8년 이상 종사자, ④ 법률연구, 교수 종사자로 고급직칭[고급연구원, 교수

32) <중재법>에서 민간중재의 원칙을 채택하여 국내중재기구인 중재위원회는 중재협회로 개칭하고, 심외중재 관리기구인 무역촉진회는 국제상회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중재제정기구를 중재정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이를 중재위원회라고 한다(대외경제중재법 18조1항).

능을 가진 자, 5. 법률지식을 구비하고 경제무역 등 전문직종에 종사하며 고급직칭(1급·2급 법률고문·경제사 등)을 가지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에 해당하는 자(43조), 6. 필요한 경우 법률·경제지식·과학기술 등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67조). 북한 중재인: 1. 당해 중재위원회의 구성원, 2. 분쟁사건을 심리·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법 및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자, 3. 변호사·판사로서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필요한 경우 중재부문에서 널리 알려진 해외 동포 또는 외국인(19조).

중재인 자격에서 중국이 북한보다 더욱 엄격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는 변호사와 판사는 만8년 이상 종사하여야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변호사와 판사로서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양자가 거의 다르지 않은데, 이는 곧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이 중국의 <중재법>을 모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에서는 중재인 일반이 북한에서는 섭외중재에서의 중재인이 사회법률직업을 표방하고 있다. 중국은 실제적으로 사회법률직업이지만 북한은 사회 자체가 미약한 상태에서 실제로 사회법률직업이 등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도 사회법률직업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순제적인 사회법률직업의 등장, 나아가 사회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사회주의 국가에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자율적일 수 없다. 변호사가 국가로부터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고객으로부터는 자율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변호사가 국가로부터는 자율적이지 못하고 고객으로부터는 자율적이라는 사정은 변호사와 고객과의 관계가 민사관계, 정확히 말하면 위임계약관계인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변호사가 고객이 아니라 국가를 대변한다고 하면 고객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고객은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인정되지 않고 비변호사가 광범하게 법률사무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변호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로부터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변호사로서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든 선임하지 않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의 선임료는 낮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변호사가 등장하지도 않을 것이고, 변호사 제도 자체가 형해화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로서는 북한에서의 변호사가 어느 정도 국가로부터 자율적이고 어느 정도 고객을 대변하는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북한의 대외 개방을 뒷받침하기 위한 변호사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궁금하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변호사법>이 시장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듯이, 북한의 <변호사법>도 제2차 외국인투자관계법의 하나로서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북한의 변호사는 중국의 개혁 이전의 변호사보다는 더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변호사는 시장이라는 제도와 맞물려서 개혁을 할 수 있었지만 북한의 변호사는 그와 같은 제도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북한의 대외 개방은 특수지대에 제한되어 있고 내내적인 개혁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개방을 확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990년대에 농민시장이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이 영역에서 변호사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중국의 변호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이 변호사의 고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직 북한의 기업이 개혁을 하고 있다는 조짐은 없고 따라서 북한의 기업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조짐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개방과 관련되는 법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996. 7에 제정된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가대리인 규정>을 보면 외국투자가는 위임대리계약에 의해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투자관련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리인은 기업창설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문건의 작성, 기업창설 수속과 같은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지만(3조),³³⁾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경제 및 외국투자와 관련한 학위, 학식 소유자와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서 3년이상 일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 자로 하여(4조), 변호사와 별도로 대리인제도를 창설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변호사가 섭외경제 업무에 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변호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대리 업무를 맡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이 중국과는 달리 대외경제기관과 자유무역지대 당국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대외 개방 업무를 관리하는 체제와 조응하는 체제로 보인다. 투자가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자신이 직접 하거나 투자 및 기업창설을 지원하는 전문봉사기관·기업소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18조)라고 하여 대리인과 관리기관의 구분이 모호하며, 외국투자가대리인 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는 대외경제기관과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이 한다(6조)고 하여, 대리인이 국가로부터 자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대리인 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법률직업의 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민간인과 위임대리계약을 맺는 사회법률직업이 실제로는 국가

33) 투자와 관련한 자문사업, 경제기술 자료의 소개 등 업무도 포함하고 있다.

로부터 자율적이지 못하여 진정한 사회법률직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은 사회주의 국가의 속성상 불가피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대립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 자체가 전체 인민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와 대립하면서까지 고객을 대변하는 사회법률직업으로서의 변호사가 등장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외 개방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고 더욱이 대외 개방과 맞물려서 대내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변호사도 개혁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무역중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대부분의 무역은 사회주의 국가간의 무역으로서 정부간의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간의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자본주의 국가와도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는 상대가 사기업이므로 무역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분쟁 해결 절차가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을 교섭하는 창구로서 형식상의 민간 기구를 두고 다시 이 기구 산하에 상설 무역중재 기구를 두고 있다. 상설 무역중재 기구에서의 중재 절차는 자본주의 국가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이 기구가 실제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 당사자측으로서는 국가가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무역중재원의 경우도 변호사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역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무역중재원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 당사자는 해당 국가의 무역중재에 합의하지 않고 제3국에서의 무역중재를 원할 것이다. 그리고 제3국에서의 무역중재를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로서도 무역중재원이 당사자간에 공정한 입장에 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역중재원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자본주의 국가와의 무역, 투자 유치, 기술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계약상에서의 권리의무관계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유효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대내적으로는 생산수단의 공유제와 계획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특수지대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무역·투자 유치·기술도입을 확대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는 개방한다고 하는 이원

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하부구조에서도 많은 모순을 안을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대외 개방 정책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 하부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부이다. 현재 북한은 제2차 외국인투자관계법 제정으로 어느 정도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하부구조를 정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1999년에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한 것은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하부구조 정비를 볼 수 있다. <대외경제중재법>에서는 중재원의 자격을 해외 동포와 외국인까지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로 규정하여 규정상으로는 북한의 무역중재제도는 자본주의 국가의 무역중재제도와 유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외 개방의 정형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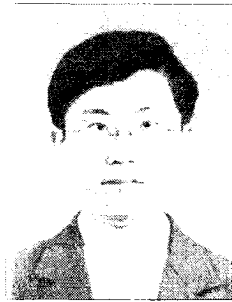
북한의 변호사는 무역중재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탓으로 민사소송의 수가 적고,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활동이 미약하다고 하며, 대신에 국가중재제도에서의 변호사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국가중재제도도 기업간의 경제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무역중재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경제 업무에 치중함으로써 변호사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북한의 변호사가 중재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그리고 무역중재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변호사 개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 무역중재원, 외국투자가대리인과 같은 사회법률직업의 등장이야말로 북한의 대외 개방, 나아가 대내 개혁을 위한 법적 하부구조의 정비를 위한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서 그 의의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姜永真, 北韓法の 研究, 博英社, 1975.
- 권오윤, 북한경제변화론, 다다미디어, 1998.
- 金三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法と司法制度, 日本評論社, 1985.
- 金三昇,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刑事法制, 日本評論社, 1988.
- 김영규, "자력경쟁원칙과 대외무역," 북한, 1979.6, 1979.
- 金永圭, "南·北韓 經濟發展 比較," 북한, 1981.4, 1981.
- 김영규, "88년 북한의 대외무역," 북한, 1988.12, 1988.
- 김영운, "羅津·先鋒경제무역지대개발 10년의 현주소," 북한, 2001.3, 2001.
- 金一平, "北韓의 經濟開發戰略," 북한, 1973.7, 1973.
- 김재영, "북한의 대외무역 관리체계," 북한, 1978.11, 1978.
- 김정금·리황, 중재법(법학부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 김준영, "무역중재의 본질과 그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학) 제42권제2호, 1996.
- 大内憲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辯護士法-解説と條文-, 統一評論, 354, 1994.
-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4, 1992.
- 리종열, "공화국무역상사의 법적 지위와 그 기본업무," 법학논문집, 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 리황, 중재법학(법학부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1.
- 리황, 민사소송법학(법학과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2.
- 민병천 등, 북한학 입문, 들녘, 2001.
- 法務部, 北韓法の 體系的 考察(III)-商事·經濟, 勞動關係法-, 1997.
- 法務部, 統一法務 基本資料, 2000.
- 법원행정처,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 제도, 통일사법정책자료 95-III, 1995a.
- 법원행정처, 북한의 중재제도-국가중재재판제도를 중심으로-, 통일사법정책자료 95-IIV, 1995b.
-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통일사법정책자료, 96-I, 1996.

- 法制處, 北韓法制概要(北韓法制資料 第1號), 1991.
- 法制處, 北韓의 合營法制(北韓法制資料 第2號), 1992.
- 북한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법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 북한연구소, 북한의 재판제도-북한의 재판소구성법을 중심으로 본 북한 사법제도의 현실-, 1991.
- 서재진, "북한 사회주의의 오늘과 내일." 동아대사회학과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한국비교사회학회 춘계심포지움 발표문, 2001.
- 서창섭, "우리나라 계획적 계약의 법적 본성과 그 이행원칙." 법학문문집, 4, 1983.
- 成白營,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의 내용과 문제점의 고찰-섭외중재제도를 중심으로-", 1998.
- 신용식, "북한의 대외경제계약법." 월간 경영법무, 1995-8, 1995.
- 申雄滉·安成祚,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북한의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법률-. 한국무역협회, 1998.
- 申漢東, 상사중재실무. 新英社, 1993.
- 月刊 朝鮮資料. 朝鮮問題研究所, 1999-9.
- 윤종철, "민사법률관계의 사회정치적 성격에 대한 문제." 제43권 제2호, 1997.
- 윤진기, 중국중재제도. 경남대학교출판부, 1998.
- 이동진, "중국 체제 개혁과 변호사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이만희, "새로 제정된 중국의 '중재법'에 대한 연구." 법조, 482호, 1996.
- 이태욱, "북한의 대외통상 정책. 북한연구." 1995년 여름호. 대륙연구소, 1995.
- 畑中和天, "社會主義的合法性と法の支配." 法律時報, 33-4, 1961.
- 鄭慶謨·崔達坤, 北韓法令集(第1卷). 大陸研究所, 1990.
- 정은미, 북한의 농민시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사회학과석사학위논문, 2000.
- 조병진, "공화국변호사제도의 발생발전."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역사 법학) 제42권 제2호, 1996.
- 최종고, 북한법. 博英社, 1993.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1994.

북한의 언어공학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



이 봉 원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목 차

【 요약문 】	127
1. 서론	129
2. 언어공학의 개념과 역사	130
3. 북한 언어공학의 현황	137
4. 북한 언어공학의 과제	165
5. 결론	172
※ 참고문헌	173

【 요약문 】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의 언어공학, 즉 언어 정보처리 연구·개발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를 남한의 언어공학과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여 향후 통일시대의 한국어 자원화에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언어공학적 연구와 이에 따르는 각종 언어처리 성과는 매우 다양한데, 구체적으로는 음성(음성 합성과 음성 인식), 형태(형태소 분석), 통사(구분 분석), 의미(전자 사전), 그리고 기반 자료(발음치)와 종합적 응용(기계번역, 정보검색) 등에 걸쳐 있다. 현재 이러한 언어 지식을 자원화하려는 시도는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언어공학적 성과는 일부 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 있으나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본고에서는 우선 북한 언어공학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언어학적 배경을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북한의 전산적 기반의 구축이 가능해진 80년대 후반 이후의 언어공학적 발전사와 그 성과를 고찰하였다. 일차적 자료는 남북한의 연구 문헌을 위주로 하되, 언어공학적 발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부차 자료도 이용하였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언어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 일시적으로는 침체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꾸준한 실용적 지식의 축적을 통해 1990년대 초반부터는 많은 성과를 수확할 수 있었다. 정제된 발음치를 이용한 언어 통계의 추출, 국가 사전의 편찬, 그리고 음성인식기 개발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북한의 응용언어학 중시 정책이 있었다. 북한은 일찍부터 국가 주도의 전문 기관들을 배치하여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미 사회과학원 내에 응용언어학 연구실을 설치하는 등, 발빠르게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언어공학 분야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언어이론과 실제 적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언어공학 연구는 언어공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점차 그 내용이 일반적인 이론적 고찰에서 구체적인 실용적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정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언어공학의 성과와 역량이 성공적으로 접목된다면, 학문적·경제적 측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위상 제고와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의 통합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 통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남북한의 언어 정책 담당 기관이 정례적으로 접촉하여 언어 규범과 정보 표준의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의 언어공학, 즉 언어 정보처리 연구·개발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를 남한의 언어공학과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여 향후 통일시대의 한국어 자원화에 기반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언어공학적 연구와 이에 따르는 각종 언어처리 성과는 매우 다양한데, 구체적으로는 음성(음성 합성과 음성 인식), 형태(형태소 분석), 통사(구문 분석), 의미(전자 사전), 그리고 기반 자료(말뭉치)와 종합적 응용(기계번역, 정보검색) 등에 걸쳐 있다. 현재 이러한 언어 지식을 자원화하려는 시도는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며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언어공학적 성과는 일부 매체를 통해 소개된 바 있으나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다.

한편, 현대 한국어는 표준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는 국어의 역사적 변화를 내재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남한은 물론 북한, 그리고 해외 지역에서 쓰이는 한국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각 지역 및 국외에 있는 동포들의 한국어까지를 포용하는 것이다. 북한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민족적 통합을 위한 선결 조건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한의 언어공학적 성과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의 정보화를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됨은 물론, 민족의 언어 기반적 복원이라는 차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통일 시대의 언어공학적 산물은 표준어는 물론 각 지역 방언과 북한, 해외 한국어까지 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의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1.2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우선 북한 언어공학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언어학적 배경을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북한의 신산적 기반의 구축이 가능해진 80년대 후반 이후의 언어공학적 발전사와 그 성과를 고찰할 것이다. 일차적 자료는 남북한의 연구 문헌을 위주로 하되, 언어공학적 발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신문기사와 인터넷 문서 등의 부차 자료도 이용하였다.

남북한의 순수언어학적 비교나 일상 언어의 비교 분석은 이미 많은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지만, 최근의 북한 언어공학 현황에 대한 고찰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¹⁾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 언어공학의 기초가 되는 언어학적 기반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북한 언어공학의 과제와 남한 언어공학과와의 접촉 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도 제시할 것이다.

2. 언어공학의 개념과 역사

2.1 언어공학이란?

현대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 전달의 수단이 아니다. 언어는 집단 자원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언어의 정보화는 각종 정보 소통 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일상 생활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광역화는 추상적인 언어 탐구나 전통적인 교육, 단순한 정책 수립 등을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컴퓨터의 도입은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언어 연구 분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으며, 컴퓨터는 연구의 방법과 목적 모두에 중요한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자연 언어 연구에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자연 언어의 처리 자체가 중요한 연구 목적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컴퓨터는 지금까지의 의사소통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대량의 정보를 저장·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간과 컴퓨터와의 정보교환이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언어공학은 인간과 컴퓨터의 의사소통을 위해 컴퓨터에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포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위한 기반적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²⁾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어공학의 내용은 무엇인가? 홍윤표(1999)에서 제시한 국어 정보화의 중요한 과제를 통해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1) 황화상(1997), 홍윤표(1999), 김병진(2000) 등이 북한의 언어공학 현황을 언어학적 입장에서 분석한 중요한 연구이다. 본고는 이들 연구의 성과를 많이 참조하였다.
 - 2) 언어공학은 컴퓨터에서 각 언어에 대한 기반기술을 연구하는 분야(강승식 1996)로 정의되기도 하며, '한국어공학은 산업적 응용을 위하여 한국어나 한글을 가공·처리하는 모든 지식이나 기술'(고창수 1997)과 같은 넓은 의미의 정의도 있다. 본고에서는 언어공학을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에 대한 연구를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표 1〉 국어 정보화의 과제(홍윤표 1999)

국어 정보화의 단계		일반 과제	
정보의 생산 단계	정보 원천	말뭉치의 구축	
	정보 분석	언어(형태소, 구문, 의미) 분석 도구 개발	
	정보처리 및 검색	문서 작성기 및 문자인식기 개발	
		음성인식기 및 처리기 개발	
		각종 정보검색기 개발	
		기계번역기 및 자동통역기 개발	
		전자사전 구축	
정보 변환	코드의 표준화		
정보의 유통 단계		고속 전산망 구축	
정보의 소비 단계		PC 및 프로그램의 보급 및 일반화	

즉, 언어공학은 워드프로세서 등의 기본적인 컴퓨터 이용은 물론, 자동기계번역과 같은 고급 응용기술을 모두 포괄한다.

현재 언어공학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음성공학은 이미 인터넷과 결합하여 차세대의 통신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성 합성기는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편리한 정보 전달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음성공학의 잠재성을 간파한 각국은 음성 사업에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향후 2-3년간 집중적인 음성 사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 형태소 분석이나 구문 분석, 전자사전 구축 등의 기술은 언어 번역이라는 인류의 오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된다. 이러한 정보 처리의 기반을 위해서는 언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필수적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자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으며, 이는 언어학적 연구에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 교육, 언어 정책, 언어 처리 등에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어의 언어공학적 연구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자국어에 대한 지식은 이제 향후 지식 기반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인프라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어공학의 수준은 영어와 관련된 언어기술의 발전추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구미의 언어기술에 대한 기초연구는 이미 195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80년대 중반에 와서는 기계번역 기술이 일부 상용화되었지만, 한국어에 대한 기초연구는 1980년대에 와서야 시작되었다(강승식 1996). 늦은 출발

에 비한다면 현재 한국어 언어공학이 보여주고 있는 성과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언어 기초자료의 필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21세기 세종계획>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발문치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각종 정보 환경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등, 한국어 공학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이 확보되고 있다.

한편, 북한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며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보다 이른 시기부터 언어공학에 관심을 가지 왔으며, 자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북한의 언어공학사

홍윤표(1999)는 남북한의 언어 정보화 단계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남한은 산업에 관련된 제1차 정보화 단계를 뛰어 넘어 일상 생활의 제2차 정보화 단계³⁾를 밟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제1차 정보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은 언어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만은 남한보다 일찍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언어공학적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꾸준한 실용적 지식의 축적을 통해 이후 많은 성과를 수확할 수 있었다. 박수영(1998)은 그동안의 북한 응용언어학의 발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응용언어학과 실험음성학 분야에서 큰 성과가 이룩되었다. <계산기언어학 개론>, <응용언어학>, <조선어빈도수사전>, <조선어정보처리>, <기계번역 이론>, <조선어어음론연구>, <조선어실험음성학연구>, <조선어음성분석론> 등 수많은 연구성과가 나온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실험음성학분야에서는 현대과학기술성과를 음성학연구에 도입하여 말소리의 실험음성학적분석과 문화어표준발음에 대한 연구, 음성인식에서 제기되

3) 홍윤표(1999)의 정보화 단계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정보화	산업의 정보화	산업 내부의 컴퓨터화	남한, 북한
	정보의 산업화	정보 관련 산업의 탄생	
제2차 정보화	생활의 정보화	개인 컴퓨터의 가정 보급	남한
	사회의 정보화	사회의 정보에 대한 의존도 확대	
	정보의 세계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유	

는 문제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으며 응용언어학분야에서는 조선어정보검색, 조선어자동분석, 우리 글자의 정보처리 등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실질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

(박수영, 1998)

이 절에서는 북한 언어공학의 발전사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990년대 이후의 북한 언어공학의 발전상은 각종 문헌을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으나, 그 이전 시기의 업적에 대한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박재수(1999)의 기술사를 중심으로 90년대 이전 시기의 북한 언어공학사를 탐색하였다.

2.2.1 도입기(1960년대)

박재수(1999)에 따르면 북한의 언어정보처리 연구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한다.⁵⁾ 이 시기에는 이론적 논의를 내용으로 하는 각종 언어공학적 연구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⁶⁾

언어정보처리가 연구되기 시작하던 1960년대에는 통계언어학적 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도 착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언어학자들이 수학, 전자공학 등 해당 부문 전문 일꾼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번역과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수학전문가, 기계전문가들을 망라한 번역기계연구집단이 조직되었으며, 러시아어를 조선어로 기계번역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론적인 연구보다는

4. 김병선(2000)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5. 이 시기에는 하드웨어 부문의 연구도 시작되었다. 북한은 일찍이 정보화에 주목하여, 1964년 1월에 채택된 내각명령 1호 「자립적인 반도체공업을 건설함에 대하여」란 기치 아래 몇 나라에서밖에 조립하지 못했던 전자계산기 「9.11」을 4개월만에 개발하는 개가를 올리고, 69년에는 디지털 컴퓨터 「전진-5500」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 발전과 상용화에는 실패하였다.

6. 김극중은 「조선어학」 2호(1961)에 「번역과정의 기계화 및 자동화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기계번역과 응용언어학 및 수리언어학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외국에서의 연구전황 정형을 소개하였으며, 1964년에는 권승보가 「언어연구에서 수학적 방법이 차지하는 위치」라는 논문을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편)」 10호에 실었고, 같은 해에 박정중은 「로조기계번역 과정에 대하여」이라는 논문으로 언어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다음 해인 1965년에 로경애는 조선어 어휘적 현상에 대한 초보적인 통계적 연구결과를 실은 「조선어 연구에서의 통계적 방법」을 「조선어학」 3호에 실었고, 박재수는 「언어학 개론」(1965)을 저술하면서 수리언어학과 통계언어학 및 기계번역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같은 해에 송서룡은 「언어학적 연구방법」을 「조선어학」 3호에 실어 수리통계학적 연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김병선 2000).

응용언어학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외국의 연구동향이 소개되었으며, 일부 기계번역을 위한 실험적 연구와 언어의 양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초보적으로 진행된 데 불과하였다고 한다.

비록 이 시기 연구가 기초적인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어공학의 도입시기는 남한이 1980년대에 이를 시작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정체의 시기를 겪은 것은 이들이 견지하는 주제적인 연구 방식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2.2.2 침체기(1970년대)

1970년대에는 언어정보처리 연구에 대한 업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구미의 언어공학도 1960~70년대에 침체기를 겪은 것과 연관된다. 아직 정보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진행에 상당한 한계를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2.3 재정비기(1980년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언어공학은 다시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가 차원의 관심도 커서 김일성과 김정일이 “응용언어학 개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과학 연구일꾼들로 연구 역량을 편성하여 주었으며,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연구설비를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박재용(1985)은 일반언어학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 해명을 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언어학의 발전 추세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기계번역 뿐만 아니라 정보검색, 통보언어 문제 등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시기에는 특히 컴퓨터에서 한글(민족글자) 처리 문제에 대한 연구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컴퓨터에서 한글을 구현하기 위해 글자수를 정하고 코드화하는 문제, 그리고 자모글자를 조합에 의한 음절 생성 문제 등을 연구하였다고 한다. 1988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전문학자들의 연구 토론회가 개최되어 문자의 자동처리 문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안들과 자료들을 문자의 특성에 관한 과학적인 확률통계적 분석에 기초하여 통일화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1986년에는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절자 1,096,895자를 가지고 자모 40자에 대한 빈도수 조사 등을 통하여 문자의 확률통계적 특성을 밝혔다고 한다.

2.2.4 도약기(1990년대)

1990년대는 북한의 언어공학적 이론이 정립되고, 다양한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온 시기이다.

문영호의 「계산기언어학개론」(1990)은 언어정보처리의 기반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지는데 이 책은 응용언어학의 중심 분야인 전산언어학의 기초 개념과 일반지식을 주면서 문자와 언어구조, 언어자료의 자동분석, 자동 처리의 원리와 방법 및 응용법들을 연구하였다.

전산언어학은 다른 어떤 과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여 혁명실천과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는 도구로서 취급된다. 그러면서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에 있어 언어정보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컴퓨터에서의 우리말 처리가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전산언어학을 '쓸모 있는 과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며, 기초 연구에도 충실하고 효과성도 좋은 분야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⁷⁾

1990년대는 언어빈도수 사전 편찬 작업에도 힘을 기울인 시기였다. 1980년대에 이미 문자의 확률통계적 연구에 대한 원리와 실험적 연구가 진행된 바 있는데, 1992년에는 「조선말대사전」(1,2권)에 어휘빈도수를 반영하였고, 1993년에는 어휘와 글자 및 토 등에 대한 확률통계적 분석을 심화시켜 「조선어빈도수사전」을 간행하게 되었다.

「조선어문」을 비롯한 여러 연구잡지에도 언어정보처리와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기계번역 등의 언어공학을 실현하는 데 관련되는 구체적인 언어학적 문제들을 연구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1993년에 출간된 「응용언어학(1)」(문영호, 권종성, 최병수, 박애순), 1994년의 「조선어정보처리」(권종성)를, 1995년의 「정

7. 문영호(1990)에서 제시된 컴퓨터 이용과 관계되는 응용언어학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에 민족글자와 민족어를 습득시키는 문제, 즉 자연어에 접근하여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직접 대화를 실현하는 문제
2. 컴퓨터에서 언어구조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문제, 즉 언어의 자동분석 문제
3.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어자료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문제, 즉 언어자료의 자동처리가 관계된 언어학적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다음 7가지로 제시하였다.

1. 언어구조(말소리구조, 문법구조, 문장구조)의 모형화
2. 계량언어학(각종 빈도수 사전 등)
3. 본문 자동분석(형태소, 문장문적, 의미론적 분석)
4. 자동 정보처리와 언어학(자연어에 의한 분류, 검색, 처리)
5. 정보언어 작성(자연어에 유사한 컴퓨터언어 개발)
6. 자동기계번역 체계(번역 알고리즘, 자동사전)
7. 컴퓨터 사전편찬학(문법사전, 문맥사전, 시소러스, 원로더스 등)

보검색체계에서의 자동분석가공」(김길연)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⁸⁾

자연언어처리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가 높아지면서 통보언어, 수리언어학, 언어공학에 대한 이론실천적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최근에는 「조선어 어휘 통계학」(문영호, 1998)이 출판되었다.

한편 응용언어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언어학자, 자연언어처리 전문가들을 위한 응용언어학 전문지식 보급이 절실하게 되면서 응용언어학 분야 대학교재와 참고서를 집필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문헌정보검색리론」(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3), 「응용언어학」(김형직사범대학출판사, 1995), 「기계번역」(교육도서출판사, 1995) 등이 출판되었다.⁹⁾

아울러 이 시기에는 각종 언어공학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에 따라 워드프로세서 등의 응용프로그램이 출현하였고, 문자인식, 음성인식, 기계번역 등의 고급 언어처리 기술의 성과가 각 경연대회와 전시회에서 보고되었다.

최근 들어 북한의 언어공학의 성과가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소개되면서 북한 언어공학의 수준에 대한 그동안의 선입견에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어공학 분야에서의 남북협력 사업도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언어공학의 각 부문별로 북한의 연구 현황을 개괄해 보았다.

-
- 8) 「응용언어학(1)」은 기계번역과 언어정보론에서 제기되는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일반화하여 서술하고 있다. 「조선어정보처리」는 인자료의 분석이나 합성, 번역, 검색 등의 일반적 원리를 이론적으로 개괄하여 서술한 이전 문헌들과는 달리 우리말을 기본자료로 하여 우리말 분석 종합의 원리와 방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정보검색체계에서의 자동분석가공」은 정보검색 체계에서의 자동분석 가공의 본질과 그 순차적인 단계 그리고 매 단계들에 적용되는 수법과 수단에 대하여 우리말 본문을 대상으로 원리를 체계화한 것이다. 즉 자동정보검색 체계에서 정보분석 가공 과정이 본문의 줄이기와 정보 검색 시소러스를 이용하여 줄어진 본문을 색인하는 두 공정으로 이루어지며, 자동 시소러스를 만드는 알고리즘과 그것을 이용하여 문헌과 정보집의를 색인하는 알고리즘을 서술하였다고 한다.
- 9) 「문헌정보검색리론」은 정보검색의 본질, 정보검색 체계, 정보검색 언어, 정보검색 언어의 형태 서술, 정보검색의 본질과 일반원리, 정보검색 체계와 함께 정보검색 언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 서술함으로써 언어정보론을 더욱 체계화하고 완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응용언어학」은 응용언어학의 기초 이론, 수리언어학의 기초, 자동정보처리 이론, 기계번역과 현대 기계번역 체계에 대한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문영호·이승길의 서술한 「기계번역」은 언어학자들이 개발한 기계번역체계 <대동분>(로-조, 일-조)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 그리고 기계사실 조직방법을 제시하며, 여기에 적용된 실마리 구조 해석수법과 동성원칙 사실 구축원리를 상세히 소개하고, 현대기계번역 체계의 발전 추세와 언어학적 특성들을 명료하게 서술하며, <대동분> 체계의 특성들을 대비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기계번역을 실현적 단계로부터 공입화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이론 실천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다고 한다(박재수 1999).

3. 북한 언어공학의 현황

3.1 북한 언어공학의 관련기관

북한의 언어공학 관련 연구와 개발은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론적 측면에서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기관들을 들 수 있는데, 사회과학원 산하 응용언어학연구소, 각 대학의 학과와 연구실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응용하여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여러 연구센터들이 있다. 선행 연구와 각종 정보를 통해 북한의 주요 언어공학 관련기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 주요 연구·교육 기관

1) 사회과학원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공업과학원, 경공업과학원, 농업과학원, 의학과학원, 사회과학원 등 정무원 산하 5개 과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 이 중 사회과학원 산하 언어학연구소는 북한 언어연구의 중심 기관이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는 1964년 2월에 설치된 것이지만, 김일성대 조선어문연구회(1947년 2월)를 그 모태로 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관이다. 김병선(2000)은 사회과학원의 응용언어학연구소가 언어 정보처리의 언어학적 이론의 바탕을 이루는 연구와 기초 자료의 처리 분야를 담당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응용언어학 연구실은 원내 통보연구소와 더불어 각종 전산언어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구·교육기관

한편 각 대학에서도 언어공학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983년경 각 대학의 전자공학부문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과학원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등에 전자계산기연구소를 설치하여 관련 부문의 기술인력 양성을 추진했다. 1985년에는 평양과 함흥에 별도의 전자계산기단과대학을 신설하였고, 1986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팅센터를 설치하였다.

10) 이 중 공업과학원이 대표적인 기관으로 이를 보통 과학원이라 칭한다. (참고:전산원 1994)

1991년도에는 김책공대 내에 컴퓨터요원양성센터를 설치하였는데, 북한과 중국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중국측의 설비 및 인력 지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1996년 6월에는 전국프로그램강습소를, 1997년 4월에는 나진선봉 지역의 해운대학에 교육센터를 열었고, 이외에도 평양프로그램학원 등의 개발인력 양성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3.1.2 주요 개발 기관

1) 조선컴퓨터센터(Korea Computer Center)

조선컴퓨터센터(북한 표기로는 ‘조선컴퓨터센터’)는 경제 각 부문의 전산화를 실현하고 프로그램 개발 기술을 발전시키며, 컴퓨터 분야의 기술교류 사업을 촉진시킨다는 목표 아래 1990년 10월에 설립된 곳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지이며 동시에 전자계산산업의 연구, 인력 양성의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컴퓨터 종합운동기관이다. 이 센터의 설립목적은 컴퓨터기술의 보급, 첨단기술의 현장도입, 최신정보자료의 제공, 새로운 전자설비의 개발 등이지만 주된 활동은 프로그램 산업이다. 평양 민경대 구역 내에 연건평 2만 3천평방미터의 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약 800명의 연구인력이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센터에는 전자계산기 조종실, 중앙계산기실, 자동설계실, 사무처리실, 전자계산기 모의실, 화상처리실, 지식공학실, 전자계산기 통신실, 체계프로그램실, 장치기술실 등이 있다. 음성인식과 합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은 지식공학실에서 맡고 있으며, 사무처리실에서는 전자출판체계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곳에서는 이외에도 문자인식, 번역기, 고속화상 생성프로그램, 서체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 때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였으며,¹¹⁾ 남한의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1)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 인사들은 이날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동안 북한 컴퓨터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평양의 조선컴퓨터센터를 방문해 컴퓨터·소프트웨어분야의 현지사정을 파악하고 협력가능성을 타진했다. 조선컴퓨터센터는 남측의 국외정보학회와 남북한 한글(조선글)정보화의 일환으로 지난 96년 남북간에 합의한 성음기호 28자 기반의 새로운 컴퓨터 문서작성기(가정 온누리 보편화 한글기)의 공동개발을 합의해 왔다. 또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내년 1월부터 남북한 통합 워드프로세서를 개발기로 하고 소프트웨어전문가 10명을 연구원으로 삼성전자에 파견, 워드프로세서 개발임부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이날 이곳을 방문한 우리 대표단에게 외국에서도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지 않는 마이크로를 이용해 책을 읽으면 그 음성이 컴퓨터 화면에 정확히 입력되는 음성인식프로그램을 선보여 극찬을 받았다.’(진자신문 2000년 6월 15일)

2) 평양 프로그램(정보)센터(Pyongyang Information Center)

1991년 7월 17일 조업식을 시작하고 활동중인 평양프로그램센터(북한 표기로는 '평양프로그램센터')는 기존의 컴퓨터 관련회사에 조총련 상공인의 자금과 UNDP의 기술 지원하에 기구와 설비를 확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1986년에 발족한 '평양프로그램개발회사'가 시초이며 이후 1988년 10월에 '평양정자계산기운영회사'로, 1991년에는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센터에는 데이터베이스 그룹, 출판그룹, 응용 소프트웨어 그룹의 세 그룹이 있으며, 젊은 기술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워드프로세서 '창덕'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이를 개량한 '창덕2'를 개발하였고, 윈도우와 매킨토시에서 이용 가능한 한글 입출력 프로그램인 '단군', 문자인식 프로그램인 '인식' 등을 개발하였고, 해외보급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가장 앞선 기관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과학원 프로그램 종합연구실(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under Academy of Sciences of the DPR of Korea)

1970년에 창립되었으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론 실천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실의 목표는 국내 및 수출용 프로그램의 개발, 소프트웨어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소프트웨어 기술과 제품의 보급, 소프트웨어 기술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으로 도입 등이다.

이 연구실의 연구의 이론적 측면은 조선문자인식 이론, 언어기계번역, 자료압축, 입력자료 오류평가, 프로그램 도식(흐름도, 알고리즘)의 구조연구, 관계자료 기지 체계(데이터베이스 체계) 연구 등이며, 조선어, 영어 번역기와 문자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3.1.3 관련 행사

1)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북한은 제 3차 7개년 경제계획기간중 산업의 전산화를 추진할 목적으로 조선컴퓨터센터의 주관아래 1990년 12월부터 '전국 컴퓨터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를 열어 컴퓨터분야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격려하고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해오고 있다. 이 대회에서는 해마다 언어공학 분야의 프로그램이 중요한 상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전국음성인식프로그램 경연 및 학술발표회

한편 1998년에 들어와서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인민대학습당에서 전문프로그램개발기관 소속 과학자,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보다 구체화하여 음성인식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전국 음성인식프로그램 경연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 향상된 컴퓨터실력을 입증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3.2 언어자료 구축과 통계

3.2.1 언어자료 구축의 개념과 현황

언어자료 구축은 모든 언어공학 분야의 선결과제이다. 어문 생활과 정보처리의 선진화 및 효율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모두 자국어론 중심으로 한 기초 언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언어정책 수립과 교육의 효율화는 물론 정보처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정보화가 국가적 과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과 대용량의 규모를 갖춘 국가적 언어자료 기반(National Corpus)의 지속적 축적이 필수적이다(문화관광부 1998).

언어자료 데이터베이스는 '말뭉치'¹²⁾로 불리는데, 언어학적으로는 새로운 언어 모델의 개발이나 사전 편찬, 전자 사전 개발 등에 긴요한 기초가 되며, 언어공학 분야에서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확률 기반의 각종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자료가 된다.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등의 언어 분석에서부터 정보검색, 기계번역, 음성공학 등의 응용 부문에서도 필수적이며, 이 외에도 언어 교육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1998년부터 문화관광부의 '21세기 세종계획' 사업의 말뭉치 구축은 남한에서는 매우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97년에 국가의 국어 정보화 계획(21세기 세종계획)의 추진이 결정된 후, 1998년까지 이루어진 말뭉치는 약 1억 3천만 어절에 이른다.¹³⁾

12) 이외에도 코퍼스, 말뭉침 등의 용어가 있다.

13) 국가 말뭉치를 이렇게 대규모로 구축한 예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다. 대표적인 국가 말뭉치로는 영국의 BNC를 들 수 있으며, 미국도 뒤늦게 현재 국가 말뭉치의 구축을 진행 중이다.

3.2.2 북한의 언어자료 구축

북한의 말뭉치 구축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입수할 수 없으나, 각종 통계언어학적 연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었으며,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에서 1993년에 펴낸 「조선어빈도수사전」과 같이 말뭉치의 구축과 구성을 일부 언급한 자료가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이미 상당한 양의 말뭉치가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어빈도수사전」을 비롯한 일련의 통계적 분석 연구들을 통해 북한의 언어자료 구축과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언어자료 구축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추진되었다. 1993년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80년대에 이 사업의 계획이 만들어지고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90년대 초반에 남한이 말뭉치 구축의 시작 단계에 진입했음을 생각하면, 북한이 언어공학 사업을 일찍부터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어빈도수사전」은 우리 남한의 학자들에게 하나의 큰 자극이 되었으며, <21세기 세종계획>을 입안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김병선 2000).

빈도수 사전 편찬의 목적은 언어 연구 및 전산언어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안내」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① 우리말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과학적 자료 토대를 마련하는 것. 고유어 언어 체계를 발전시키며, 과학적인 어휘정리, 규범적 언어의 확보 등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는 것.
- ② 기계번역, 자동통보처리, 계산기언어학, 자동사전편찬 등 응용언어학과 통보처리분야의 자료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 ③ 교육, 인쇄, 사전 편찬과 같은 언어 실천 분야에서 어휘대상 선택을 과학화하는 것.

사전의 용량에 있어서는, 본문의 양으로 볼 때, 1,017,376개에 이르며, 토빈도수 사전에는 656,691개의 토가, 자모자 빈도수 사전에는 1,096,856개의 자모자가, 음절 빈도수 사전에는 463,010개의 음절자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확률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언어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수학적 처리 공식을 정교하게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글자의 출현빈도 조사를 분석하여 자음 출현확률은 59.4%, 모음 출현확률은 40.6%라는 결과를 얻었고, 단어의 평균길이는 2.17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언어자료는 사전편찬은 물론, 각종 언어기술과 컴퓨터 자판의 설계

와 컴퓨터 부호계의 설계에도 응용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통계언어학적 성과는 다음과 같다.

리정용(1990)은 글자 및 어휘 빈도수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본문량을 결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통계적 분석은 표본을 통해 모집단 전체의 지식을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표본량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는 이를 음절 '의'의 예에서 들고 있는데, 이 음절의 빈도수를 규정하려면 적어도 101,000음절의 본문이 필요하다고 한다.¹⁴⁾

빈도수 사전의 정확도 평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중이며, 대략 90% 정도의 정확도를 갖는 빈도수 사전을 완성하려면 적어도 1,010,947 단어 정도의 본문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⁵⁾ 이 연구는 당시 진행 중인 말뭉치 구축과 통계언어학적 해석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 볼 수 있다.

박애순(1993)은 기계번역, 정보검색, 자연언어처리 등 응용언어학계척과 최신과학기술발전의 요구에 맞게 글자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어의 글자구성을 정확히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를 위해 「조선말대사전」의 일반어 18만 4527개를 전자계산기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분석 계산한 것이다. 이 결과, 우리말 음절의 전형적 유형은 명사, 대명사, 수사에서는 1, 2, 3 음절이며, 동사, 형용사, 부사에서는 2, 3, 4 음절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리승길(1999)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도 '코퍼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리승길은 '코퍼스'의 어의와 개념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큰 덩어리, 뭉치>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작가의 전집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언어학적으로는 언어연구의 기초자료로 이용되는 언어행위의 자료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코퍼스에는 음성코퍼스와 본문코퍼스(텍스트코퍼스)가 있으며, 대규모의 코퍼스를 구축하면 언어의 통계처리를 손쉽게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언어 현상연구와 자연언어처리연구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들을 수집하거나 자연언어처리의 구체적부분들에 직접 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⁶⁾

김성혜(1999)는 조선어자료를 자동분석, 번역, 검색할 때 제기되는 문자 일 사이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고찰한 분석이다. 우선 우

14) $N = 1.96(Zp^2)(1-P) / \epsilon^2$ (또는 $\delta^2 P$)

여기서 N은 본문량, P는 확률, ϵ 는 절대오차, δ 는 상대오차를 말한다.

15) 통계언어학에서의 정확성은 연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음운, 음성적단위, 문법요소의 출현빈도를 연구할 때는 상대오차를 20% 미만으로, 어휘분석에서는 상대오차를 30~35% 미만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16) 그 예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어를 코퍼스에서 찾아낼 수 있으며, 동일형태의 단어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비율을 언어통계적으로 찾아내 언어학연구와 언어처리의 실천적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리말 단어의 음절길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N-gram¹⁷⁾에서의 N을 결정하였는데, 「조선어어휘통계학」을 이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말의 평균 소리마디길이는 3.26이며,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유형은 2음절 단어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따라서 이에 따라 2-gram을 유사도 관정의 단위로 결정하였다.

유사도 관정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말뿌리들과 결합가능한 토의 유형에 따라 그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법을 택했다. 선행연구들은 비교하려는 문자열들의 가능한 모든 N-gram의 공통부분의 개수를 참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에 따르면, 형태론적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평가값을 0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부가하였으므로, 6000여 건에 달하는 언어자료 서지의 범주별 색인을 진행한 결과, 더 정확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김문섭(2000)은 조선어 기술본문문장¹⁹⁾의 특성을 첫째, 기술본문 문장성분화의 특성과 둘째, 기술본문 문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짜임새의 특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기술본문 문장은 확대성분보다 단순성분이 많으며, 주어가 있는 문장이 더 많이 쓰이고(64%), 간접보어가 들어간 문장 구조 유형이 더 적극적으로 쓰인다고(57.2%) 보고하였다.

안성득(1992)은 수학적 해석으로 단어와 문장에 담긴 정보량을 해석한 논문이며, 안성득(2000)은 응용언어학에서 통계언어학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통계언어학적 연구방법론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3.3 언어 분석

3.3.1 언어 분석의 개념과 현황

언어공학 분야에서 언어 분석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언어 분석은 입력된 자연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단위화하는 절차로서, 형태 분석과 구문(문장) 분석, 그리고 의미 분석이 있다.

한국어가 갖는 교착어적 특징은, 언어 처리의 첫 단계에서 어절을 형태소

17) 문자열을 인접한 N개의 문자로 이루어지는 부분 문자열로 나누었을 때, 그 부분 문자열을 N-gram이라고 한다.

18) 이는 박애순(1993)의 결과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단어 유형은 1547.15개이며, 이 중 34.20%인 63166 유형의 단어가 2음절어이다.

19) 기술단행본에서 뽑은 2천개의 문장과 기술잡지에서 추출한 100~1000개의 문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위로 분리하는 작업을 요구한다. 한국어에 대한 형태소 분석은 이런 특징과, 불규칙 활용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다. 형태소 분석은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등의 언어 분석 외에도, 기계번역, 정보검색 등 응용언어공학 분야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자연 언어 처리의 초창기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각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설정하였던 분석 기준을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고 있다.²⁰⁾

구문 분석은 문법 규칙에 의해 입력된 문자열을 대상으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인데, 주로 형태소 분석의 결과를 이용한다. 이 과정은 의미 분석, 기계 번역 등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형태소 분석에 비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구문 분석에 이용할 한국어 문법 이론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개된 구문 분석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 연구 단계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현재 통계적 방법의 접목과 더불어 구문 분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구문 분석 말뭉치의 구축도 계획되고 있다.

의미 분석은 의미 구조를 추출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번역, 정보검색, 음성 인식 등 고급응용기술을 위해서 필요하며, 사전 등의 지식 기반 구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어의 중의성을 해결한 의미 분석 말뭉치의 구축도 이루어지고 있다.

3.3.2 북한어 언어 분석 연구

1) 형태 분석

북한어의 형태 분석 연구는 주로 형태소 분리를 다룬 것인데, 현재 각종 응용 시스템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태 분석은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후반으로 오면 형태 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표적 형태 분석 연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영호(1990)는 형태분석 분석을 문장 속에 쓰인 단어들의 문법 정보를 찾아내기 위하여 단어의 형태 구조를 컴퓨터에서 갈라내는 공정이라고 하

20) 분석 단위, 즉 태그 세트(Lag set)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한 많은 제안이 있었다. 1998년의 세종 계획 세부 과제인 '이질 분석 표지의 표준안(책임자 임흥민)'은 그동안의 다양한 분석 기준을 모두 검토하고, 몇 가지 기준에 근거한 표준안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도 '태그세트 표준안'을 제안하였다. 1999년부터 시작된 세종 계획 형태소 분석 말뭉치 구축에서는 이들 표준안을 참고하고 일부 절충하여 분석 표지를 결정하였다.

고, 어간사전에 의한 형태론적 분석과 형태단어사전에 의한 형태론적 분석, 문법적 동음이의어를 가르기 위한 형태론적 분석 등을 다루었다.

어간사전에 의한 형태론적 분석의 원리는 주어진 단어를 어간사전과 차례로 대비하여 어휘적 의미를 가진 부분과 문법적 의미를 가진 부분으로 가른 후 문법적 형태와 문법 정보를 밝히는 것이며, 형태단어사전에 의한 자동분석에서는 같은 단어의 여러 가지 문법적 형태를 식별하기 위한 대비한계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권중성(1992)은 조선을 형태론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로 조선을 형태 단어의 결합 규칙을 알고 그것을 모형화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고, 조선을 토의 결합 순서와 어간과 토의 결합 제약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김성호·정영걸(1992)은 조선을 형태부해석에서 음절글자와 그 모임에서의 가능한 조직을 형식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조선을 형태부해석프로그램개발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규정하고, 언어함수를 적용하여 이를 수학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권중성·리승길(1993)은 조선을 토의 분석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분석의 속도와 질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론적 분석의 한 방법으로 추적배열탐색법에 의한 토사전의 작성, 알고리즘 문제, 분석의 정밀화 등을 다룬 것이다.

림영신·김영남(1994)은 자동색인을 위한 조선을 문장의 형태론적 자동해석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여기서는 주어진 단어에 대해 앞에서부터 시작하여 길이가 가장 길면서 인접한 형태부와 문법적 접속 조건이 만족되는 형태부들을 차례로 결정해 나가는 <최장일치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또한 형태부 시작형태와 용언말뿌리의 꼬리변화를 고려하여 형태부 원형을 유도한 후 사전탐색하는 방법을 동원하였다. 이에 기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5만건의 2차문헌자료기지 SDDB의 자동색인에서 95%의 정확성을 달성하였다고 한다.

2) 구문(문장) 분석

문장 분석은 문장의 구조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90년대 초에는 이론적 측면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보검색이나 기체번역 등 개별 응용 사례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영호(1990)는 형태론적 자동분석에서 얻어진 문법정보를 자료로 단어들의 호상관계를 규정한 다음 그것들을 결합순위별로 묶어서 하나의 묶음도

식을 얻는 데 문장론적 분석의 기본 목표가 있다고 보고, 종속관계에 의한 문장론적 자동분석, 결합규칙에 의한 문장론적 자동분석, 문장성분에 의한 문장론적 자동분석 등을 언급했다.

권오일(1993)은 의존문법에 의한 문장해석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최병수(1993)는 러시아어의 형태부분석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찾아 문장구조 분석에 응용하려는 시도이다.

권종성(1994)은 문장론적 분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조선어의 문장구조적 특성을 고찰하고, 기존의 문장론적 분석알고리즘을 조선어에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리승길(1995)은 이전의 언어학에서 이용했던 성분분석방법과 구구조분석방법을 자연언어문장의 자동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기하려는 시도이다. 그는 실마리구²¹⁾가 갖는 정보를 이용하여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실마리구조해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마리구조 해석은 실마리구의 제약을 기본으로 참조하면서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실마리구조 규칙은 문맥자유형의 형식과 이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밝히는 방법으로 표시되며, 일치성, 우측요구, 좌측조정, 순서제약, 범위제약 등의 제약을 들고 있다.

김광현(1996)은 조선어문장에서 술어가 축이 되어 다른 모든 문장성분을 문법적으로 통솔하여 문장을 형식화하여 주므로, 조선어문장구조에 대한 술어중심의 해석방법을 제기하여 효율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김철호(2000)는 컴퓨터언어처리에서 제기되는 지시어의 선행대상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시어와 선행문장에서의 표현형태를 살피고, 선행표현이 지시표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생략어의 개념과 형태를 밝힌 것이다.

3) 의미 분석

의미 분석은 문장에서 의미 구조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권종성(1994)이 대표적 연구이다. 권종성(1994)은 의미표현에 서구 이론의 개념과 방법론을 받아들여, 의미 표현 형식으로서의 의미그물틀형식, 격틀형식, 결합가문법, 개념의존표현 형식, 논리형식에 의한 의미표현 등을 제시하고, 이 이론적 근거에 따라 의미 분석 기술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는 격문법에 의한 격틀형식의 의미 구조 추출이 조선어 분석에 적합하며, 여기에 명사구와 병렬

21) 실마리구는 단어결합으로서의 구를 이루는 데서 중심적이며 주도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단위로서, 구조 분석에서 지배자적 역할을 하며 조절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한다.(리승길 1995)

구에 대한 분석을 동시 진행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전병호(1994)는 단어의 의미정보를 이용하여 조선어 문장 내 단어들 간의 문법적, 의미적 구조를 동시에 해석할 때, 그 애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미전달원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어와 그것에 붙은 토, 단어가 표현하는 의미를 이용하는 결합관계에 의한 조선어문장구조해석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애매성이라 한다. 이 애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차성의 원리, 격의 비중복원리, 의미전달원리'와 같은 원리를 적용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며, 이 알고리즘을 100개 문장에 대해 적용한 결과, 애매성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

3.4 언어생성

자연언어 생성은 컴퓨터 내부 표현으로부터 상응하는 자연언어 표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언어생성은 언어이해와 더불어 자연 언어 처리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언어이해와는 반대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언어생성은 질의-응답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자동 요약 등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북한에서도 언어생성에 대한 몇 가지 논의가 보이는데, 이는 정보검색과 같은 응용 분야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태성(1998)은 알림문장으로부터 질문문장의 생성 알고리즘을 고찰한 것이다.

김정옥(1999)은 인공지능분야에서의 문 생성을 다룬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글자합성, 문장 분석과 합성, 본문 분석 등에서 일정한 성과와 경험이 쌓여 왔으며, 이제는 본문합성을 위한 과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문합성을 위해서는 언어학적 기초를 밝히는 일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본문생성을 위한 구상의 전략과 기술, 논리의 확보, 정황과 계기의 정합성, 언어자료의 선택²²⁾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며,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2) 여기에는 대명사/대리 단어의 선택, 어휘선택, 문법적수단의 선택, 문장선택, 문장태양 순서 결정의 단계가 포함된다.

3.5 정보검색

3.5.1 정보검색의 개념과 현황

정보검색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한 후 찾기 쉬운 형태로 조직하여 두었다가 정보에 대한 요구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보를 찾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보검색 시스템에는 단어나 수치로 표현된 독립된 형태의 데이터 항목을 저장, 검색하는 데이터 검색 시스템, 문헌정보에 대한 참조 정보 검색 시스템, 문헌의 전문을 저장하고 여기에서 문장, 문단, 문 등을 검색하는 본문 검색 시스템, 질의 응답 시스템 등이 있다.(김영택 외 1994)

정보검색은 인터넷의 실용화와 더불어 주요 언어공학 분야로 부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기술이 실용화되고 있다.

3.5.2 북한의 정보검색 연구

문영호(1990)는 통보처리라는 큰 틀 안에서 정보검색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통보처리는 여러 개별민족어로 된 도서, 문건, 자료들을 하나의 민족어로 번역한 다음 그것을 요약, 개괄, 분석, 정리,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보검색은 전자계산기와 정보언어, 그에 의하여 작성된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일정한 내용을 가진 대답을 얻기 위하여 입구상태에서 초기자료와 질문을 제기하고 출구상태에서 답을 얻어내는 정보처리 체계의 한 분야라고 하였다.

김길연(1992)은 정보검색은 대량의 과학기술문헌을 처리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정보검색공정의 여러 측면을 소개하고 있으며, 정보검색시 발생하는 다의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권종성(1994)은 정보검색 체계의 기능으로 자료수집 기능, 정보제공 기능, 정보관리 기능의 세 가지를 들고, 열쇠어 자동추출 방법, 열쇠어 검색 방법 등에 대해 살핀 것이다. 여기에서는 논문 표제나 신문기사문에서 열쇠어를 추출하는 방법과 조선어문헌으로부터 열쇠어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길연(1996)에서는 사회과학검색어 사전에서의 동의어 처리를 다룬 것인데, 동의어 처리는 사전의 올림말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적 등가 관계를 전자계산기가 알아볼 수 있게 명백히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올림말들 사이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내재론적 등가 관계와 정보검색 체계의 영

역에서만 존재하는 선택적 등가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영애·강은철(1997)은 사회과학 시소러스사전의 포제어 연관관계를 자동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손순이(1998)는 본문자동줄이기와 같은 자동 정보 요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본문자동줄이기는 정보적인 요소들과 비정보적인 요소들을 다같이 포함하고 있는 큰 자료덩어리인 본문에서 정보수요자가 요구하는 정보적인 단어나 단어결합을 추리해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만큼, 이를 위해서는 본문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정보추리를 위한 언어학적 분석은 기계번역에서의 그것과는 여러가지로 다르다고 기술하고 있다.²³⁾

그는 이러한 분석의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먼저, 1차문답체계에서는 입력된 본문에 대해 단어들의 품사 및 토의 소속관계를 기계사전과 대조 분석하여 1차 정보를 결정한다. 2차문답체계에서는 물음을 나타내는 단어들로 질의하고 본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정보적 단어를 찾아내는 문답과정을 거친다. 이들은 계산기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2차문답체계에서 사용하는 질의는 <언제>, <누가(무엇이)>, <누구를(무엇을)>, <누구의(무엇의)>, <무엇때문에>, <어디로>, <어디서>, <어떤>, <어찌하는가>이며, 이에 해당하는 정보적단어를 찾는 것이 이 과정의 목적이다. 예를 들어, <언제>와 같은 질의에는 1차 정보에서 찾아낸 토 <에>가 붙은 단어가 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많은 양의 본문을 위의 2차문답의 질의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남기고 축소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길성혜(1999)에서는 정보검색에서의 통계적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의 요구를 예측하거나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유형별로 기억시킨 후, 검색요구가 입력되면 저장된 요구와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정보검색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용 가능할 것이라 하였다.

23) 구체적으로는, 기계번역에서의 언어학적 분석은 다중언어의 단어를 분석으로 하지만, 정보추리에서는 단일언어의 정보적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기계번역에서의 분석이 입구언어에 대한 분석과 출구언어의 문법규칙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정보요약을 위한 분석에서는 문장에서 정보적 가치를 띠는 단위들을 구획해 주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3.6 기계번역

3.6.1 기계번역의 개념과 현황

기계번역(machine translation)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번역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자연 언어 처리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이다(김영택 외 1994). 기계 번역은 컴퓨터의 탄생 이전에도 관심의 대상이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1950년대에 와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기의 규칙 기반 접근은 여러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기계번역이 다시 각광받게 된 것은 통계적 방법과 같은 새로운 언어 처리 기법의 발전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의 교류량이 폭증하면서, 언어 번역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자동기계번역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통신망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이제 기계번역은 실용화의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남한의 경우 자동기계번역에 많은 업체가 뛰어들어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번역 프로그램을 선보였지만, 대부분 직접 번역 방식이나 변환 방식과 같은 기존의 방법론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번역기의 품질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것은 번역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침체 상황을 가져오게 하였다.

최근 들어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²⁴⁾과, 전자사전의 구축을 바탕으로 하여 다시 기계번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한 번역기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실용화되었으며, 영한, 한영 번역기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어와 중국어 번역기 개발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6.2 북한의 기계번역 연구

북한의 기계번역 연구의 역사는 상당히 길다. 이미 1960년대부터 초부터 기계번역을 염두에 둔 각종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 하다. 이 시기부터 통계언어학적 방법에 대한 연구와 기계번역에 대한 연구도 착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아울러 언어학자들이 수학, 전자공학 등

24) 외국의 경우에는 70~80년대에 자동 번역 기술의 주류를 이루었던 RBMT(Rule Based Machine Translation)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 지식 지리 기법을 기초로 한 언어 이해 메커니즘의 규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서상규·현영권 1999).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 긴밀한 연계를 갖고 번역과정을 기계화,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언어학자들을 중심으로 수학적전문가, 기계전문가들을 망라한 번역기계연구집단이 조직되었으니, 러시아어를 조선어로 기계번역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김병선(2000)이 지적하였듯이 이 시기의 연구는 일부 기계번역을 위한 실험적 연구와 언어의 양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진행하고 기계 번역의 대상 언어는 러시아어가 위주이고 그 다음이 영어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 일-한 번역기와 일-영 번역기도 개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연구논문에서는 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없다. 기계번역에 대한 북한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영호(1990b)는 기계번역 연구의 현황을 세밀하게 소개하고, 기계번역의 성능과 경제성에 대해 논의한 후, 조선어 자동번역체계를 위한 당면한 언어학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조선어본문을 입출구로 하는 자동번역실현에서 언어학적동음이의어와 의미론적다의성 처리를 조선어의 특성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다.

둘째, 조선말 토와 문장구조의 특성에 맞는 형태론적, 문장론적 분석과 종합,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것이다.

셋째, 조선말 어휘 구성과 문법구조, 조선말 본문에 대한 확률통계적 분석 자료에 토대하여 합리적인 자동기계사전 작성법을 탐구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의 기계번역체계의 특징은 언어공학적 탐구와 실현, 통보처리 체계와의 밀착, 기업활동의 합리화 등으로 요약된다며 이들과 같은 발전 방향이 북한의 언어공학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을 시사하고 있다.

문영호(1991)는 현대기계번역체계의 언어학적 공정을 소개한 것으로, 언어학적 공정이란 전자계산기안에서 자연언어 분석과 종합의 원리적 과정을 언어이론에 토대하여 모형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배광희(1990)는 상이한 언어의 번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그는 러시아어와 조선어의 기계번역에 사상모형²⁵⁾에 의한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사상모형은 일종의 중간 단계로서, 입구언어와 출구언어 사이의 구조의 상이점에 주목하지 않으므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광희(1991)는 배광희(1990)를 식화시킨 것으로, 역시료-조 기계번역에서의 사상모형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다.

리미봉(1991)은 기계번역에서의 단어의 다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

25) 사상모형(寫像模型)의 기본핵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物) 상을 나타내는데서 장대한 언어수단에 의해 표현되지만 담겨진 개념은 언제나 객관적이며 공통적이라는 데 있다고 한다.(배광희 1991)

람의 논리적 사유과정에 대한 모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역빈도수사전의 작성이 문제의 해결 열쇠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역빈도수사전은 그동안 한 언어 내에서만 이용되어 왔던 빈도수사전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기계번역 체계에 이용한 것으로, 기계번역에 대한 계량적 연구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김학실(1993)은 로-조 기계번역이 이 시기에 처음 시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같은 단어가 형태적으로 변화할 경우 이를 사전에 어떻게 수록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데, 사전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경우 사전의 부피를 줄일 수 있어서 한정된 용량 안에 더 많은 단어를 수록할 수 있고, 탐색 속도를 단축시키는 물론, 더 정확한 번역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길성혜(1999)에서는 기계번역의 추세가 과거와는 달리 상이한 유형의 문장, 즉 본보기문장과 번역문들을 모두 컴퓨터에 기억시켜 놓고 번역해야 할 문장이 주어지면 이미 기억되어 있는 문장과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가장 유사도가 높은 번역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김성준(2000)은 영어한정어를 기계번역의 견지에서 정확히 설정하고 기계번역조작에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번역의 여러 공정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규정이인 명사를 기동어휘로 하는 명사구단위의 한계를 정확히 구획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학실·리금화(2000)는 로-조 기계번역에 필요한 러시아어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결합 조건을 밝힌 것이다. 결합조건이 강한 러시아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결합규칙을 작성하여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함윤석·리석수(2001)는 보조동사의 다양한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영어 표현과 대응시키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이들은 조선어문장의 술어부에 부속되어 시칭-태적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적동사들을 '조동사'란 이름으로 설정하고 목적어인 영어의 언어적 특성에 맞게 술어부의 의미를 추출해내는 술어부의미대응표를 작성하고, 이 의미에 따라 영어의 대응표현을 찾아 영어보조술어대응표를 작성하였다. 이 논문은 술어부의 의미를 정밀화하기 위해 2000여개의 표준영어단순단일문장을 각종 영어교재에서 추출, 참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기계번역뿐만 아니라, 번역문의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눈에 띈다.

변철우(2000)는 외국어²⁶⁾의 관용구가 갖는 내포적 의미를 적절히 번역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말에 대한 영어 번역에서도 동일한 문제들

26) 실제로는 영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숙(2000)은 영어의 성구적 표현의 감정적, 강조적 성격을 올바르게 우리말로 번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6.3 북한의 기계번역 프로그램

○ WINKTRANS

조선어 및 일어자동 번역기이며 80% 이상의 번역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 담징 1.0

조-일 번역 프로그램이다.

○ 해돋이

일본어를 조선어로 번역하는 개인용 기초 컴퓨터 지원 번역 시스템으로, 50,000개의 일상적인 단어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용어 사전, 과학기술용 최소한의 어휘를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일본-조선 과학기술문서 자동번역을 지원하며, IBM-AT 계열 컴퓨터와 PC9801 계열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하다. 일본어-조선어를 동시에 편집하는 편집기를 이용하는 편리한 선편집과 후편집 환경을 제공하고, 자동 일본문서 인식 시스템, 중국문자를 조선어로 읽어서 입력하는 기능, 사용자에게 의한 코드 시스템 선택 기능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

○ 무지개 2.2

국가과학원 프로그램 종합연구실에서 개발된 것이다. 컴퓨터 지원 일본어-영어 번역지원 시스템으로 IBM-AT 계열 컴퓨터에서 실행된다. 소프트웨어 구성은 1) 중국어를 포함한 일본어 문자를 위한 문자인식 프로그램(초당 5문자 인식, 90%의 인식률), 2) 일본어 문서 작성을 위한 에디터, 3)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 프로그램(일본어 문장 선편집 프로그램, 일본어 문장 분석기, 영어 문장 생성기), 4) 사전(일본어-영어 대역 사전 5만 단어, 추가하여 필요한 단어의 키워드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보완하여 기술적인 분야(전기, 수학) 등을 포함하는 독특한 사전을 만들 수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2MHz의 CPU에서 1분에 10~12개의 낱말로 된 일본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 가능하다고 하며, 문장과 분야에 따라 번역의 품질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학이나 기술분야는 번역을 잘 해낸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문영호·이승길의 「기계번역(참고서)」에서는 언어학자들이 개발한 기계번역체계 ‘대동문’(로-조, 일-조)에 대한 상세한 원리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3.7 음성공학

3.7.1 음성공학의 개념과 현황

음성은 인간의 주된 의사소통 수단임은 물론,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중 가장 편리하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성을 컴퓨터가 알아듣도록 하는 것을 음성인식이라고 하고, 문자열을 음성으로 전환하는 것을 음성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분야가 음성공학의 중추를 이룬다.

음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성과들은 각종 음성공학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 음성인식 기술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화자 독립적인 연속 음성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 영어에 대한 음성인식 기술은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비해, 음성합성 기술은 이미 널리 실용화되어 있다.

한국어에 대한 음성인식 기술은 1980년대에 소개되었다. 당시에는 실험적 개발에 머물렀으나, 1980년대 말부터 세계적인 상용화 추세에 발맞추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 음성인식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출현하면서 일반인의 관심도 증폭되었다. 이미 통신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는 많다고 할 수 있다.

3.7.2 북한의 음성공학 연구

북한의 언어공학 분야 중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음성공학 분야이다. 북한의 이러한 성과는 음성에 대한 기초연구의 활성화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다. 북한은 실험음성학 분야에서 자체적인 연구 방법론에 근거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음성공학 분야의 성과는 1990년대 초에는 숫자음성 인식 등의 기초적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연구 주제는 연속음성인식에 집중되어 있다.

곽영철·엄춘희(1992)는 숫자음성의 화자독립인식이 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말 숫자 인식의 가능성 검토를 위해 인식장치를 설계하고 실험한 것이다. 우선, 실험음성학적 연구결과의 검토를 통해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을 추출해 내고, 이를 모형화하여 '수자음성인식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이를 1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남녀 각각 100명이 발성한 음성을 인식시키는 실험을 하였는데, 기존 방식에 비해 5% 정도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이들은 이 방법이 값비싼 전용 소자들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계산기를 이용해 해결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기도 하다.

서정식·정경진(1993)은 연속 발생되는 숫자음의 인식에서 연산처리시간을 줄이면서도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음성분석 및 인식알고리즘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규화자기상관함수와 확장순서연속 DP법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여 100%에 이르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심성민(1993)은 조선어본문-음성합성에서 언어학적 처리는 주로 사전에 의거하는 방법(27)을 취해 왔는데, 이는 많은 기억용량을 요구하므로, 변환규칙을 잘 설계한다면 효율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변환규칙행렬을 작성하고 문자-음성 변환처리에 대한 수학적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본문-소리마디열 변환을 방대한 양의 사전의 도움없이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리경석(1994)은 말소리의 토막화가 음성인식의 전처리단계에서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제하고, 기존에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말 소리 토막화 방법을 연구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우선, 우리말의 소리마디의 구조는 CVC형이며 여러 발생환경에서 각각의 소리요소들은 음성적으로 변이하는데, 이런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소리의 연쇄에서 소리마디를 분절해내기 위한 토막화 규칙을 설정하였다. 5명의 남성이 숫자음성 200개를 발음하도록 하고, 이 자료에 토막화 규칙을 적용하고 일부 오류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추정하였다.

서정식·려용길(1994)은 이미 1991년에 조선어본문-합성체계가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하며, 음절을 기본 합성단위로 삼은 합성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합성기의 자연성은 부족하므로, 우리말 합성기의 자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억양구조, 휴지, 감정 등 여러 음향학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논문에서는 강조음절의 처리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강조음절의 특징은

27) 때 단어들의 발음기호를 사전으로 편집하여 기억장치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진폭이 커지는 것인데, 음성의 기본주기와 진폭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들은 반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주기와 진폭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강조음절에 대한 처리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양하석(1996)은 입말은 사람과 기계와의 대화수단으로, 특히 정보학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교제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입말에 의한 교제 방식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입말교제체계가 필요하다. 입말교제체계는 사람과 기계의 대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계산기에 입말을 입력하는 수준과 규모, 단계와 절차를 질서있게 배열한 것이다.

입말입력, 즉 음성인식 단계는 1) 수십개 또는 수백개의 단어를 규모로 잡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조음된 상태에서 문장을 만드는 단계 2) 비교적 많은 단어를 연달아 발음하는 상태에서 단순문을 대상하는 단계 3) 수천개의 단어를 차례로 배열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속조음을 보장한 단순문을 처리하는 단계 4) 임의의 내용을 가진 입말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3단계에 대한 이론실천적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입말교제체계는 크게 입말분석과정과 입말합성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입말분석기는 입말신호를 자동적으로 인식하며 그것을 계산기에 입력시키기 위한 코드조직구조이고, 입말합성기는 계산기에 의하여 정보를 입말로 출력하기 위한 구조설비라고 하면서 이들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리현순·조성영(1998)은 음성인식분야에서 발생하는 인식 오류를 자동 교정하여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언어의 통계적 특성을 이용하거나 자연언어처리기술의 성과에 기초한 문서교정 방법이 실용화되고 있으며, 조선어처리방법에 기초한 교정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인식오류의 검출과정과 자동정정기술을 제안하고, 이를 실험한 결과 95% 이상의 정정률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권성환·강상문(2001)은 연속음성인식체계의 연구사업 진행의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있다. 북한은 음성인식, 입력체계, 인식결과에 대한 오류 수정 등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현재 토막화오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들이 조선말에서의 발음변화현상을 공학적으로 고찰하고, 일련의 발음규칙들을 제기하였으나 연속발성 환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음성적 변화를 밝히지는 못했다고 비판하고, 연속발성환경에서의 어음변화의 기초단위를 종성-초성쌍(ES쌍)으로 결정하고 이 환경에서 나타나는 발음변화를 포괄하기 위한 문자-발음변환표와 발음-문자변환표를 작성하였다.

이 문자-발음변환표는 403개의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체게 구축을 염두에 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주요한 것으로는 평양말을 기초로 했으며, 어음변화와 발음규범에 대한 문헌들을 기초했음은 물론, 실생활과 각

중 매체에 대한 연구조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확한 발음에 대한 현상까지도 고려했다고 한다. 한편, 발음-문자변환표는 규칙 407개, 특이어사전귀정보²⁸⁾ 2115개의 정보가 반영된 것이다.

이들은 조선어연속음성입력체계²⁹⁾에 이 변환표를 적용시켜 종래의 방식과 비교하였는데, 실험자료로는 「조선말대사전」의 100 단어, 신문에서 뽑은 50문장, 단행본에서 추출한 100문장, 그리고 혁명소설에서 뽑은 50문장이었다. 결과는 음절인식률 79%, 문자변환률은 76%이었으며, 이 수치는 기존 방식에 비해 50% 정도 변환능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했다.

3.7.3 북한의 음성공학 관련 프로그램

○ 평양 2.0

리과대학에서 개발한 음성인식 프로그램으로, 2001년에 개최된 제11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칠보산

과학원 연구소의 음성인식기로 1998년 10월에 개막된 제9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 특등을 차지했다고 한다.

○ 127의 3

김일성 종합대학의 음소단위를 기초로 한 연속음성체계로 제9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한다.

3.8 문자인식

3.8.1 문자인식의 개념과 현황

방대한 문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하는 데에는 자동 문자인식의 기술이 필요하다. 문자인식은 문서, 도표, 필기된 문자 등 각종 문자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알파벳에 대한 문자인식 기술은 20세기 초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실용화되었다. 그러나 영문자나 숫자 인식에 비해 한글어나 한자의 문자

28) 특이어 사전은 일반적인 발음규칙을 따르지 않는 단어의 발음을 사전으로 구축한 것이다.

29) 윈도우2 기종의 컴퓨터에 적재되어 있다.

인식은 매우 어려운데, 우선 해결해야 할 문자의 총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³⁰⁾ 따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가지 한글 문자인식 프로그램이 다양한 요구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고, 일부는 시판되고 있기도 하다.³¹⁾

3.8.2 북한의 문자인식 연구

북한은 다양한 문자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문자인식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분영·류순렬(1994)은 문자인식의 방법에는 구조정합법, 비트정합법, 특징정합법과 같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들의 논문은 이 중 구조정합법 상에서 적용 가능한 전처리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정복·리준식(1997)은 문자인식을 위해 잡음이 심한 인쇄체문자들을 효과적으로 대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이들은 조선어문자의 구조적특성을 고려하여 각 문자를 모음구역, 자음구역, 받침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에 정성적으로 개량한 주변분포법을 적용하여 98.6%의 높은 정확도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리희철(1997)은 조선어문자의 출현 빈도수를 문자 인식에 반영한 알고리즘을 제시한 것이다.

3.8.3 북한의 문자인식 프로그램

○ 용남산 3.2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발한 문자인식 프로그램으로, 2001년에 개최된 제11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북란 제3판

조선컴퓨터센터의 한글문서인식체계로, 제9차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 특등을 차지하였다.

○ 인식편

은별컴퓨터기술무역센터가 개발한 직렬문자인식 프로그램으로, 제8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에서 1등을 차지하였다.

30) 숫자는 10종, 영문자는 52종의 유형을 갖고 있지만, 한글은 11172종, 한자는 5만 종 이상의 글자 유형을 보인다.(시상규·한영균 1999)

31) '아르미', '할날' 등이 있다.

㉠ 인식 2.0(Korean OCR)

윈도 95용 한글 문서인식 프로그램으로서 높은 인식율과 인식속도를 보장하고 있다는 광고를 접할 수 있다고 한다.

㉡ 매

국가과학원 프로그램 종합연구실에서 개발하였으며, 조선 문자 자동인식 프로그램으로, 97%(청봉체, 천리마체는 99.4%)에 이르는 높은 인식율을 보인다고 소개되었다. 속도도 32비트 컴퓨터에서 사용했을 경우 초당 10문자 정도이며, IBM-AT 계열 컴퓨터와 PC9801 계열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하다.

㉢ 희망

도스 2.11이상에서 운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조선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숫자, 특수문자까지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인식 속도는 초당 5~10자이며, 인식률은 99% 이상이라고 한다. 인식 불가능한 문자가 발견되면, 학습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거치면 이후에는 자동 인식이 가능하다고 한다.

3.9 한글 코드와 자판

한글 코드와 자판은 언어공학의 기초 기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기호 체계이므로, 만약 남북한이 서로의 체계를 고수할 경우, 상호 언어처리 분야의 교류에 매우 큰 장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남북한은 3회에 걸쳐 한국어 정보 처리라는 공통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96년에 연변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전산 용어, 자판 배치, 자모순, 부호계(문자코드) 등 4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³²⁾ 이는 민간차원에서의 합의이므로 강제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남북이 한국어의 컴퓨터 처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한국어 정보화의 공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장에서는 1996년의 합의 과정에서 알려진 남북한 한글 코드와 자판의

32) 『96 우리 말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 회의』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사차우 과학 기술협회의 주최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연길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1997년 대회에서 달성된 합의 사항에 대하여 4개 분과별 연구 내용을 기초로 토론을 진행하고 관련 분야 논문 40여 편이 발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 글 컴퓨터 처리 국제 표준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분과 토론을 거쳐 「장르 처리 용어 통일안」, 「자판 배치 공동안」, 「우리 글자 배열 순서 공동안」, 부호계 공동안 등에 합의하였다.

문제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한다.³³⁾

3.9.1 한글 부호계(코드)

남북한 한글 부호계(코드)³⁴⁾에 대한 현황은 홍윤표(1999)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한글 코드는 남한에서는 이미 1974년에 KSC 5601을 공포한 이래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1995년에는 ISO 10646-1에 준하는 KSC 5700을 공포하였는데, 이는 유니코드의 실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북한에서 국가규격으로 정한 최초의 한글코드는 9566-93이며, 이 이전에는 다양한 코드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³⁵⁾ 9566-93은 제1수준의 한글음절자 2,420자를 정하여 정보기술용 코드로 정한 것인데, 1998년에는 이를 수정하여 9566-98의 국규를 발표하였다. 이 코드는 9566-93의 한글 2420자에다가 음절자 259자를 합하여 2679자 수준의 것과 한자 4,653자를 포함한 코드이다. 남한의 KSC 5601의 2540자보다 139자가 더 많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2바이트 조합형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국규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남한은 이미 1995년에 KSC 5700을 국가 표준으로 정하여 조합형을 포함하고 있다.

1996년에 양측이 합의한 부호계(코드) 공동안은 다음과 같다.

- 1) 현재 각기 사용하고 있는 2바이트 완성형과 2바이트 조합형 부호계는 그대로 둔다.
- 2) ISO 2022를 따르면서 우리 글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1바이트 조합형 부호계를 만들고 우리 글 정보 교환용으로 쓰기로 한다.
- 3) 각측의 부호계 변환 프로그램은 각기 만들어 쓰기로 한다.
- 4) 우리 글을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부호계를 지속적으로 공동 개발
- 5) 합의된 우리 글 배열 순서에 따라 ISO 10646-1(Unicode 2.0)의 배열 순서를 재배열하는 문제와 공동 명칭 문제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제기한다.

33) 2001년 2월에 열린 제5차 대화에서 다시 남북한 공동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34) 남한에서는 '한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글'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글'을 사용하지 않고 '조선글'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글'을 '조선글'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홍윤표 1999)

35) '창덕(북한의 문서편집 프로그램)의 코드', '경제대학 코드' '과학원 코드' '컴퓨터센터 코드'('컴퓨터센터'는 '조선컴퓨터센터'를 일컫음), '중편신보사 코드' '그레하 코드' '일본 <한필>(문서 편집 프로그램) 코드'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경호(1994)에 이들 코드를 국규(국가규격)인 9566-93의 코드로 변환시키는 종합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보고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홍윤표 1999)

〈표 2〉 한글 코드의 변화(홍윤표 1999)

남 한			북 한	
연도	규격 번호	내 용	규격 번호	내 용
1974년	KSC 5601-1974	한글 자모 51자에 코드 부여		
1977년	KSC 5714-1977	한자 7,200자에 코드 부여		
1982년	KSC 5601-1982 KSC 5619-1982	2바이트 조합형 완성형(한글 1,316자, 한자 1,692자)		
1987년	KSC 5601-1987	완성형(한글 2,350자, 한자 4,888자)		
1991년	KSC 5657-1991	완성형(한글 1,930자, 옛한글 1,673자, 한자 2,865자)		
1992년	KSC 5601 1992	2바이트 조합형을 복수 표준화		
1993년			국규 9566-93	제1수준의 한글 음절자 2420자, 한자는 불명
1995년	KSC 5700-1995	완성형 한글 11,172자, 조합형 자모 334자		
1998년			국규 9566-98	한글 2,679자 한자 4,653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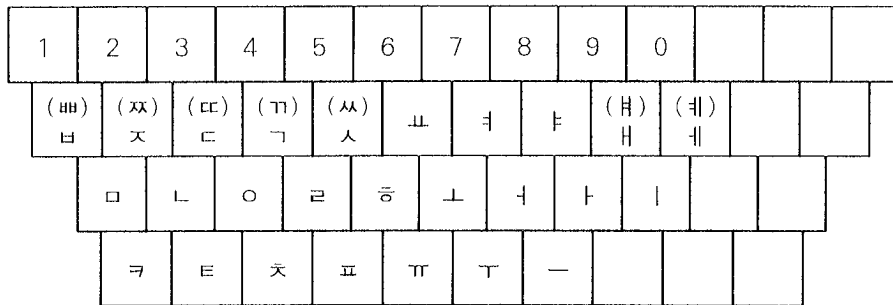
한편 북한은 이후에도 부호계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요구를 국제 사회에 제기하고 있다.³⁶⁾

36) 동국대 컴퓨터학과 변경용 교수는 전자신문 2000년 10월 20일자에 북한의 이후 표준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북한은 2000년 봄 베이징에서 열린 ISO 문자분과위원회(JTC1/SC2/WG2)에 5개 개정안을 제출, 이에 대한 투표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자로 ISO 문자분과위원회에 그 안을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 1) 문자 이름을 현재의 「Hangul」에서 「Korean Alphabet」로 바꿔야 한다.
- 2) 남북한이 서로 다른 자모 배열순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자모순서도 반영해 주어야 한다.
- 3) 8자의 자모를 추가해야 한다.

3.9.2 자판

현재 남한의 자판은 정보처리용 건반표준배열 (KS C 5715)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1982년 6월 제정된 것이다. 이 자판은 24자모 외에 꺾, 꺾을 수용해 26자모를 택하고 있으나 나머지 자모(겹자음과 복모음 꺾, 꺾)는 규정하지 않고 권장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다.³⁷⁾ 이는 최적성의 검토없이 사실상의 표준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후 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 남한의 자판 배열

북한의 자판은 ‘정보 기술용 조선 글자 요소의 건반 배열’(국규 9265-93)을 따르고 있으며, 1993년 4월 27일 제정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2> 북한이 1991년 3월 ISO에 제출한 안

한편, 북한은 1995년에 강영민안을 기반으로 한 확장안(26+5사소)을 북한의 대표안으로 발표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26개의 자모를 갖고 있는 배열이다.

4)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기호문자를 추가해야 한다.
 5)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자를 추가해야 한다.
 37) 시프트(shift) 키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1	2	3	4	5	6	7	8	9	0			
ㅂ	ㅃ	ㅄ	ㄹ	ㅎ	ㅋ	ㆁ	ㆁ	ㅈ	ㅊ			
ㅅ	ㅆ	ㅇ	ㄴ	ㅇ	ㄷ	ㅌ	ㅣ	ㅡ				
ㅋ	ㅌ	ㅍ	ㅊ	ㅍ	ㅑ	ㅓ						

〈그림 3〉 강영민안의 자판 배열

정희성(1994)은 남북한 한글입력 키보드의 생산성을 비교한 것인데, 매우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그는 (1) 평균 교대(오른손, 왼손)타이핑 수 (2) 단간의 평균이동 타이핑 수 (3) 단의 점유비율 (4) 손가락 간의 평균이동 타이핑 수와 평균 점유 비율 등의 4개 기준에 따라 실험을 진행한 결과, KS C 5715의 자판배열에 비해 북한의 ISD제출안의 규격이 약 20% 입력속도가 빠르다는 수치를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남한의 자판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을 실증하는 것으로, 북한의 안이 통일 자판 설계에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1996년의 자판 배치 공동안에서는 양측의 절충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38)

38) 1996년의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조 문제
 - 1) 2벌식을 기준으로 한다.
 - 2) 옛글자를 고려하되 현대 글자와는 분리하여 처리한다.
 - 3) 26개의 우리 글 자소를 배치하되 24개 홑글자와 2개의 겹글자로 한다.
 - 4) 5개의 쌍자음의 입력은 사용자 선택으로 하되 대응되는 단자음 위치에 배치한다. " 사용자 선택이라 함은 쌍자음 타건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동 생성 규칙이 성립하는 방안(보기를 들면 치환 타건 방법, 시프트 키 방법 등)을 말한다.
 - 5) 자소 배치는 원칙적으로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 모음으로 한다.
- 배치 문제
 - 1) 26개의 자소는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ㅂ	ㅃ	ㅄ	ㅅ	ㅆ	ㅇ	ㄴ	ㄷ	ㄹ	ㅁ	ㅂ	ㅃ	ㅄ
ㅅ	ㅆ	ㅇ	ㄴ	ㅇ	ㄷ	ㅌ	ㅣ	ㅡ	ㅁ	ㅂ	ㅃ	ㅄ
ㅋ	ㅌ	ㅍ	ㅊ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이 배치는 보다 충분한 평가 기준과 객관성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더 발전시킨다.
 2) 옛글자의 경우, 아래 아(ㅏ)는 아(ㅏ), 이런 이음(ㅓ)은 이음(ㅓ), 이런 리음(ㅑ)은 리음(ㅑ) 위에 배치하면 반시옷(ㅆ)은 쌍시옷(ㅆ)을 고려하여 비음(ㅑ) 위에 배치한다.

3.10 기타 부문

북한은 이외에도 다양한 언어처리 분야의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10.1 워드프로세서

1990년 9월 북한의 '평양 전자계산기 운용회사에서 컴퓨터에 의한 한글 문서 편집 및 인쇄 프로그램인 '창덕'을 개발하였다. 북한의 워드프로세서로는 이 이전에 '현필', '편집' 등이 있었으나 단순한 입출력 기능의 구현에 머물러 있었다. 이 시기의 창덕은 DOS를 운영체제로 하며, 자판은 두벌식이고, EGA카드에서 작동하였다. 창덕은 위지윅 방식은 아니며, 풀스크린 메뉴 전개방식의 팝업 메뉴를 사용하였다. 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면에서는 뒤떨어지는 방식인데, 단축키 지원이 미흡하고, 양식지정, 글꼴, 문단 모양 설정 등에 한계가 있다. 창덕은 이후 지속적인 개량을 거듭하였는데, 현재 6.0판까지 개발되었으며, 윈도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5.0판은 북한의 국가규격코드와 남한의 KS코드를 모두 지원하며, HTML문서의 작성과 읽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3.10.2 다국어 처리 프로그램

'단군'은 평양프로그램(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다국어 처리 프로그램으로서 해당 운영체제에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입력 및 출력할 수 있는데, 윈도용과 매킨토시용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3.10.3 전자출판체계와 글꼴

전자출판체계에 대한 연구는 평양프로그램(정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0년대에 이미 매킨토시를 이용한 탁상출판체계인 '다국어전자출판체계'를 개발하였고, 1992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전자계산기 전시회에 DTP프로그램인 '청류'와 '다국어문서편집기'를 출품하였다. '다국어문서편집기'는 조선어, 영어, 노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라틴어, 포르투갈어 등 여러나라 언어로 문서를 편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크기와 다양한 시체의 글자를 한 문서 안에 자유롭게 섞어 쓸 수 있다고 한다. 표 작성 기능, 글자 장식 기능, 위지윅(WYSIWIG) 기능도 있다.

조선컴퓨터센터의 매킨토시용 DTP프로그램인 'QXA93'과 'QXR-93'도

있다. 이들은 신문 편집 프로그램으로, A는 아라비아어, R은 러시아어를 비롯한 각종 언어로 편집이 가능하다.

북한은 1985년부터 인자용 24점 칭봉체와 터미널 현시용 16점 천리마 글꼴을 사용해 왔다. 조립형의 요소는 모두 579개로 10.734자를 형성시키고 반조립으로 324자, 완전글자로 14자를 생성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다. 점폰트 방식은 인쇄 방식에서는 적용이 어려워 윤곽선 글꼴 생성방법을 고찰하여 탁상 출판체계용 레이저 인자기, 윈도우 운영체제 등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약 300여 종에 이르는 컴퓨터용 서체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북한 언어공학의 과제

4.1 북한 언어공학의 성과와 전망

4.1.1 북한 언어공학의 성과

북한의 언어관은 언어를 사상과 혁명의 도구로 간주하는 도구관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북한이 일찍부터 언어의 실용적 이용을 위한 연구에 힘을 기울여 온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한 것이다.

북한은 주체의 기치 아래 과학기술의 각 분야에서 독자 기술 개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언어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순수 언어학 분야는 물론 각종 언어공학 분야에서 간과할 수 없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

북한이 언어공학의 성과에 걸고 있는 기대는 남다른 듯하다. 이미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언어공학 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는 1990년대 들어 일련의 저술과 사전,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 북한은 이런 추세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언어공학의 경제적 이용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의 언급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학부문 일군들과 학자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인 언어 사상들과 이론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언어과학을 현

39) 김문섭(2000)에서는 김정일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고 적고 있다.

「언어는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이론화, 체계화하는 데서 항구적인 수단으로 되며 인민대중에게 과학기술과 진보적인 사상문화를 보급하고 유류시각 그들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서 힘 있는 무기로 됩니다.」

대화하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리론실천직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언어학과 린접 과학들과의 경계과학분야들을 새로 개발하며 인민경제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응용언어학분야를 빨리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조선어문 1998-1호,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어문학연구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즉, 북한은 언어공학이 인민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기반적 언어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보기술 분야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의 추세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이들은 정보통신 사업을 경제회복을 위한 '단변도약'의 중심고리로 집중 강조하면서 정보기술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⁴⁰⁾.

북한의 언어공학이 현시점에서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의 응용언어학적 기초가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것이다.⁴¹⁾ 앞서 살펴보았지만,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언어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 일시적으로는 침체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꾸준한 실용적 지식의 축적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는 일부 분야에서는 남한의 언어공학 분야가 이루지 못한 많은 성과를 수확할 수 있었다. 정제된 말뭉치를 이용한 언어 통계의 추출, 국가 사진의 편찬, 그리고 음성인식기 개발 등은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북한의 응용언어학 중시의 연구 성향이 있다고 본다.

북한은 일찍부터 국가 주도의 전문 기관들을 배치하여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미 사회과학원 내에 응용언어학 연구실을 설치하는 등, 말빠르게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응용언어학 분야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언어이론과 실제 적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²⁾

북한의 언어공학은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공개적인 접근이 쉽지 않으므로 그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응용언어학적 기초가 충실하다는 것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음을 짐작

40) 통일부의 「북한동향」(546호)에서는 2001년 상반기 북한의 정보기술부문 개발 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산업 전 분야에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데, 언어공학적 성과들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

41) 김병선(2000)은 북한의 경우에는 기초 연구가 충실하고 자료의 검증이 확실하다는 것이 남북 교류에 위했던 남한 학자들의 대체적인 공통된 인식이라고 지적하였다.

42) 문영호(1990)에서는 응용언어학 연구의 중심을 '실천적 의의가 크고 투자가 적으면서도 연구성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부문'과 '자료토대 축적과 기초이론 개척에 의의가 있는 분야'에 두었다.

할 수 있다.

북한의 언어공학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언어공학이 가진 유연성에 있다. 언어공학은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인프라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북한의 현상황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또한, 언어공학적 결과물들은 비교적 개방적으로 국제 사회에 수출될 수 있으며, 상호 합작도 가능하다. 실제로 남북한의 협력에서도 소프트웨어, 특히 언어처리 분야의 교류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공학 분야의 특성은 북한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많은 역량을 투입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4.1.2 북한 언어공학의 한계

그러나, 북한의 언어공학은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정보통신 환경은 아직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육성 의지는 상당하나, 환경의 취약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언어공학에 관계된 기관과 인력은 상당한 정보 환경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는 하나, 일반인들의 정보 환경은 이에 비해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 언어공학적 주제의 연구가 이러한 환경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 환경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서구 이론의 수용 부족이다.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독자적인 연구 경향이 비록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것은 사실이나, 언어공학 분야는 많은 시행 착오를 겪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이므로 선도적 연구 국가의 경험을 수용한다면 더욱 빠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종래 일본과 러시아의 연구를 주로 참조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구미 국가의 연구 동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연구의 대상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의 언어공학자들이 합작 등을 통해 각국의 연구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증가한다면 최신 이론과 경험의 수용에 더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공학적 지식을 경제 부흥과 연계시키는 데에도 장애물은 존재하는데, 북한은 기술의 상품화에 대한 역량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프트웨어가 수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언어공학 프로그램은 아직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잘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추정된다.

북한의 언어공학이 남한의 그것과 괴리되어 발전해 오면서, 서로 다른 용어와 언어규정이 고착화되었다는 사실도 북한 언어공학이 당면한 문제이다.

한국어의 범위는 남한은 물론 북한, 그리고 해외 지역에서 쓰이는 한국어에 걸쳐 있으며, 언어공학적 응용기술도 이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북한의 각종 언어규정과 기술표준이 다르므로, 남북한 언어기술의 호환에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4.2 남북한 언어공학 교류 현황과 과제

남북한 언어공학은 그동안 교류가 없던 상태에서도 각자 연구역량과 성과를 축적해 왔다. 남한이 최신의 언어공학 이론을 제빨리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상업화해 왔다면, 북한은 독자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공학적 기초를 다져왔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국제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언어공학이 갖고 있는 이러한 측면들은 교류 단절로 인한, 피하기 힘든 상황에 뿌리를 둔 것이기는 하지만, 공교롭게도 바로 이 측면 때문에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의 언어공학 역량의 성공적인 접목은, 비단 학문적·경제적 측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위상 세고와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의 통합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 절에서는 남북한 언어공학의 교류 현황과 당면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4.2.1 연구 교류

북한어에 대한 연구는 순수언어학적 연구 외에도 북한어 사전, 북한어 분석기 등의 실용분야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연구 교류는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남북 관계의 긴장으로 인해 80년대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87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TC46총회에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의 통일 필요성에 대해 남북한이 논의한 것이 언어공학 분야에서의 최초의 남북 접촉이었다.

1994년에 중국 연길시에서 열린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는 이런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 이 대회는 남북 민간 차원의 교류 역사상 드물게도 3년간 연속해서 열렸으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1996년에는 한글 자모순, 한글 코드, 자판과 정보처리 용어에서 남북한 단일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단일안은 정부 차원의 안이 아니었으므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큰 진전이었으며, 이후 1999년에 출판된 「국제 표준 정보기술 용어사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2001년 2월에 열린 <제5차 코리안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ICCKL 2001)>에서도 언어·정보입출력·정보기술용어 부문에서 한민족 공동안을 채택했다. 이 대회에서는 컴퓨터 자판의 실험적 연구를 제외하고, 각종 정보기술적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한다.⁴³⁾ 이 대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표준규격과 KS 규격에 반영해 국어정보 분야 남북한 표준의 통일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데 있다.

또한,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구교류는 아니지만, 21세기 세종계획의 북한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연변 지역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2000년 4월에는 한국과학기술원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의 연변연구소가 개설되었다.

4.2.2 사업 교류

이미 1990년대부터 대북 교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언어공학 분야의 교류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더불어 언어공학 분야의 대북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2000년에 삼성전자가 북한 조선컴퓨터센터와 제휴를 맺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북한의 연구인력을 참여시키고 있으며⁴⁴⁾, 일부 기업은 일본계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일본시장에서 북한의 음성 및 문자인식관련 원천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려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⁴⁵⁾ 한일번역기는 이미 남한에서도 성공적으로 상품화되어 있는데, 일부

43) 남북한과 중국의 정보기술 학계·관계 100여명의 전문가들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연저 개원호텔 국제회의실에서 「제5차 코리안 컴퓨터처리 국제학술회의(ICCKL 2001)」를 열었다. 각국 참가자들은 컴퓨터 자판과 관련, 지난 1996년에 합의한 2벌식 자판 공동안에서 옛글자 4자를 포함하는 자판과 제외한 자판을 남북한, 중국 등에서 사용자 실험과 컴퓨터 모의실험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남·북·중의 글꼴 전시회를 공동 개최키로 했다. 정보기술 용어 부문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기술분야의 표준용어인 ISO2382에 멀티미디어·인공지능(34권까지) 등의 분야를 포함시켜 올 연말까지 우리말 용어와 해설을 담은 「국제표준정보기술용어사전」 2권을 출간키로 했다. 또 ISO10646(한글 4바이트 유니코드)에서 「한글」이라는 명칭을 「정음」으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국제 표준안에 수록할 수 있도록 각국 관련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외에 각국 참가자들은 음성 발음치(CORPUS) 공동개발, 인터넷 도배인의 한글이름 공동개발·사용, 언어·수학·정보능력 검정시험의 공동출제·시행, 중국 연변 내 정음공학연구센터 설립 등에 합의했다. (전자신문 2001.2.26)

44) 삼성은 지난 3월22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와 함께 '삼성-조선컴퓨터 소프트웨어 공동협력 개발센터'의 문을 열었다. 개발센터는 올해 안으로 남북단일 워드프로세서 개발을 목표로 그분서요약 스텐덱스 응용 소부원단합용 개인 그후대용용 중국어 문자인식 소프트웨어 등 군사·산업용이 아닌 민간부문에 활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착수한다. 삼성은 이 개발센터에 당분간 인력은 파견하지 않고 비용만 73만달러(8억1천만원)를 부담하고, 전문 프로그래머를 북한측에서 10명을 파견한다. (한겨레 21 2000년 4월 6일자)

업체는 북한의 기술을 접목시켜 다국어 번역기로 발전시키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⁴⁶⁾

최근에는 북한과 공동 개발 계약도 추진되고 있는데, 엘엔아이소프트사와 평양정보센터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한국어-중국어 번역 소프트웨어 공동개발⁴⁷⁾에 합의하였고, 엔트랙사와 평양에 고려기술개발제작소 등 IT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엔트랙 및 하나비즈사와 중국 단동에 ‘하나 프로그램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4.2.3 남북한 언어공학의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

남북한 언어공학은 이제 실제적 교류의 시작 단계에 와 있다. 남북한이 서

45) 주)넥스텔은 일본 조총련계 기업을 통해 북한에 간접 진출한 (주)아이엠아이(IMRI)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일본시장에서 북한의 음성 및 문자인식관련 원천기술을 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아시아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고 9월 23일 밝혔다. 넥스텔은 7월 IMRI가 조총련계 기업과 합작으로 설립한 (주)유니코텍과 사업협력을 통해 북한의 소프트웨어개발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음성 및 문자인식기술과 국내의 음성인식 및 협성기술, 자연어처리기술 등을 접목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뉴스레터 2000년 10월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6) 아이엠아이(www.imri.co.kr 대표 유원영)는 북한과 공동으로 개발한 한일 번역기와 다국어 번역기로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일본 현지법인인 유니코텍을 통해 시판하는데 이 회사는 아이엠아이와 일본의 조총련계 소프트웨어 회사인 CGS가 함께 설립한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번에 일본에서 출시한 한일번역기와 다국어 번역기는 유니코텍에서 북한의 조선컴퓨터, 김책공대 등에 개발을 의뢰해 제작한 소프트웨어다. 유원영 회장은 “북한에서 이 소프트웨어의 80%를 개발했고 유니코텍에서 일본 설비에 맞게 완성했다”며 “이번 소프트웨어 발매는 남북 디지털 문화교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번역기인 ‘스라스라한글번역 2001/KJ’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워드문서의 일본어를 비롯한 한자 문 두르며 한글로 번역되는 프로그램이다. 일본어 원도 상에서 한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북한어도 번역된다.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등 5개 국어를 인식하는 다국어 번역기 ‘스라스라 OCR 2001’은 스캐너로 읽은 책이나 종이 문서를 디지털 문서로 변환해 사용자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 준다. 이는 다국어가 혼재된 문서도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99.8%의 문자인식률을 자랑한다. (매일경제 2001.2.16)

47) 영한·한영 번역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엘엔아이소프트(대표 임종남)는 10일 중국 단동에서 최주식 평양정보센터(PIC) 총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PIC,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한중·중한 번역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1년으로 계획된 이번 개발은 중국 단동에서 진행되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과 판매권은 엘엔아이와 PIC가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엘엔아이와 PIC측은 개발비를 각각 50%와 인력을 공동으로 부담하며, 엘엔아이소프트가 장비, 번역 프로그램 개발 엔진을, 북한측이 음성인식 및 번역 DB 개발 기술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엘엔아이 임종남 사장은 “소프트웨어 개발 후에는 국내는 물론 중국시장에 판매하는 한편 엘엔아이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영한·한영 번역기술을 응용해 한·중·영 3개 국어가 동시 번역되는 소프트웨어와 통역기기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도 남한 기업과의 공동 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개발에 북한측에서도 최단기간 내에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타임스 2001. 5.14)

로 보완적 관계를 맺으며 언어공학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1) 다양한 교류 통로의 확보

이는 홍윤표(1999), 김병선(2000) 등의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남북이 민간 차원의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상호 학자 파견도 제안되었으며, 중국 연변지역 등 제3국에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양측의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 경제적 목적을 갖는 각종 교류 시도가 줄을 잇고 있지만, 학술적 교류의 정례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공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축적된 학문적 역량을 나눌 수 있는 연구자들의 교류에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2) 언어 규범의 통일

민간 단체의 교류만으로는 언어공학의 많은 선결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996년에 합의된 한글 자모순, 한글 코드, 자판과 정보처리 용어에서의 남북한 단일안도 교류 주체가 민간 단체이었으므로, 구체적인 규정의 정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이 동일한 언어 기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의 언어 규범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언어 정책과 연구를 담당하는 공식 기관들⁴⁸⁾의 교류가 필수적이다.

3) 정보 표준의 통일

남북한은 언어공학의 기초가 되는 코드와 자판 등의 기술 표준이 서로 다르다. 정보 표준의 차이는 이들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남북한 국가 기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표준 통일의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48. 남한의 연구 기관은 문화부 국립국어연구원이고, 행정 기관은 교육부 국어심의위원회이다. 북한의 연구 기관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이고, 행정 기관은 내각 직속 국어사정 위원회이다(최호철 1999).

5. 결론

지금까지 북한의 언어공학의 실상과 성과를 각종 문헌과 기타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그 발전 가능성과 과제를 고찰하였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언어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 일시적으로는 침체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꾸준한 실용적 지식의 축적을 통해 1990년대 초반부터는 많은 성과를 수확할 수 있었다. 정제된 발음치를 이용한 언어 통계의 추출, 국가 사진의 편찬, 그리고 음성인식기 개발 등은 북한이 남한보다 앞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북한의 응용언어학 중시 정책이 있는데, 북한은 일찍부터 국가 주도의 전문 기관들을 배치하여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미 사회과학원 내에 응용언어학 연구실을 설치하는 등, 발빠르게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언어공학 분야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언어이론과 실제 적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언어공학 연구는 언어공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점차 그 내용이 일반적인 이론적 고찰에서 구체적인 실용적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정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한 언어공학은 그 동안 교류가 없던 상태에서도 각자 연구역량과 성과를 축적해 왔다. 남한이 최신의 언어공학 이론을 제빨리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상업화해 왔다면, 북한은 독자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공학적 기초를 다져왔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국제적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 언어공학의 성과와 역량이 성공적인 집목된다면, 학문적·경제적 측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위상 제고와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의 통합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류 통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을 물론, 남북한의 언어 정책 담당 기관이 정례적으로 접촉하여 언어 규범과 정보 표준의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1) 남한의 문헌

- 강범모, "언어 데이터베이스와 언어 연구." 정광 외, 「한국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응용을 위한 기초연구」 민음사, 1995.
- 강승식, "미래의 컴퓨터와 한글공학." 「여성정보인 협회지」 96-7(고창수 편저, 1999. 「한국어와 인공지능」에 재수록), 1996.
- 고창수, "한국어공학의 구상."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서울:박이정, 1997.
- 구명완, "한국어 음성인식 응용서비스 및 연구 과제." 「한국어학」 13, 2001.
- 국립국어연구원, 「북한의 국어사전 분석(Ⅰ)」, 1992.
- 김민수 편,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서울: 녹진, 1991.
- 김민수 편저,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서울: 태학사, 1997.
- 김병선, "북한의 언어정보처리 연구현황."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2호, 2000.
- 김영택 외, 「자연 언어 처리」 서울: 교학사, 1994.
- 문화관광부, 「21세기 세종계획-국어기초자료구축」, 1998.
- 문화관광부, 「21세기 세종계획-국어기초자료구축」, 1999.
- 문화관광부, 「21세기 세종계획-국어기초자료구축」, 2000.
- 문화체육부, 「21세기 세종계획-국어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 1997.
- 서상규·한영균, 「국어정보학 입문」 서울: 태학사, 1999.
- 이용주, "음성데이터베이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음향학회 음성통신 및 신호처리워크샵 논문집」, 1996.
- 정보·전자연구회 편, 「자연언어처리입문」 서울: 도서출판 대광서림, 1993.
- 정희성, "남북한 한글입력 키보드의 생산성 비교." 1994 우리말 정보화 가을철 학술대회 논문집, 1994.
- 최신임, 「북한의 산업기술: 정보통신산업」 산업연구원, 1999.
- 최호철,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한 과제."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창간호, 1999.
- 홍윤표, "남북한 국어정보화 실현방법의 통합을 위한 과제." 「국제고려학회 논문집」 창간호, 1999.

- 황화상, “북한의 자연언어 기계처리 연구현황.” 「김정일시대의 북한언어」, 서울: 태학사, 1997.
- 한국과학기술원 전문용어인어공학연구센터, 「대용량 음성/언어/영상 DB 구축 및 표준화 사업 발표회 자료집」, 2000.
- 한국전산원, 「북한의 정보화 동향 분석」, 1994.

2) 북한의 문헌

- 강영민, 건반에서 조선글 자소매렬, '95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95.
- 곽영철·엄춘희, 우리말수자음성의 불특정인식에 대하여. 「전자공학」, 1992-1, 1992.
- 권성환·강상문, 조선말 연속음성 입력 및 합성에서의 말-글 글-말 변환을 위한 변환표들에 대하여. 「전자공학」, 2001-2, 2001.
- 권오일, 걸림관계에 의한 조선어문장해석의 한가지 방법. 「전자공학」, 1993-6, 1993.
- 권종성, 조선어 형태문적자동분석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조선어문」, 1992-4, 1992.
- 권종성·리승길, 조선어토의 자동분석에 대한 연구. 「조선어문」, 1993-3, 1993.
- 권종성, 「조선어정보처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 길성혜, 단어의 통계적분석에 기초한 문자렬의 유사도평가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1999-4, 1999.
- 김광현, 조선어문장구조에 대한 술어중심의 해석방법. 「조선어문」, 1996-4, 1996.
- 김길연, 정보검색언어와 다의성문제. 「조선어문」, 1992-1, 1992.
- 김분섭, 통계적분석을 통하여 본 조선어기술분문문장의 구조적 특성. 「조선어문」, 2000-3, 2000.
- 김성근, 조선어 모음의 음성 정보처리에서의 모형화 문제, '95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95.
- 김성준, 영조기계번역에서 영어한징어설정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46권 2호, 2000.
- 김성호·정영길, 전자계산기에 의한 조선어형태부해석에서 언어와 언어합수. 「전자공학」, 1992-6, 1992.

- 김영애·강은철, 컴퓨터에 의한 사회과학표준실마리어 사전편찬의 한가지 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43권 7호, 1997.
- 김정국·김경호, 우리글 한 바이트 부호계의 리용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 '95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1995.
- 김정옥, 본문의 인공적인 합성을 위한 언어학적기초와 관련되는 몇가지 문제 「조선어문」 1999-2, 1999.
- 김철호, 조선어본문에서의 지시어에 대한 고찰. 「조선어문」 2000-2, 2000.
- 김학실, 로-조 기계번역에서 번역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의 합리적구성방법. 「전자공학」 1993-4, 1993.
- 김학실·리금화, 로-조 기계번역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반영한 결합규칙 작성과 실현알고리즘. 「김일성종합대학보(자연과학)」 46권 9호, 2000.
- 리경석, 우리 말 소리마디의 이음에서 단일한 소리마디로 토막화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의 실험연구. 「전자공학」 1994-2, 1994.
- 리미봉, 기계번역에서 단어의 다의성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연구. 「조선어문」 1991-3호, 1991.
- 리미봉, 습관적 언어 행위를 구현하는 기계 사전 연구. 「언어학론문집」 1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4.
- 리승길, 조선어문장의 자동분석을 위한 실마리구조해석방법. 「조선어문」 1995-3, 1995.
- 리승길, 코퍼스란 무엇인가? 「조선어문」 1999-2, 1999.
- 리정용, 빈도수사전 작성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1. 「조선어문」 1989-4, 1989.
- 리정용, 빈도수사전 작성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2. 「조선어문」 1990-1, 1990.
- 리태성, 조선어단어구조문법에 의한 질문문장의 생성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44권 11호, 1998.
- 리혁철, 조선어문자의 출현빈도수특성을 고려한 한가지 자음인식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43권 12호, 1997.
- 리현순·조성영, 문서오유자동교정의 한가지 방법에 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44권 12호, 1998.

- 림영신·김영남, 실마리어 자동색인체계에서 조선어문장의 형태해석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전자공학」 1994-4, 1994.
- 문영호·권종성·최병수·박애순, 「응용언어학(1)」, 사회과학출판사, 1993.
- 문영호, 「개산기언어학개론」, 사회과학출판사, 1990.
- 문영호, 현대기계번역체계의 언어학적 특성 (1). 「조선어문」 1990-1호, 1990b.
- 문영호, 현대기계번역체계의 언어학적 특성 (2). 「조선어문」 1991-4호, 1991.
- 박수영, 공화국과 함께 우리 언어학이 걸어온 자랑찬 50년. 「조선어문」 1998-3, 1998.
- 박애순, 우리 말 단어의 음절길이에 대한 통계적고찰. 「조선어문」 1993-4, 1993.
- 박재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99.
- 박재용, 「언어학개론」,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 박재용, 「일반언어학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 배광희, 기계번역에서 제기되는 입출구 언어의 구조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조선어문」 1990-3, 1990.
- 배광희, 기계번역에서의 의미모형화리론에 대하여. 「조선어문」 1991-2, 1991.
- 변철우, 외국어의 관용구를 우리 말답게 번역하려면. 「조선어문」 2000-1, 2000.
- 서정식·려용길, 조선어본문음성합성체계에서 강조음절처리의 한가지 방법에 대하여. 「전자공학」 1994-5, 1994.
- 서정식·정경진, 조선발련속수자음성인식에 관한 연구. 「전자공학」 1993-1, 1993.
- 손순이, 문답체계에 의한 본문자동출이기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조선어문」 1998-4, 1998.
- 심성민, 조선어본문-음성합성에서 제기되는 우리 글-우리 말변환의 합리적인 방법에 관한 연구. 「전자공학」 1993-2, 1993.
- 안성득, 언어적단위들의 몇가지 정보모형에 대하여. 「조선어문」 1992-2, 1992.

- 안성득, 통계언어학연구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어문학)」 46권 1호, 2000.
- 양하석, 입말의 분석과 합성에서 나서는 정보언어학적 문제. 「조선어문」 1996-3, 1996.
- 전병호, 조선어문장구조해석에서 애매한 문장을 줄이기 위한 몇가지 방법. 「전자공학」 1994-4, 1994.
- 장성숙, 영어성구적문장의 번역에서 우리 말의 민족적특성을 살리기 위한 문제. 「조선어문」 2000-2, 2000.
- 주문영·류순렬, 구조정합법에 의한 우리 글 문자인식에서 전처리에 대한 연구. 「전자공학」 1994-6, 1994.
- 최병수, 기계번역에서 예측에 의한 문장구조의 정확한 분석에 대하여. 「조선어문」 1993-1, 1993.
- 하정복·리준식, 잡음이 있는 조선어인쇄체문자의 대분류방법.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43권 2호, 1997.
- 함윤석·리석수, 조-영 기계번역을 위한 술어부 변환에서 시-태적 의미의 애매성해소에 대한 연구. 「전자공학」 2001-2, 2001.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조 수 선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연구원)

목 차

【요약문】	181
1. 머리말	183
2. 이용현황 및 문제점	184
3. 법적보호의 범위	198
4. 국제법의 적용가능성 검토	205
5. 협력방안	213
6. 맺음말	224
※ 참고문헌	226

【 요약문 】

국민의 정부에 들어 대북정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보적으로 추진되어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를 올렸고 특히 남북한 문화교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북한의 작가가 직접 남한의 출판사를 위해 책을 쓰고, 남한과 북한의 음악가들이 공동으로 곡을 만들고 연주하며 우리의 대중문화가 평양에서 공연되는 등 마치 붓물 터지듯 많은 문화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남북한 문화교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북측과의 저작권 협력에 관한 근본적인 틀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 차원 높은 문화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저작권 협력의 실질적 이행은 필연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보다 적극적인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전제아래 북측과의 저작권 협력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남북한 저작권 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에서 북한 저작물 유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남한측과 북한측 각각에서의 저작권 보호수준에 대한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 남북한 간 저작권 협력을 위한 효율적인 저작권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법상 쟁점들을 적용한 후 남북기본합의서상의 저작권 사항을 기초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 개정된 국내 저작권에 의해 마련된 큰 틀을 바꾸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정 및 관리, 대행 등의 업무운영체제를 북측과의 협의과정에 적용함으로써 국내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한간 저작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저작권공동협약기구를 설치하고 저작권의 행정적 보호와 중개업무를 분리하되 반관반민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저작권 중개업무 역시 남북한간의 저작권 개념이나 운영체제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분야의 단체가 각각 위임받는 형식보다는 초기에는 남북양측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세부적 합의사항으로는 저작권 보호기간, 계약의 주체와 종류, 공동저작권 등에 대한 개념적 정리와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교환과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1.1 연구의 필요성

‘국민의 정부’에 들어 대북정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보적으로 추진되어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를 올렸고 특히 남북한 문화교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북한의 작가가 직접 남한의 출판사를 위해 책을 쓰고, 남한과 북한의 음악가들이 공동으로 곡을 만들고 연주하며 우리의 대중문화가 평양에서 공연되는 등 마치 붓물 터지듯 많은 문화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남북문화교류의 활성화에 힘입어 북한에서 제작된 출판, 영상, 음반물 등의 반입이 숫적으로나 종류의 다양성 면으로나 활발해지고 있고 이러한 사업분야에 관여하는 국내의 업자들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 반입되는 북한의 저작물을 둘러싼 국내업자간의 중복 계약이나 무단 복제 등을 포함하는 법적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고 북한측 역시 그들의 신문이나 방송 또는 대리인들을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남북한 문화교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북측과의 저작권 협력에 관한 근본적인 틀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한 차원 높은 문화교류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저작권 협력의 실질적 이행은 필연적 과제가 되고 있다.

1.2 연구목적 및 문제

국내에서 북한 저작물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전에도 북한의 저작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주로 남·월북 작가들과 음악가들이 남기고 간 문학작품과 가곡 가요들으로써 6·25이전의 것들이었다. 북한의 저작권 문제는 1988년 남·월북 작가의 해금조치 발표 이후 그 동안 비공식적 또는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온 남·월북 작가들의 문학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출판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자 그들 작품에 대한 보상문제가 거론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북한과의 저작권 협력 문제는 크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부터 작게는 저작권료가 지불되는 남북간에 나누어져 있는 유족간의 갈등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개인간의 문제로 취급되어 주로 법정에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제는 개인적 차

원에서의 계약당사자 간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책적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보다 적극적인 남북한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전제아래 우선 북한과의 저작권 협력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남북한 저작권 협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대두되고 있는 유형별 북한 저작권 보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남북한간 저작자의 법적 지위 및 보호범위의 차이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3. 남북한 저작권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틀의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하는가?
4.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2. 이용 현황 및 문제점

남북한간 출판 영상 음반물을 포함하는 문화교류분야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교류'가 아닌 우리측의 일방적인 반입이나 이용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가요음반물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남한으로부터 반입되는 저작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측이 북한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는 단계는 분명 아니다. 기본적으로 북한형법상의 저작물 관련 규정이나 올 4월 채택된 저작권법이 남한 저작물에 적용된 예는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설사 북한에서 남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라도 남한 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사용허락을 받거나 우리측이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북한이 우리에게 저작권료 보상을 요구한 것은 상호주의적인 원칙을 의도하고 있다기보다는 일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중국¹⁾처럼 경제분야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남측의 저작물--특히 기술관련 서적--이 북한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면 우리측 저작권 보호의 문제도 거론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다음은 그 동안 국내에 반입된 북한 저작물의 몇 가지 사례들이다.

1) 중국은 1991년 단일법으로 저작권법을 시행하고 있고 1992년 세계저작권 협약과 베른 협약에 동시에 가입하였으며 이들 협약에 가입하기 전에 양자적 관계를 통해 비국지 저작물을 잠정적으로 보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표 1> 북한영상물 및 도서 반입 현황

신청업체	계약상대자	신청내용			처리일	처리결과(조건) *활용내역
		구분	종류	대상물-단가 등		
여강출판사	북한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독점적 복제 출판권	도서	『리조실록』	1992년 계약 1993년 출판	
누리미디어	고려민족 문화연구원 (북한 사회과학원의 위탁)	저작권 계약	도서	『고려사』	1998	CD롬 버전으로 출시
우인방 커뮤니케이션 (대표:우창봉) -키미컬렉션 (위탁자)	조선아세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반입	영화 (35mm)	『일격정』 (5부작) -200,000\$ (약2억4천만원)	'98. 10.14	반입승인 (TV용)
		"	영화 (35mm)	『홍길동』 -50,000\$ (약6천만원)	"	"
(주)IMS (대표:양경숙) -독원종합산업 위탁자)		"	기타 영상물	금강산 기록영화	'98. 10.20	
SN21 엔터프라이즈 (대표:조현길)	조선영화 수출입사 (일본 서해무역 중개)	반입	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98.11	SBS 방영
				『불가사리』	"	-
				『온달전』	"	MBC 방영
				『평양교예단 공연실황』	"	MBC 방영
강향신문사 한민족문화 네트워크 연구소		협력사업 반입신고	도서 등	북한 문화재 자료 9종 10권 -165\$ (약1십9만8천원)	'98. 11.7	

북한영상물 및 도서 반입 현황

신청업체	계약상대자	신청내용			처리일	처리결과(조건) *활용내역
		구분	종류	대상물-단가등		
(주)IMS (대표:양경숙)	조선영화 수출입사	반입	영화 (35mm)	『도라지꽃』 -17,000\$ (약2천4십만원)	'98. 12.10	반입승인 (시사회용) 국회의원회관상영 ('99.12.11)
		"	"	『보십복』 -17,000\$	'98. 12.16	반입승인 (TV용)
		"	"	『돌아오지 않는 밧사』 -17,000\$	"	반입불허
		"	"	『꽃파는 처녀』 -17,000\$	"	"
(주)프레스 (대표:정계열)	조선북관 비대오회사	반입	만화 영화	『소년장수』 (1-25편) -7,000\$ (약8백4십만원)	'99. 1.16	반입승인 (TV용)
		"	"	『평리한 너구리』 (1-23편) -3,000\$ (약3백6십만원)	'99. 1.16	"
(주)IMS	조선영화 수출입사	반입	기타 영상물	『신비로운 고려 의학의세계』(1,2) -20,000\$ (약2천4백만원)	'99. 2.26	반입승인 (TV용)
PD연합회 (회장:정길화)	조선영화 수출입사	반입	영화	『해운동의 두 가정』 -15,000\$ (약1천8백만원)	'99. 3.18	승인 (시사회용)
		"	"	『나의 어머니』 -15,000\$	"	"
		"	"	『민 훗날의 나의 모습』 -15,000\$	"	"
		"	"	『가족 농구 선수단』 -15,000\$	"	"
		"	"	『노래여 나와 함께』 -15,000\$	"	"
		"	"	『달래와 범다리』 -15,000\$	"	"
		"	"	『달래와 범다리』 -15,000\$	"	*북한영화 시사·토론회 상영(4.20)

북한영상물 및 도서 반입 현황

신청업체	계약상대자	신청내용			처리일	처리결과
		구분	종류	대상물-단가등		
푸른숲출판사 (대표:김혜경)		내용검토	도서	『내고향 개성 이야기』 (가제)의 필사본 원고	'99. 4.28	문제부분 삭제수정 조건 출판 가능
(주)IMRI (대표:유완옥)		"	영상 가요	북한가요 등 49곡	'98. 11.7	반입 및 제작·판매불허
(주)레니어 (대표:강진구)		반입	기타 영상물	『고려약생산기지·석암제약공장』 -무상	'99. 6.9	반입승인 (광고제작용)
월간 『말』 (신준영 기자)		내용검토	도서	『주몽』 『위암의 림상』 『평양건설전사』 -무상	'99. 6.25	정식 판권계약을 조건으로 출판가능
누리미디어	고려민족문화 연구원 (북한사회 과학원 측의 위임)	정식 출판권 계약	도서	『발해사』	'99.	CD롬 버전으로 출시
삼성당	조선출판물 수출입사	출판권 양도 및 공동출판 합의서 교환	도서	『조선의 요리전집』 (전4권) 『조선의 민족전통』 (전8권)	2000. 1 계약 사실 공표	

* 방송진흥원 연구보고 99-08 『남북 영상교류 및 제작협력 활성화 방안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 밖에 외부자료를 포함하여 재작성 한 것이다.

2.1 출판물

출판물은 북한 저작물의 반입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전에도 남·월북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시중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90년대 들어와서 북한과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남한 출판사에 의해 인쇄된 출판물들을 제외한다면 과거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출판물은 일종의 무단복제의 형태로 50여 작가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300여 종류의 책으로 출간되었다.²⁾ 그 중 작가의 가족이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작품의 경우 그 가족들에게 저작권료의 형태로 이용료가 지불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국내에 소개된 북한도서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대략 500종이 되고 8천원 정도로 책의 가격을 산정하고 연간 3천부씩 판매된다고 가정할 때 북측에 지불해야 할 저작료는 최대 12억원 규모를 형성하게 된다.

출판물의 공식반입은 남북교역(주)이 일본 조총련계 서점 구월서방을 통해 리조실북, 조선유적유물도감, 김일성전집, 김정일전집 등을 포함 다양한 북한의 출판물을 수입해 들여오고 있으나 이는 완제품에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단순한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문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남북교역(주)측은 국내관계법에 따라 특수지역 출판물 취급인가를 받은 곳은 남북교역과 우일문화사 뿐이므로 북한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북한의 출판물을 인쇄하고자 하는 남한측의 출판사의 계약은 국내법에 저촉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개별 출판사들의 북한과의 직접적인 저작권 계약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1.1 저작권자의 사망 또는 생사확인 불가능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남·월북 작가들의 작품은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박태원의 갑오농민전쟁(서울 형사지법 89고단 4609), 이기영의 두만강(서울 민사지법 89카 13692) 등의 사진 재판 결과 법원은 북한 작가의 작품이라도 남한의 유족에게 저작권이 승계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할 수 없는 현행법 체제상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범영토의 일부로써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2) 남·월북 작가들의 작품종류와 출판사명은 다음의 문헌에 상세한 목록으로 소개되어 있다. 김삼호, 북한저작물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0

한편 생사불명으로 알려진 저작자의 권리승계는 남한에 가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렵다. 저작권은 우선적으로 저작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망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남한에 가족이 없는 경우와 사망이 확인되고 북한에 가족이 생존해 있는 경우 저작권을 보호할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2.1.2 무단복제

앞서 말했듯이 북한서적의 경우 최근의 몇몇 출판사들 위주로 진행된 정식계약을 제외하고는 남·월북 작가들의 문예물뿐만 아니라 최근의 북한측의 저작물까지 대부분이 무단복제 되어 유통되고 있다. 특히 여행 또는 민속문화 관련 서적은 표지와 제목, 저자 등을 바꾸어 나치 우리측에서 제작한 듯이 보이게 하고 있다. 그 내용은 북한의 저작물 내용을 그대로 베껴 놓은 것도 있으나 북측의 원저자의 이의제기가 없음으로 인하여 저작권 보호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³⁾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고 국내 출판사에 의해 인쇄된 저작물의 경우도 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무단복제판이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손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북한측에 저작료를 지불한 여강출판사의 '리조실록'의 경우 출판단계에 이르러 타출판사에 의한 무단복제물이 배포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여강출판사의 판권을 인정하고 무단복제판을 불법으로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여강출판사가 정식 판권 계약을 맺고 출판한 '동의보감'의 경우에도 타출판사의 무단복제판이 여전히 시중에 배포되는 등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저작의 경우 또한 무조건 무단복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2.1.3 저작권자의 애매보호성: 역사번역

북한과의 정식계약을 맺고 국내판권을 인수한 뒤 1994년에 여강출판사에 의해 출판된 한글번역판 '동의보감'이 표절을 당해 피해를 보았다는 최근의 사례는 역사물 출판에 있어 원저작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기가 애매보호한 경우로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여강출판사의 경우는 북한판 동의보감의 저작권자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로부터 15년 동안 한국에서의 판권을 넘

3) 최근 누리미디어가 CD롬 버전으로 제작한 고려사의 경우도 이미 4~5종이 해적 출판되어 학계에 보급되어 있는 상태였고 북한 과학백과 종합출판사가 92년 출판한 금강산 일화집을 도서출판 한국문화사가 표지만 바꾸어 그대로 그 내용은 북측출판한 예도 있음

겨받았으나 범인문화사 측이 이 책을 인용해 '내역동의보감'을 출판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반면 범인문화사 측은 국내 한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번역위원들이 동의보감 원문과 중국 서적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996년 여강출판사가 펴낸 이조실록 번역본을 무단 복제해 판매했던 출판사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동의보감의 경우 원저작의 번역을 각각 따로한 결과 발생한 문제로서 여강출판사가 북한번역관 동의보감 뿐만 아니라 동의보감 원문자체에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2.1.4 비의도적인 무단인용: 직접접촉의 불가능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인쇄되는 책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작권료를 못내고 있는 경우도 많다.⁴⁾

공동출판의 형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국내의 책에 북한의 저작자가 부분적으로 책의 내용에 기여한 경우 용당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북한 과학원 고진연구실의 이상호 교수가 편역한 내용에 남측의 사진작가 강운구씨의 작품을 넣어 출간한 '사진으로 읽는 삼국유사'의 경우 북측의 편역자에게 참여한 부분만큼 인세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접촉이 불가능한 관계로 본의 아니게 무단 도용을 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북한문학이 우리의 문학지에 실리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학계간지 '실천문학'은 배호 북한의 단편소설을 게재하고 있으며 시전문지 '시안'도 북한의 근작 시를 실고 있으나 원저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분적인 인용을 하는 경우라도 북한의 판권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하다. 2000에 서울대 출판부는 북한서적 '조선유족유물도감' 내용의 일부를 우리학술 중서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에 전재하면서 중국 연변대학측의 중개로 정식 판권을 사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연변대 고직연구소가 북한의 저작권 기구로 알려진 조선출판물수출입사와 출판계약한 것을 서울대 출판부가 판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출간되었다.

4) 이산가족방문 시 북측의 참석자의 한 사람이었던 북한 국어학자에게 그가 50년전에 서울에서 해석을 한 농가원령가를 펴낸 남한측 출판사의 사장이 인세를 전달하여 화했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2.1.5 저작권료의 지불

누리미디어가 CD롬으로 출시한 '고려사', '발해사' 등은 북한사회과학원연구소 측의 위임을 받고 중국 심양시 고려민족문화연구원과 정식 계약권을 체결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고려 문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번역을 북한 사회과학원에 의뢰해 CD롬으로 동국이상국집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인 한문서적의 한글 번역은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의 한글번역판을 계약하여 우리에게 맞게 몇가지 단어만을 수정한 뒤 출판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⁵⁾

북한의 조선 수출입사와 정식계약을 맺고 출판한 책으로는 1999의 대신출판사의 북한의 민속전통편찬위원회가 엮은 민속공예 관련 책들⁶⁾과 삼성당의 북한 요리관련 책들이 그러하다. 2000년 초 삼성당은 북경에서 북한문화성 산하 조선 출판물 수출입사와 북한 저작물의 출판권 양도 및 공동출판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는데 이는 북한 당국과의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계약에 해당될 수 있다.

문예지에 대한 출판교류 역시 활발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국내의 대훈서적은 북한과의 정식계약을 통해 북한의 대표적인 문예 월간지인 '조선문학'을 1947년 창간호 이래 최근호까지 거의 전권을 수입하여 올 5월 서울 국제도서전에 소개한 바 있다. 대훈서적은 '조선문학'을 발행하는 평양의 문화예술종합출판사의 위임을 받은 중국 연변 문학월간사와 지난해 7월 저작권 계약을 맺고 중국내에서 통합본을 발간하기로 하였으나 제작여건이 양 좋은데다가 운반의 어려움이 예상돼 국내에서 제작했다. 그러나 합의에 따라 발행처는 '연변문학월간사'로 표시하고 있다. '조선문학'은 2002년부터 매년 1월 전년도의 12권을 통합본으로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2.1.6 북한 저작자와의 직접계약

푸른숲 출판사의 2000년 출판된 '북한 향토사학자가 쓴 개성이야기'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한 재미동포 사업가를 통해 북한 저자의 원고를 입수하고 저작권 계약을 하였다고 한다.⁷⁾ 북한에서 이미 나온 책의 판권을 수입해 국내에서 출간한 경우나 일본에서 발행한 북한책을 재계약한 경우는

5 이는 남한측의 학문의 수준이 떨어 진다기 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물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러한 한문서적의 번역을 국가의 주도하에 집단적으로 제작하고 있어 많은 한글번역판을 보유하고 있다.

6 한국일보, 2001. 3. 9. (17면), 출판/민속공예

7 계약은 2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수입받는 원고매질의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

있었지만 우리측의 기획 하에 직접 저자에게 원고료를 지급하고 북한 책이 출간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저자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북한 송도대학에서 역사와 문화를 공부한 뒤 교원생활을 하고 은퇴한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자가 실지로 북한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한 때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는 북한의 일반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북한의 저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다.

2.1.7 향후 가능성

우리가 책을 기획하고 북한측의 작가에게 쓰게하여 남쪽에서 출판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좀 더 교류가 발전된다면 일종의 OEM방식의 출판도 예상된다. OEM방식은 우리측이 기획하고 북한의 작가까지 섭외함과 동시에 책의 내용을 북측에서 인쇄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국이나 홍콩 등을 통해 책을 만들고 있는 국내의 출판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북한지역의 인쇄제본시설을 이용하거나 좀더 현대적인 시설을 만들어 이용한다면 경제적 효율성이 예상되므로 가까운 장래에는 이러한 방식의 공동출판의 형식도 등장하리라 예상된다.

2.2 영상물

영상물의 교류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출판물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상물이 북측에 의해 요구되기보다는 남한측의 관련 사업자가 수입이나 반입의 형식을 빌어 북한의 영상물을 들여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초기에는 시범적으로 TV방송에서 방영해주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었고 통일부 북한정보센터에서 일정시간에 북한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정도였다. 영상물의 내용은 이념적이거나 정치적 내용이 어느정도 배제된 작품들이기는 하나 남북한간의 문화나 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상업적 가치는 크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영화인 '불가사리'가 국내의 일반영화관에서 상영되었으며 우리 방송사의 제작자들이 북한 현지에서 촬영 제작을 하고 또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볼 수 있게 생방송으로 전송하는 등의 빠른 진보를 보이고 있다.

영상물의 경우는 출판물과는 저작권 관련 문제에 있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출판물은 남한에서 활동을 하고 창작물을 남기고 간 과거 남·월북작가 작품의 저작권자의 확인이나 무단복제가 주된 문제점이다. 반면 영상

물의 경우는 북한에서 직접 만들어진 창작물로 비교적 권리의 소유자가 뚜렷하게 북한으로 정리되는 추세지만 들어오는 과정에서 중개자에 의해 발생하는 중복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주류를 이루었다.

2.2.1 저작권자의 애매모호성

저작권자의 애매모호성은 저작자의 생사여부 확인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1명 이상의 저작자가 각자 자신이 정당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특히 영화의 경우 집단예술에 속하므로 실질적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때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신상옥 감독의 영화관련 소송이 대표적인 예로써 영화 수입업체 SN21이 북한조선영화수출입사의 대리인격인 일본의 서해무역을 통해 들여온 신상옥 감독의 영화 '사랑사랑내사랑'과 '불가사리'의 방영권을 문화방송에 판매하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표 2〉 신상옥 감독 영화분쟁 당사자들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

신상옥 감독측의 주장	SN21 측의 주장	법원의 판결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동안 김정일의 지시하에 영화를 만들었지만 북한측은 대외이미지 개선에만 목적을 두고 신필름이라는 신상옥 감독의 영화제작사에 금전적인 도움만을 주었고	"모든 창작기관과 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작품의 저작권과 판매권은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내각 문화성에 있다. 여기에 신씨가 운영한 신필름의 작품도 적용된다" 라는 내용의 증명서와	신상옥감독이 북한체류당시 상기영화의 전반적인 제작과 기획을 담당 기여한 공로는 인정되지만 북한의 자본과 인력으로 영화가 제작되었고 전반적으로 영화의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양도된다는 관례로 볼 때
제작과 대외판매 까지 신상옥 감독의 결정하에 진행되었고 사랑사랑내사랑 원판 필름에 제작자가 자신으로 각인되어 있으므로	「불가사리」와 「사랑사랑내사랑」의 판권을 조선수출입사가 동북아 지역 배급사인 「서해무역」에 양도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영화의 총체적인 제작사는 북한으로 여겨지며 영화의 저작권과 판권 역시 북한에 있는 것으로 인정함
영화의 저작권 및 판권은 신감독 소유이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저작권은 인정될 수 없음	사기업이 인정되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연출자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함	다만 영화필름에 신상옥감독의 이름이 삭제된 것은 저작권집권의 침해이므로 상기 영화가 방영, 상영될 경우 신상옥 감독의 이름을 복원하라고 결정함

위 영화의 감독과 제작에 참여한 신상옥 감독 측은 법원에 이들 영화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판권의 소유주를 누구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비록 신상옥 감독이 직접 감독하고 제작에 참여한 경우라도 북한당국에 그 소유권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그 당위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첫째, 북한 체제에서의 저작권은 사적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일반적으로 영화의 저작권은 제작사에 양도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영화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자본과 인력에 의해 제작되었으므로 영화의 제작사격인 북한에 그 저작권과 판권이 있다

2.2.2 중복계약

초기의 영상물 반입이 한창 붐이 조성될 시기의 문제로서 한 영화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계약사가 등장하는 경우이다. 중복계약은 판권소유자에 대한 정확하고 공식적인 정보가 부재한 가운데 북한의 대외영화창구의 중개인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 기관, 개인 등을 상대로 거래한 결과 한 저작물에 대해 2인 이상의 국내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발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써 '입격정', '온달전', '홍길동' 등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⁸⁾ 이는 북한영상물 교역을 담당하는 북한측의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우리측 역시 통일부와 문화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절차상의 문제로도 제기된 바 있는데 현재는 두 부처가 사전에 중복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⁹⁾

2.2.3 부분인용/부분편집(저작인접권)

현재 국내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남북의 창'이나 '통일 전망대'는 주로 북한의 소식을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그 콘텐츠의 대부분을 북한의 조선중앙TV의 방송 콘텐츠를 재편집하여 영상을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식 난에서는 조선중앙 TV의 뉴스 영상과 내용을 해석하고 있으며 오락부문에서도 북한에서 상영 또는 방영중인 프로그램을 짧게 재편집하여 흥미있는 내용을 소개하거나 줄거리 전체를 요약하는

8) 이우승(1999). 남북 영상교류 및 제작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99-08). pp.66~97

9) 통일부를 통하는 경우는 국내지표품으로 인정되나 문화관광부를 통하는 경우는 해외영상물 수입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이외의 관세가 부가되어 수입업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였다. 또한 통일부를 통하는 경우라도 그 영화의 사영기간이 국내영화상영일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과 직접적인 방송교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볼 때 북한 방송국의 저작권접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있지만 북한은 ABU(Asia Broadcasting Union)에 참석을 한 적은 없으나 가입국 이므로 이 부분은 서로간에 합의가 가능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저작권접권은 저작권에 준하는 재산적 권리로 실연가, 레코드 제작자, 방송 사업자, 유선방송 사업자 등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방송 사업자는 그가 행한 방송물에 대한 녹음, 녹화, 사진 그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복제, 동시 중계방송할 권리와 재복제하여 사용하는 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적극적인 이용은 케이블 채널인 YTN이 99년부터 북한조선 중앙 TV에서 방송되는 북한만화영화를 위성으로 수신하여 편집하여 방송하는 형태이다.¹⁰⁾ 북한방송을 위성안테나를 설치하여 수신하는 것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상으로 불법이 되지 않지만¹¹⁾ 유선방송사가 이를 가입가구에 전송하는 것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으로도 불법으로 되어 있다. 북한방송의 시청을 허용할 당시 정부는 위성안테나의 이용을 제외한 북한방송의 시청은 국가보안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법상으로도 개인적인 시청이 아닌 위성방송 서비스에 의한 시청은 해당 방송사와 이를 수신하여 재분배하고자 하는 위성방송사간의 합법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다.

2.3 음반물

음반물 분야는 1000여곡의 남·월북 작사 또는 작곡가들의 작품이 원곡 그대로 또는 개작·개사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반대로 우리측의 작사 또는 작곡가들의 작품이 북한에서 불려지고 있어 출판이나 영상분야에 비해 상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우리의 옛날가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제3국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남한의 최신곡이 불려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이 힘입어 우리 가요는 북한에서 점점 더 대중화 될 전망이다.

또한 이용이 되고 있는 여부에 관한 추적이 용이하므로 북한이 저작권 보상요구를 직접적으로 해오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북한은 그 동안 국내에서 영화 관련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그들의 신문이나 방송의 논평을 통해 간접적인 의견을 밝혀온 바 있고 99년에는 특히 조선

10) 문화일보 2001. 4. 24.(22면), 남북방송교류 가이드라인 참조

11) 북한은 1999년 7월 시험방송을 거쳐 10월부터 태국의 위성을 임차하여 그들의 조선중앙TV를 위성방송하고 있다.

음악가동맹'의 이름으로 남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남·월북 작사 작곡가들의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를 보상할 것은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2.3.1 무단이용

2000년 들어 북한 귀순자가 제작한 음반 '휘파람'은 '통일소녀'라고 명명된 남한측의 가수가 부른 북한의 대표적인 노래이자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휘파람'을 포함 북한의 가요를 싣고 있다. 그러나 북측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제작된 음반이어서 방송국 측에서 사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제작사 측인 동아뮤직은 북한은 국제저작권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고 북한가요의 저작권자 역시 개인이 아닌 노동당에 있는 만큼 아무 분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 계약 없이 음반을 낸 것은 국내 저작권법상의 불법이라는 해석이다.

2.3.2 저작권료의 지불대상의 불명확성

그 후 서울음반은 귀순가수가 부른 '기러기때 날으네'를 발표하면서 저작권료 지불대상이 명확치 않아 저작권료를 한국음반저작권 협회에 공탁해 놓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 조선만경무역상사의 음반판매 및 음원관리 대행사로 알려진 조충린계 소유인 일본의 '만대'의 대표가 문화관광부와 음반판매자들을 만나 북한의 위임장을 제시한 바 있다. 만대에 의하면 앞으로 북한 노래를 사용할 경우 북한 음반의 저작권료 창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자신들의 회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애창되는 우리 가요의 저작권료 역시 못 받고 있는 실정에서 선뜻 지불하기도 곤란한 부분이다.

노래방 기기 업체들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친숙해진 북한 가요들을 신곡으로 삼입해 달라는 요구를 해움에 따라 프로그램은 제작해 놓았으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라 공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2.3.3 저작권의 지불

휘파람에 이어 두 번째 나온 '반갑습니다'라는 앨범은 실제 북한의 인기 남자가수와 여자가수들이 부른 곡을 수록한 음반으로 발매사인 북곡무역 측은 일본에서 북측의 대리인인 '만대'의 책임자를 만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뒤 정식 수입한 음반으로 밝힌바 있다. 그러나 수입한 음반이라 하더라도 음반

자체의 저작권 문제는 해소되지만 막상 이 음반에 수록된 노래들이 2차적으로 이용될 경우 그 저작권료는 어디에 지불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계속 제기된다.

앞서 논의했듯이 음반분야는 저작권료의 상호협상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대행사를 공식적으로 북한의 창구로 인정하기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북한에서 대중적으로 불려지고 있는 몇몇 우리 가요에 대한 저작권 보상을 요구해 봄직 하다.

2.3.4 개작과 개사의 경우

북한은 1999년 조선음악가동맹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낼 당시 월북 작사자 조명암의 원작의 작사를 개사한 노래의 제목을 옳게 밝히는 한편 그에 대한 저작권료를 보상하라고 요구해온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노래들 중 상당수는 개사되어 다른 사람들의 작품으로 취급되어져 저작권료도 이미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협회 기록상 등재되어 있는 저작자를 우선 시 한다는 원칙이며 그 중 개사가 확인될 경우 북한측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사가 확실시되는 곡에 대해서는 북한측에게 일방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한다기보다는 공문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곡이 그 동안 개사과정 없이 월북작가 조명암의 곡으로 남아 있었다면 남한에서 대중적으로 불려질 수 없는 변수도 고려해야 하므로 개사의 부분도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5 준공동소유

저작재산권은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므로 북한의 저작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때 그 상속인은 유족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에 따라 남북한 주민 모두가 될 수 있다. 북한 유족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남한유족 만으로도 그 권리를 상속할 수 있으나 북한에 상속인의 존재가 확인되면 준공동소유권관계(민법 제278조)에 놓이게 된다.¹²⁾

일례로 월북작사가 조명암(본명:조영출)의 경우는 1993년 사망후에 그의 딸로 증명된 여인에게 권리가 양도되었으나 현재 북측에 그의 부인 김관보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리를 양도받은 딸은 북측 부인의 생자가 아닌 관계로 북측에 의한 저작권 승계나 지분 등에 관한 공식적인 요구도 예상될 수 있다. 확인과정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남한측에 양도된 지적재산권의 경우 북측 상속인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한 공

12) 김상호(1990), 북한 저작물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소유의 저작권의 범위도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3.6 비의도적인 무단이용: 직접접촉의 불가능

90년 범민족음악제가 열렸던 평양에서 남측의 황병기 교수는 북측의 작곡가 성동춘과 함께 통일의 염원을 기원하는 곡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일염원 노래곡집'이라는 음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제기 되었다. 북측 작곡가의 양해가 없다는 이유로 저작권 문제에 의해 음반발매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문제발생시 황병기 교수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합의아래 음반으로 제작되었다. 해당 노래에 대해서는 공동저작권이 형성되므로 북측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소지를 남겨 놓고 있다.

3. 법적보호의 범위

3.1 북한의 저작권

3.1.1 북한의 창작활동 제재

과거 북한 저작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사회 시스템상 저작권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부재하다는 결론이 주류를 이루었다.¹³⁾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문예활동은 모든 사람이 국가체제속에 일자리를 지정받아 그곳에서 창작업무와 사업을 하고 그 대가로 생활비용을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연이나 방송의 경우도 극본의 작성, 극본의 연출, 극장의 사용 등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없고 국가의 산하기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의 각종서적, 음반, 영상물 등이 자유롭게 반입되거나 이용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무단 복제의 문제나 영리 취득이 있을 수 없다.

북한이 저작권법 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이유보다는 이들의 폐쇄적 사회구조가 더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구 소련이나 예전의 공산국가들이 사적소유를 통제하는 가운데서도 저작권을 민법의 권리로 취급하여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그리고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세계저작권 협약이나 베른협약에 가입한 점에서

13) 김분환(1996). 남북 상호간의 저작권 보호방안. 남북교류협력법제 논문자료집, 통일원

북한과는 훨씬 발전된 수준의 저작권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1.2 북한의 저작권 개념

남북한간 저작권을 다루는 가장 큰 개념의 차이는 저작권의 사유화가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로 볼 수 있다. 올 4월 북한이 저작권법을 채택하기 이전까지는 북한에서는 저작권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관련 법규는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이 저작권을 소유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어떠한 법령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지적재산권의 하나인 산업재산권¹⁴⁾ 관련 “발명 및 창의고안에 대한 규정(북한발명위원회, 1986년 개정)”은 존재하였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 저작권법을 채택하기 이전의 창의자의 권리는 위의 법을 근거로 비교 해석해 볼 수 있다. 발명 및 창의고안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침해할 때의 그 처벌규정은 추상적이므로 침해에 대한 구제는 민사법이나 형사법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은 민법이 아닌 북한 형법 제5장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이므로 저작권의 개념은 사적인 개념보다는 공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공적인 개념은 올 들어 공식적으로 커다란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은 올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가공법, 갑문법, 저작권법 등을 채택하여 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법령의 채택이 곧 개방자체로 연결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노력은 엿보인다.

3.1.3 북한의 저작권법

북한 역사상 첫 저작권법이 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은 전문 6장 48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제1장 저작권법의 기

14) 법무부(1997), “제4장 북한의 산업재산권 법제”,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 법무부자료집(216집).

“일반적으로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도써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고 하며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여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이 지적 재산은 첫째, 예술문학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둘째, 새로운 발명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저작권, 후자를 산업재산권이라 한다(p.363).”

15) 윤희창, 북한원전의 저작권, 문공소식, 1989. 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연구자료 13,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1992.에서 재인용

본, 제2장 저작권의 대상, 제3장 저작권자, 제4장 저작물의 이용, 제5장 저작인접권자, 제6장 저작권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으로써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은 하나 어느 정도의 틀은 갖추어져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사실 대내용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대외용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간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그들의 출판, 영상, 음반물이 남한이나 또는 세계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저작권료 수입을 추구하겠다는 실리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저작권법의 기본

제1장에서는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는 명분과 더불어 저작권의 범위를 공연, 녹음, 녹화, 방송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저작권 협약문제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제6조에서 보면 “출판, 발행, 공연, 방송, 상영, 전시 같은 것이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유통이 법적으로 금지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추후 우리의 저작물 보호를 요구할 때 이 범위에 해당되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저작권의 대상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어문저작물: 과학논문, 소설, 시
- 음악저작물: 음악
- 무대예술 저작물: 가극, 연극, 교예, 무용 등
- 영상 저작물: 영화, 텔레비전 편집물 등
- 미술 저작물: 회화, 조각, 공예, 서예, 도안 등
- 사진 저작물: 사진
- 도형 저작물: 지도, 도표, 도면, 약도, 모형 등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종류는 우리의 저작권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거의 유사하다. 단 우리의 경우, 도형저작물 이외에도 '건축저작물'이라 하여 건축물, 건축위한 모형 및 설계도시의 항목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우리의 경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별도보호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저작권 등록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따로 맡고 있다. 북한의 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 외 원저작물을 응용하여 만든 저작물¹⁶⁾도 저작권을 인정하며 '민족고전 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강조하고 있다. 번역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특히 남한측을 의식하여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

3) 저작권자

저작권자의 권리는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로 나뉘고 있다. 인격적 권리는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이름을 밝힐 권리, 제목·내용·형식 같은 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를 포함(제14조)하고 있고 인격적 권리는 양도, 상속할 수 없으며 무기한(제20조)으로 보호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재산적 권리로서 종류는 제15조에 보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할 권리
- 저작물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전시 또는 배포할 권리
- 저작물을 편작, 편곡, 각색, 운색, 변안, 번역 같은 방법으로 개작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권리
- 저작물을 편집할 권리

개인의 창작물은 개인이, 단체의 창작물은 단체가 그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제16조), 두 명 이상의 창작자가 참여한 경우 공동 저작권의 개념(제17조)으로 구분하고 있어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는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제21조)"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그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국제적인 저작권 협약의 하나인 베른조약의 수준이다.

4) 저작물의 이용

저작물의 이용은 법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개작, 편집 같은 방법으로

16) 우리의 경우 편집저작물이나 2차적 저작물이 이에 속한다.

편집저작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수작성 있는 데이터 베이스 포함)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은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저작물을 보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7조). 저작물의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작권자에게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요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제31조)고 되어 있다. 이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 자본주의 체제에서처럼 개인이 가격을 결정한다거나 시장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기 보다는 국가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이용, 도서관에서의 복제, 학교교육의 목적, 국가의 것을 이용, 소개하기 위해 그 내용의 일부분을 매체에 내는 경우, 무료공연, 장애인을 위한 이용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 속한다.

5) 저작인접권자

저작인접권자는 저작권을 이용하여 공연, 녹음, 녹화, 방송을 한 자 또는 그 권리를 넘겨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저작물을 이용하여 방송한 자는 그 녹화물을 복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재방송 할 권리를 갖는다. 저작인접권자 역시 그 인접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타인이나 단체가 이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기간 역시 저작권자와 동일한 사후 50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6)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이 장은 자본주의 사회의 저작권 법령과 가장 구분되는 장으로써 저작권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저작권 사업에 대한 지도는 구체적인 담당부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출판지도기관과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대리기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남한의 저작권 집중관리 기구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한 단체의 장이나 개별적 공민에게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가 아닌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는 모순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의 경우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저작권법은 산업재산권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의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개념이 더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3.2 국내에서의 북한저작자의 법적 지위

3.2.1 보호의 당위성

현 단계에서 북한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의무는 엄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하고 있으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남북정상회담까지 개최된 상황이다. 이제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만 볼 수는 없으며 사실상 하나의 정부 내지 국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주민과의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적 법률관계가 된다. 또는 한 국가내에서 서로 다른 지방간의 관계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국내涉外사법이 의하면 지방에 따라 법이 상이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그 자가 속하는 지방법에 따르도록 되어있다.¹⁷⁾ 이는 북한 주민의 저작권은 곧 북한지역의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우리측의 저작권법의 적용범위를 넘어선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현재 우리의 저작물을 보호해 준다는 뚜렷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각 나라간의 저작권 보호를 강제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9조 5항은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대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세부합의서는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우리측이 북한 저작물을 보호해야 할 근거와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해석상 '북한주민이 작성한 저작물을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북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현실적으로 해주고 있다.

북한 저작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 김상호¹⁸⁾는 다음과 같이 논평한 바 있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의 저작물이 남한에서의 무질서한 이용을 막는다는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북한 저작물의 독점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동시에 이런 저작권 보호방법을 통하여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기초마련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대한민국 저작물의 북한에서의 보호차원, 즉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도록 유도하

17. 정인섭(1998), 한국관례와 국제법, 홍문사, P.120~126.

18. 김상호(1998) 저작권 남북한 저작물 보호방안에 관한 일고상, 대한 저작권, 저작권식의 조정위원회, 29~39

며, 특히 북한에서 남한 저작물의 불법복제가 행해져 이것이 우리 남한의 출판사나 제작자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북한에 저작권법 체계가 형성되도록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김상호의 법적보호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10여년이 지난 후 실제로 현실화되어 북한의 저작권법이 제정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측이 북측의 저작물을 나름대로 보호하려고 노력한 것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늦게나마 저작권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여한 동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3.2.2 법적보호의 한계

남한에서 북한의 저작물이 보호받는 근거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써 ‘북한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히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해석아래 우리의 저작권법이 북한의 저작권 보호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¹⁹⁾ 그러나 이러한 법적 관례는 「남북기본합의서」 상에서 ‘북한을 북한지역을 지배하는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는 논리적으로 어울배반적인 모순을 띤다는 의견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북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절차로 우선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저작자의 상속인이 법원에 직접 권리구제신청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등한 보호가 성립된다. 그러나 북한 저작자가 북한에서 사망한 경우 확인할 방법이 어렵고 실종선고를 통해서 사망의 효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시기를 정확하게 확정 받지 못하면 시기상 저작권이 이미 소멸해 버린다.

또한 북한 저작자가 북한에서 생존하고 있는 경우나 그 상속인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²⁰⁾ 즉 저작권자 측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보호의 근거가 성립되지 않는다.

남·월북자가 아닌 북한주민의 작품이나 북한정권 산하기관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출판, 음반, 영상 등의 예술문화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법상 보호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료의 지급을 개인에게 또는 북한정권에게 해야하는지 애매모호하다. 설사 개인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이직까지 합법적으로 접촉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우리측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발생이나 행사를 개인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를 기준으로 하고

19) 정인섭(1998), “북한주민의 저작권 보호”, 한국판례국제법 pp.121~123. 홍문사.

20) 김광호, “남북한간 저작권 보호 문제 연구”, 통일가족논문집, 통일부, 1994. pp.3~57.

있으므로 북한저작권을 우리측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할 경우 이러한 체제상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 뒤따른다. 이는 최근 업계에서 추진중인 북한측과의 공동저술이나 합작영화의 경우에도 공동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헌법, 저작권법,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남한측의 출판·음반·영상관련 회사들이 북한저작물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남한내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측 저작물이 아직까지 북한 내부로 자유롭게 반입되거나 이를 무단복제하여 영리를 취할 수 없는 북한의 사회구조상 우리측 저작물에 대한 보호요구는 시기상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남북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시기로 접어들면 우리측의 출판물, 영상물, 음반 등이 북한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 협력문제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 올려 상호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4. 국제법의 적용가능성 검토

4.1 분단국의 저작권 협의 과정

4.1.1 중국과 대만

중국과 대만간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서로 보호되고 있으나 보호의 원칙과 방식은 매우 상이하다.²¹⁾

중국의 저작권법은 1990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국적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국적주의란 저작물의 최초의 발행지가 국내인지 외국인지와는 관계없이 중국 국민의 저작물은 자동으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자국민이라 주장하는 대만과 홍콩 주민의 저작물도 중국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대만에서의 중국 저작물의 보호는 우리의 유사한 방식인 영토주의에 의해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대만은 그들의 헌법에서 중국의 영토까지를 고유영토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서 중국의 저작물도 대만의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게 된다.

21) 김광호(1994) 남북한간 저작권 보호 문제 연구, 통일가속논의집 제 6집, p.3~58.

4.1.2 동독과 서독

동독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이미 1968년 저작권에 대한 법률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였고 베른협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1972년에 양독간의 교류를 위한 기본협약이 체결되었다.

서독은 1972년이래 베른협약에 의한 조약관계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는 동독이라는 국가적 실체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일인의 범위를 동독인까지 포함시키고 있었으며(기본법 116조 1항) 이를 근거로 동독 저작자들에 대해서도 서독의 저작권법(120조)을 적용시켜 서독인의 저작권과 동등하게 보호하였다.

만면 동독은 서독 주민에게 동독주민과 동등한 저작권법적 보호를 부여하지 않고 베른협약을 바탕으로 서독주민의 저작권도 외국인의 저작권으로 취급하는 가운데 국제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서독과의 협조가 진행되었다.

동독은 동독 저작권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문화성 감독하의 저작권 사무소를 설치하고 특히 동베를린 소재 저작권 사무소는 동독지역 밖에 있는 저작자와 계약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용권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허가권을 갖고 이들을 대행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비록 분단된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편의를 제공하여 저작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²²⁾

남북기본합의서 상에 나타난 남북관계인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란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 체결 후 1989년 통일 전 시기까지 양독관계와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북한은 이제 막 단행법 체계의 자체적인 저작권법 체계를 갖추기 하였으나 동독과 달리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한 예가 전혀 없다.

남한 역시 서독과 달리 현행 저작권법에 북한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단지 현법 제3조의 영토조항 해석을 통하여 서독과 같은 형태로 북한의 저작물이 보호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토대가 양독간에 상이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독은 1986년 문화협정까지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문화교류의 기초인 저작권의 상호보호 협조가 원활히 수행된 결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북한과의 저작권 보호의 규정이나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도 우리가 처한 현실적 상황에서 저작권 협상의 방안을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2) 이장희(1994).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방안 —동서독 사례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1994. 봄호

4.2 국제협약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북한은 대한민국의 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인정할 수 없는 정치적 세력집단이 아닌 협력관계의 대상으로서 해석되어지고 있다. 북한과의 저작권 협력문제 역시 과거 헌법상의 영토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북한을 협력의 대상이자 주권을 가진 실체로 인정할 경우 북한과의 저작권 협력 문제에 대한 국제법상의 검토작업이 요구된다. 국제법상의 국가와 국가사이의 저작권 협력은 일방적 보호와 국제적 협약을 통하는 방안이 있다.

4.2.1 일방적 보호

일방적 보호란 남과 북이 각기 자기 측의 국내법에 의하여 상대측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현재 남측에서의 북한저작물 보호는 내국민 원칙에 의해 남한측의 저작권법이 적용되어 왔다. 반면 북한에서의 남한측 저작물 보호는 논의의 대상으로 취급되지도 않고 있었고 최근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들의 저작권법을 채택하기는 하였으나 남한의 저작물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취급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따라서 우선 저작권 보호에 대한 북한측의 법령화와 그 법령이 남한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보호범위나 수준의 일치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북한측이 설사 저작권 체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양측의 법적 수준을 비교하여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내국민의 원칙(National Treatment)이나 상호주의 원칙(Reciprocity)을 적용하게 된다.

내국민 원칙(National Treatment): 상대측의 저작권을 자국민의 저작권과 동일한 범위와 수준으로 보호한다.

상호주의(Reciprocity): 상대측이 자국민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정도 이상으로 상대측의 저작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없다.

그러나 내국민의 원칙은 각자가 설정한 기준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적용시킴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므로 어느 한쪽의 이익이나 손해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저작권법 범위와 수준이 높을 경우 내국민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우리측의 저작권은 북측의 낮은 기준에 의해 보호받아야만 하며 북측의 저작물은 우리측의 높은 수준으로 보호받게 된다.

상호주의는 기준이 낮은 측의 원칙이 적용되어 부분적인 보호만 가능하다

북한의 저작권법이 어떻게 실효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국가의 저작권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가 강조(저작권법 제6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의 우리측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상호주의 기준에 맞춘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북한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는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4.2.2 다자간 국제협약

다자간 국제협약은 남북이 각각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방법으로서 남북한이 동등하게 객관적인 보호수준이 있는 국제적인 차원의 단계로 저작권 보호가 형성된다는데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적 저작권 관련 조약은 세계저작권협약(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과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다.

1) 베른협약

베른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되었고 전세계 저작권보호에 관한 기본적 국제조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하여 성립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원칙적으로 베른협약 수준의 저작권보호기준이 적용되어 그 위상을 과시한 바 있다. 베른조약의 중요 내용은 다음 4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 내국민대우와 동맹국민대우의 원칙이다. 이는 베른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민에게 현재 부여되고 있는 동등한 권리를 동맹국민에게도 똑같이 부여해야 하며 미래에 변화되는 권리나 조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앞으로 또는 상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둘째, 창작과 동시에 그 저작물은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저작자의 권리향유에 저작물의 등록, 복제본의 납본, 요금에 납입, 저작권유보의 표시와 같은 어떠한 방식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은 보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저작자가 저작물 보호를 위해 위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불법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이 협약이 부여하는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이

다. 다만, 영상저작물의 경우에 동맹국은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에 제공된 때로부터 50년 후 또는 저작물이 만들어진 후 50년 내에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만들어진 때로부터 50년 후에 소멸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작자미상의 저작물의 경우 공중에게 제공된 때를 기준으로 50년까지 보호하지만 작자미상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50년이 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동맹국은 이러한 저작물을 계속 보호해야 할 의무는 없다.

넷째, 소급보호의 원칙이다. 이 협약은 효력발생 당시에 본국에서 보호기간 만료에 의하여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즉, 자유이용상태)에 놓이지 아니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다만,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에서 어느 저작물이 종래 주어진 보호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에 놓인 경우에 그 저작물은 다시 보호되지 아니한다.

2) 세계저작권 협약

세계저작권협약은 1952년 9월 제네바에서 체결되었다. 베른조약은 전세계적으로 기본적인 저작권 국제협약이기는 하나 협약 개정시 마다 저작권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관계로 개발도상국을 비롯 많은 국가들이 가입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랐다. 따라서 가입국의 수도 늘지 않았을 뿐더러 선진국 위주의 저작권제도로서 보편성을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2차대전 이후 UNESCO의 주도하에 베른협약 및 기타 다른 저작권 조약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가맹할 수 있는 세계적인 조약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세계저작권 협약이 탄생되었다. 따라서 베른협약보다는 저작권보호수준이 낮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세계저작권협약은 우선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생존기간과 사후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 가입전 저작권에 대해서는 소급의 원칙이 아닌 비소급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이 협약에 새로이 가입하는 국가라도 그들의 국내법상의 저작권 보호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권 발생의 기준을 무방식주의와 등록주의의 중간형태로서 저작물의 발생시에 저작자의 성명이나 명칭, 저작물의 최초발생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면 등록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3) 로마협약

로마협약²³⁾은 저작인접권을 가장 충실히 다루고 있는 법약으로서 저작권

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약은 1961년 로마에서 성립되었으며 5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4.2.3 남북한 관계와 국제법

우리나라는 1987년 7월에 가입한 세계저작권협약의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행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할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결성된 세계무역기구(WTO)체제 내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²⁴⁾이 1996년 1월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데 이어 1996년 8월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저작권협약과 베른협약 모두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 상호간에는 베른협약이 적용되고 세계저작권협약과 베른협약, 두 협약 가입국과 세계저작권협약만 가입되어 있는 나라간에는 세계저작권 협약이 적용되나 이 두 협약이 상충될 경우는 세계저작권협약의 적용은 배제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베른협약이 부여하는 소급의 원칙과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을 보호기간으로 하고 있는 규정에 동의하고 있다.

다자간 국제협약을 통한 저작권 협력은 북한이 자체의 저작권법을 채택하였으므로 가입자격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협약에 가입을 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북한은 국제지적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²⁵⁾의 회원국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협약에는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²⁶⁾

23) 정식명칭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ting Organization)”이다.

24) 세계무역기구가 관장하는 TRIPs는 베른협약보다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권자에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고 정상적인 이용을 해치지 않은 경우의 공정한 이용은 허용하고 있으나 TRIPs 는 이러한 경우가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더 좁게 제한하고 있다. 즉 개인적 이용이나 부분적 인용을 포함해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지식권 침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 UN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인 WIPO는 현재 177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특허법, 정보기술, 상표, 위상, 지리적 표시, 저작권 등을 다루고 있다. 국제특허출원, 국제상표등록, 국제의장등록 업무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 및 전자상거래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그 임무를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구는 단순한 등록기구로써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는 기구는 아니다.

26) 2001년 4월 채택된 북한의 저작권법을 보면 북한이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압시를 주는 조항이 있는 데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의 저작권은 그 조약에

만약 북측이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세계저작권협약에만 가입한다면 그 조약이 북한에서 발효되기 전에 나온 남북한의 저작물은 소급해서 보호해 줄 의무가 없게되는 결과이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관행대로 해오던 재북작가(사망자 포함)의 작품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우리 역시 북한측에 우리의 저작물의 소급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베른조약의 경우는 소급보호를 의무화하고 있고 세기저작권협약보다 보호의 범위가 넓고 규정이 까다로우므로 북측이 가입을 더 꺼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북한과의 관계가 국제법상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협정에 의한 상호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를 가할 방법이 모호하다. 국제연합헌장 제 4조에 의하면 국가(State)만이 국제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남한과 북한이 국제연합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 승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연합헌장은 다면적 조약이므로 남한과 북한 상호간의 관계에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²⁷⁾

설사 북한이 두 협약에 모두 가입을 하더라도 법 해석상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이는 헌법의 영토조항에 의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그 적용범위를 미치게 되는데 남한측이 이들 협약을 국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북한을 포함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북한이 이들 협약에 가입하여 동맹국이 된다면 이들 협약의 국내적 적용범위는 남한영역에 한정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²⁸⁾

남북한간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 관련 다자간 국제협약을 따르는 것은 또한 비효율적인 문제로도 대두된다. 어떠한 법제도 이든지 그 위반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면 유명무실하게 된다. 다자간 국제협약은 남한의 저작권이나 최근 채택된 북측의 저작권보다 더 까다롭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공정한 이용 또는 편리한 이용이 저해된다. 그러므로 많은 개발도상국가가 가입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주지해야 할 사실은 남과 북은 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물론 다자간 국제협약들이 내국민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과 북의 관계는 국내적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 나라안에서 저작권 분쟁이 조정되어 질 수 있는 방식이 취해져야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 보호한다. 그러나 체결국이 아닌 다른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저작물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기5조)."

27) 김명기(가을, 1999), "저작권법에 관한 국제협약의 북한영역내에서의 적용",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8) 김명기(1999),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북한영역에서의 적용,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가을호, pp.2~13.

4.2.4 남북한간의 특별 협정

이 방안은 남북이 상호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수준을 실체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²⁹⁾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와 16조에서는 체제준중과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실시를 합의한 바 있고 저작권문제와 관련하여 부속합의서 제9조 5항은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방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³⁰⁾ 따라서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상에서 거론된 상호 보호 조항을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저작권의 정의, 내용, 보호기간, 제한, 저작물의 종류 등에 대하여 남북합의하에 세칙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³¹⁾

저작권에 대한 용어의 정의규정을 비롯하여 보호범위, 법적권리 등에 대한 합의과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저작권법과 불일치 되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상에서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저작권 협정은 단순한 행정상의 합의일 수 있고 이를 이행할 의무는 국가간의 관계보다 부담감이 적을 수 있다.³²⁾ 그러나 적어도 저작권 협력의 경우 이에 대한 서로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북측의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단계에서 볼 때 북한이 별도의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북측과의 저작권 협력이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남북한간의 특별협정 이후 저작권 협력이 이루어 진다하더라도 지속적인 협력체제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도 하다. 북한의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의 가입은 남북상호간 저작권 특별협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 특별협정 테두리 밖의 남북한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문제를 최소화하는 이중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29) 김문환, “남북상호간의 저작권 보호방안”, 남북교류협력문제논문집, 통일원, 1996. pp.259~317.

30) 세성호, “북한방송에 따른 법적문제”, 98통일방송세미나 주제발표집, 한국방송개발원, 1998. p.28.

31) 한승현, “남북한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95년도 전문가 위촉과제종합(사회·문화분야), 통일원(남북회담사무국), 1995. pp.3~18.

32) 이장희(북, 1994), “남북한 저작권보호의 협력방안(2)”, 제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pp.34~41

5. 협력방안

남북한간 저작권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남측의 저작권 운영체제를 실질적으로 고찰해 본 후 북측의 저작권법의 내용과 비교·대조를 통해 실현가능한 협력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5.1 남측의 저작권 운영체제

국내의 저작권 운영 체제는 민간위주이다. 우선 분쟁조정기구로써 법정기구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저작권 이용의 편리를 위해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와 법정이용허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1.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내에서의 저작권 관련 기구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법원에 의한 재판보다는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담당하는 분쟁은 다음과 같다.

1) 저작인격권에 관한 분쟁

- 저작자의 허락없이 미공표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한 경우
-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의 제호나 형식 및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저작재산권에 관한 분쟁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쇄, 복사, 녹음·녹화 등의 방법으로 복제한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연기, 연주, 가창, 상영 등의 방법으로 공연한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통신의 방법으로 방송한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림, 사진 등을 전시한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번역, 편곡, 각색 또는 영화로 제작한 경우

3) 저작인접권에 관한 분쟁

-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의 허락 없이 그의 실연을 사진촬영, 녹음·녹화 또는 방송하거나,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 음반제작자의 허락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배포한 경우와 영리 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하거나 녹음·녹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경우

4) 보상금에 관한 분쟁

-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함에 있어, 방송사업자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5.1.2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저작권자 개인이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고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었을 경우 직접 계약을 수행하기가 빈거로운 경우를 위해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이러한 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들이 2000년 7월 새로이 신설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포함 분야별로 6개의 단체가 있다.

저작권 위탁관리업체 현황(2000년 9월 30일 현재)

단체명	취급저작물	대표	전화번호	회원수	비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김영광	3660-0900	3,690명	
(사)한국문예미술저작권협회	이문	김정흠	508-0440	1,211명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이문	이희우	780-5220	990명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저작인접권	윤봉욱	745-8286	13개 실연자 관련 단체	판매용 음반방송 부성금 청구지정 단체
(사)한국음반협회	저작인접권	박경준	922-6612	143개 음반 제작업체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출판저작	·	·	저작자단체 협회단체 출판자단체	복사 및 전송 사용 료 징수 및 배부

문화관광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들 단체들은 저작권 대행업무로서 저작물 사용료 징수 및 관리는 물론 관련 저작물 불법이용에 대한 신고 접수, 자체조사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신탁회원의 저작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침해자에게 최고장을 발송, 합의, 손해배상금을 받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 일체의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한다. 분야별 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 위탁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 저작권자의 권리(저작권재산권)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무 및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대리, 기타 중개업무 등 저작 활동 편의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
- 중·고교 국어 및 문학 등 교과서에 게재된 원기작물과 대학입학시험 문제 및 기타 시험문제를 위탁관리, 이들 저작물이 학습교재에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이용료를 총괄 징수하여 관련 회원(개인 및 단체)들에게 분배
- 방송사업자가 회원의 소설을 극본화한 프로그램을 재방송하거나 비디오테이프로 복제·배포하는 경우, 그리고 시·수필을 낭송·문자방영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이용료를 징수·관련 회원에 분배
- 시·수필·단편소설 등 수십·수백편의 저작물이 게재되는 선집류 도서에 대해 협회에서 이용자 측과 일괄 계약을 체결, 저작권 보호·관리도 꾀하면서 저작물 이용의 신속·편의를 도모
- 극장용 영화가 TV에 방영 또는 재방송되거나, 비디오테이프로 복제되는 경우, 원작자·시나리오작가 및 영화감독들이 별도의 저작권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 추진
- 석사·박사학위 논문, 기타 학술 논문 및 저작물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서 Data Base화하여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경우에 저작권이용료를 징수하여 회원에게 분배
- 그 밖에도 저작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기 어려운 분야를 찾아내어 이용자 측과 적극 협의, 저작권이용료를 총괄 징수하여 회원에게 분배

2)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저작권인 방송권과 복제·배포권을 관리한다. 방송사는 물론 1, 2차 지역민방사에 대한 사용료 징수업무와 인천방송 등 신규 계약체결 방송사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일괄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독립제작사 및 공중파방송 자회사에 대한 계약체결 시 방송작가의 저작권료에 대해 협의한다.

3)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내에서의 음악관련 공연/방송권 및 복제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체 레파토리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규정에 의거하여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방송업자, 비디오/레코드사, 가라오케 제조업자, 가라오케, 광고대행사, 실황공연, 항공사, 유흥업소, 호텔과 백화점을 포함한 유선방송업자, 출판사 등의 사용자에게 사용허락을 하고 있다.

4)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예술실연자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의 종류는 가요·음악·국악분야의 실연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다.

〈표 4〉 예술실연자단체의 분류

가요분야	음악분야	국악분야
연주단체 가수단체 레코딩뮤지션	지휘단체 성악단체 기악단체 관악단체	농악단체 창악단체 민요단체 기악단체 가야금병창 시조단체

5) 한국음반산업협회

음반에 관한 저작권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서 음반회사를 대리하여 방송 보상금을 수령하는 단체이다.

6)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

2000년 개정 저작권에 의해 저작권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센터는 복사와 전송에 관한 저작권을 집중관리하고 허락조건도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 하에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편리하게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5〉 복사전송관리 업무

업 무	내 용
권리수탁	저작·출판권자(저작자 단체, 학·협회, 출판자단체)로부터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관한 권리위탁을 받아 이를 관리
사용료 징수	이용자와 복사·전송 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
사용료 분배	센터는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복사·전송에 대한 사용료를 회원단체를 통하여 저작·출판권자에게 분배

5.1.3 법정이용허락제도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을 이용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허락을 받을 수 없거나, 특별한 이용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경우³³⁾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그 권리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을 승인하는 제도인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거나, 권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와 권리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공탁하고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을 이용하게 되며 법정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저작권법 제47조)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

33) 저작재산권자나 저작인접권자 또는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한 후 저작권물과 저작권자에 대한 사항을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저작권법 제48조)

- 판매용음반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저작권법 제50조)
- 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저작인접불인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

5.2 협의기구의 운영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규정된 협의기구를 남측과 북측의 대표로 구성하고 이 기구를 남북한간 저작권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최고기구의 위상을 갖 추게하고 이 기구가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분쟁조정, 등록에 의한 저작물 관리, 법정이용허락 등으로 설정한다. 또한 저작권 대리업무나 협의를 위한 세부사항 추진 등을 논의한다.

5.2.1 공동협의기구의 설치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남북쌍방이 입법조정 권고 및 섭외사법문제의 해결기능까지도 포함한 전반적 문제를 다룰 가칭 '남북저작권협의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를 통해 저작권에 관련된 일체의 조사, 사실확인, 자료의 수집 및 제공, 저작권의 위탁관리, 중개, 대리 등까지 맡겨 남북이 함께 공동위원회 형태의 단일 중앙기구를 두거나 남과 북이 각각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측이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저작권협의기구는 복잡한 실무사항을 다루게 되고 어느 정도의 공권력을 요구하므로 완전한 민간기구로 하기보다는 남한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같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반관반민의 저작권 전문기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³⁴⁾

저작권 협의기구는 저작권 보호를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저작권조정위원회와 저작권의 거래이용을 매개로 하는 저작권집중관리위원회로 나누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저작권의 중개 및 대행업무는 민간 대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바 저작권 집중관리위원회는 추후 민간기구의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

34) 한승헌, "남북한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95년도 전문과 위촉과제종합(사회·문화분야), 통일원(남북회담사무국), 1995, pp.3~18.

5.2.2 분쟁의 조정과 협의

남북한간의 저작권 분쟁 시 그 해결은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재판보다는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이 기능을 맡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정확한 중재기관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그들의 저작권법 마지막 항인 제48조 “저작권과 관련하여 생긴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의 내용에 의해 중재기관의 존재 가능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 저작권 조정위원회가 우선 필요하다. 공히 남북한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저작권 조정위원회는 남북한간 저작권 협의기구에 소속되는 많은 위원회 중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5.2.3 등록을 통한 저작물 관리

남북한간의 저작물 협력의 목적은 남북한간 문화물이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고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한간의 문화적 교류가 지금보다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포함한다. 그 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자유로운 교류가 없었고 더욱이 북한측의 패쇄적인 사회구조상 북측의 저작물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일반인들은 알기조차 힘들었다. 남북한 관계의 저작권 협력을 위해서는 남한측의 저작물과 북한측의 저작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작업 역시 병행되어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시기는 물론 그 저작물이 완성되는 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법해석이 내려지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수많은 저작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등록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열람토록 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도 저작권자에게 --의무 사항이나 저작권 성립의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저작권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추정력³⁵⁾ 및

35) 추정력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성명이 등록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

대항력³⁶⁾이 발생하므로 쉽고 안전한 저작권 거래가 가능하므로 남북한간에 이러한 등록절차를 거친다면 혼란을 좀 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에서 유통되는 북한의 저작물과 북한에서 유통되는 남한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관리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5.2.4 법정이용

저작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은 남북한간에는 이러한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남·월북 작가의 책을 인쇄하거나 음반에 북한곡을 수록할 때 북한 저작자와 접촉 불가능으로 인해 그 저작료를 일방적으로 공탁하고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비의도적인 무단이용도 많을 것이고 이는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저작권조정기구에서는 이러한 공탁금 제도를 통한 법정이용허락범위를 확대하여 특히 작자 미상이나 생사불명의 경우에도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3 저작권대리업무의 통합

국내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을 대행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각 분야별 집중관리단체와 다시 각각의 단체소속인 개인 대행사로 이루어진다. 본 고에서는 이 두 사업의 성격을 북한의 체제와 비교하여 논하고 통합 대리업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5.3.1 집중관리단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6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 '한국음반협회', 등, 개인의 저작권을 위탁·관리해주는 저작권집중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기관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행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 대리, 기타 중개업무 및 기타 저작활동의 편의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저작권 침해사례조사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36) 대항력 : 저작재산권의 변동, 출판권의 설정 및 변동, 저작인접권의 변동 사실을 등록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위탁단체의 역할을 담당하는 북한의 단체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북한의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사업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판지도기관, 문화지도기관, 과학기술지도기관으로 각 분야별로 명시해 놓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기관들은 내각산하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 반면 우리의 저작권집중관리 단체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활동하는 사단법인 형태의 이익단체이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 지도기관의 성격을 우리측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측의 저작권 기구가 하는 일은 저작권 및 저작권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저작권 집중관리업무는 수행하지 않지만 우리측의 집중관리단체의 업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저작권 집중관리업무도 장차 수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집중관리업무를 국가기관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저작권법 제43조에 보면 이들 기관은 필요하다면 저작권 사업에 필요한 대리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대리기구란 우리측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집중관리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일반 개인적인 대행사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이 저작권 보호체제를 어느 정도 갖추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저작권 지도기관과 우리측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간의 상이한 배경으로 인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5.3.2 대행업무

국내에서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아래 저작권 대행업무기관이 존재한다. 이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기획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고 수많은 개인의 저작권을 직접 당사자로부터 위탁받아 개개인적으로 관리해 주는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 공식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러한 하부대행기구들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되어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우리가 종종 듣고 있는 북한측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 등장하는 기관이나 개인들이 이러한 역할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대행사들은 저작권집중관리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은 아니다. 국내에는 190 여개의 대행사들이 있지만 신고단으로 개업과 폐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이기보다는 유동적인 시장의 형태를 갖고 있다.

5.3.3 통합기구

따라서 초기에는 북한관련 저작물의 중개는 기존의 출판, 음반, 영상물 관련 저작권을 담당하는 각종 민간협회를 걸치기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민간기구로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가 되면 각 담당 단체에게 이양하는 단계별 방식을 취하는 방안이 좋을 듯 하다. 이 통합기구에서는 남한에서 유통되는 북측의 저작물과 북측에서 유통되는 남한의 저작물에 대한 위탁관리 및 대행업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남한에서 제작되어진 북한 가요음반에 대해 2000년 10월초 북한의 음반판매 및 방송저작권의 해외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북한 「조선만경 무역상사」의 일본 파견사로 알려져 있는 「반대」가 남한측 음반사를 방문하여 북한가요에 대해 저작권 보상요구를 해온 바 있다.³⁷⁾ 그러나 과거 북한의 중개상으로 알려져 있는 기관이나 회사를 통해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도 중복계약의 문제가 대두되어 혼란을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 음반, 영상물을 관장하는 북한측이 내세우는 중개기관을 거치기보다는 저작권 대리업무를 담당하는 남북한 통합기구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좋을 듯 하다.

5.3.4 향후 전망

그 다음 단계로는 우리측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위상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북측 기관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북한은 남한에서처럼 저작권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지만 지난 99년 남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남·월북 작곡·작사가 노래에 대한 저작권료 보상을 「조선음악가동맹」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보아 각 예술 분야별로 존재하고 있는 실질적 운영조직들이 남북한 저작권 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분야별 작가, 미술가, 음악가, 영화인, 연극인, 무용가, 사진가 동맹은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의 하부조직으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초기의 저작권 위탁관리 업무는 이 문예총을 창구로 남한측의 하나로 통합된 기구와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초기의 통합기구를 통해 어느 정도 저작권 중개 체계가 형성되고 남북한측 각 분야별 단체간의 상이한 북한 저작물 관련 기준을 통일한 이후에야 각 단체별 집중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37) 조선일보, 2000. 10. 12(21면), "회화림·기러기떼 날으며 등 북한가요 저작권료 내라"

5.4 세부적 고려사항

5.4.1 저작권 보호기간

북한의 저작권을 남한 저작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고 할 경우에 북한저작자가 생존하고 있으면 전적으로 그의 저작권이 인정되나 사망 시에는 사망 시기를 기준으로 몇 년까지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베른조약의 경우 사망 후 50년까지 보장이 되나 세계저작권협약은 그가입시기를 기준으로 이후에 공표된 외국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남북이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저작권법에서 '창작자 사망 후 50년(제23조)'을 보호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어 남한측이 가입되어 있는 베른조약의 기준을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5.4.2 계약의 주체

저작권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될 수 있기 위한 기본조건은 우선 그 계약당사자와 저작권자간의 계약이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개인이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창작한 자가 가진다(제16조)"라고 되어 있어 개인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재산적인 가치로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작권이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있는 지 정부의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인정작업이 필요하다.

5.4.3 계약의 종류

우리측의 상식에 의해 저작자가 저작권을 소유한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저작권이 실제로 단체나 조직에 의해 소유되어 있다면 우리측 계약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북한측에서 저작권제도라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관계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배타적 허락, 단순허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식적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³⁸⁾

38 김상호(서울, 1998), "남북한 저작물의 보호방안에 관한 일고찰",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회조정위원회, 1998, pp.29~39.

5.4.4 공동저작권

우선 양당국간에 원저작자는 물론이고 유족의 소재, 그리고 사망의 경우 사망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식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저작권을 승계하는 상속인이 남한과 북한 양측에 존재할 때 민사상의 저작권 공동소유에 대한 절차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공동저술 작업이나 합작제작 공연물의 경우도 공동저작권을 갖는 양 당사자간의 충분한 이해와 법적권리가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양측의 저작권자의 생사 및 소재 확인과 공동저작물에 대한 계약조건의 합의 및 그 과정상의 직·간접적인 남북한간의 정보 교류가 보장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6. 맺는말

남북한간 저작권 협력의 문제는 과거의 헌법상의 영토조항에 의해 보호되었던 소극적 접근이 아닌 본격적인 남북한 문화교류 활성화가 전망되는 시기에 걸맞는 적극적인 접근과 상호적 보호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초기에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북한의 저작물들이 보호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므로 양적 불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화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남한의 저작물이 북한에 유통될 경우를 대비하여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그들의 개방정책을 위해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른 남북한간 저작권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남북한간 저작권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저작권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저작권의 행정적 보호와 중개업무를 분리하되 반관반민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저작권 중개업무 역시 남북한간의 저작권 개념이나 운영체제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관련 분야의 단체가 각각 위임받는 형식보다는 초기에는 남북 양측의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세부적 합의사항으로는 저작권 보호기간, 계약의 주체와 종류, 공동저작권 등에 대한 개념적 정리와 절차가 필요하다.

남북한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분위기도 적극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교류 가능한 남북한의 출판, 음반, 영상물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공동작업을 추진하고 전시장구도 정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또는 지역적 각종 문화관련 컨퍼런스를 그들의 저작물을 전시하는 창구로 이용하게 하고 우리측과의 교류를 위한 남북 공동의 출판·음반·영상물 전시회를 통해 점차적인 문화개방을 유도하여 남북한간 문화교류활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인터넷상의 전송권을 포함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 문제 역시 향후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북한관련 도메인의 사용, 인터넷상에서의 북한가요 다운서비스,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자료의 이용이나 복사 등은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병근,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보호”, 국제판례연구 제1집, 1999
- 김광호, “남북한간 저작권 보호 문제 연구”, 통일가족논문집, 통일부, 1994. pp.3~57.
- 김병기(가을, 1999), “저작권법에 관한 국제협약의 북한영역에서의 적용”,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김문환, “남북상호간의 저작권 보호방안”, 남북교류협력법제논문집, 통일원, 1996. pp.259~317.
- 김상호, 북한저작물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0.
- 김상호(겨울, 1998), “남북한 저작물의 보호방안에 관한 일고찰”,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pp.29~39.
- 법무부, “제4장 북한의 산업재산권 법제(법무부 자료집 제 216집)”,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I), 1997.
- 윤희창, 북한원전의 저작권, 문공소식, 1989. 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연구자료-13.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1992.에서 재인용
- 이우승, 남북 영상교류 및 제작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연구보고서(99-08), pp.66~97, 1999.
- 이장희(봄, 1994), “남북한 저작권 보호의 협력방안(2): 동서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4. pp.34~41.
- 정인섭, “북한주민의 저작권 보호”, 국제판례법, pp.120~126. 홍문사, 1998.
- 제성호, “북한방송에 따른 법적문제”, 98통일방송세미나 주제발표집, 한국방송개발원, 1998. p.28.
- 한승헌, “남북한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95년도 전문가 위촉과제종합(사회·문화분야), 통일원(남북회담사무국), 1995. pp.3~18.
- 국민일보, 1994. 2. 17(2면). “북저작권(한미당)”
- 연합뉴스, 1999. 7. 6 “남북간 저작권 분쟁 조짐”
- 조선일보, 2000. 10. 12(21면). “휘파람·기러기떼 날으네 등 북한가요 저작권료 내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채택)

< 부록1 >

권 별 수 록 논 문 일 람 표

권별	논 문 제 목	연 구 자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내 통일논의의 사회적 가치합의에 관한 연구 • 남북한화해시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계 • 대북포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북한 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 	<p>김진향 (경북대 강사)</p> <p>노병렬 (증산도 사상연구소 연구위원)</p> <p>박재던 (연세대 사회과학 연구소)</p> <p>이완범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부교수)</p>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개발 • 우리나라 대학의 통일교육과 대학생의 통일 의식 변화 •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극대화 방안 • 초등학교 재량 활동을 위한 구성주의적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p>김영라 (대구교대 강사)</p> <p>김주찬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p> <p>이창식 (한서대 부교수)</p> <p>최승규 (부산대 강사)</p> <p>추병환 (춘천교대 조교수)</p>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와 체제 군사화(軍事化)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개혁과 개방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이해변화' 분석 •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와 군사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p>김갑식 (서울대 한국정치 연구소 연구원)</p> <p>김용린 (동국대 강사)</p> <p>박선원 (연세대 통일연구소 연구원)</p> <p>박정진 (고려대 아세아 연구소 연구원)</p> <p>이태식 (인제대 전임강사)</p>

권별	논 문 세 목	연 구 자
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분의 성공적인 남북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형 연구 • 북한의 경제체제진환 분석 : 점진적 이행의 CGE모형 •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시범적 통일로서의 통일특구에 관한 연구 •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p>고영삼 (부산발전연구원 전문위원)</p> <p>이영훈 (고려대 강사)</p> <p>유승훈 (호서대 전임강사)</p> <p>조진철 (미국 포틀랜드대학 방문교수)</p> <p>양분수 (LG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p>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 연구 • 국가주도형 심천모형과 시장주도형 상해모형의 북한적용가능성 연구 • 북한의 사회법률직업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언어공학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 •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p>김수압 (통일교육원 책임연구원)</p> <p>박병광 (단국대 분쟁해결 연구센터 연구위원)</p> <p>이동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초빙연구원)</p> <p>이봉원 (고려대 언어정보 연구소 연구원)</p> <p>조수신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연구원)</p>

< 부록2 >

최근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96~2001년)

'96년

<통일정책 분야>

- 탈북귀순자의 한국사회 적응력제고에 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김정일정권 붕괴시나리오와 한국정책 대응모형
- 통일대비 교포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일헌법의 성립절차에 관한 연구
- 러시아한인들의 민족정체성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인식 연구
- 남북한 군비경쟁의 계량모형 분석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분야>

- 북한출신 남한이주자의 국내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적 지원모델 개발
-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통일 교육방안의 모색
- 통일시대를 위한 정치교육방안 연구
- 통일후의 바람직한 기업구조 연구
- 북한의 정치교육 효과성에 관한 연구
- 통일이후 남북한 법체계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에 대비한 북한기업소들의 발전적 해체 및 사유화 방안에 대한 연구

<남북교류·협력분야>

- 남북한 신뢰구축
- 통일에 대비한 한국항공정책의 과제와 방향
- 북한의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환거래 및 금융협력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과 대북투자의 법적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중국농촌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북한의 진로
- 북한여성의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 북한정치체제 변혁의 역동성
- 북한 “인민”생활세계 연구
- 북한의 화법(話法) 연구
- 3차원적 문화구조를 통해본 북한주민의 가치 정향 연구

<통일환경 분야>

- 한·중관계발전이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
- 미북협상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 북한의 대미협상전략의 효율성과 한계성
- 동북아 평화체제구성과 전망에 있어서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의미와 역할
- 북한의 대미접근과 한국의 대응방안
-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97년

<통일정책·통일환경 분야>

-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관한 인식제고 방안
- 한반도 통일시 위기관리 방안 연구
- 통일 후 북한기업의 사유화 방안
- 남북한 통합시 북한 국공채의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원 「전자 상황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
- 민간통일운동의 주요 논의 동향과 통일정책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
- 중국 경제개혁의 북한수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중국의 對한반도 기본전략
- 독일통일 후 과기청산에 관한 논쟁 연구
-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 한국교회의 통일논의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북한의 주택실태와 북한지역 주택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 김정일체제하 북한군 및 군엘리트 연구
- 해방직후 북한의 교육·문화 실태 일연구
- 북한주민의 이미지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전환과 구조적 제약
- 북한사회의 풍자적·은어적 담론분석을 통해본 체제 안정도 평가문제

<교류협력·인도지원·남북협상분야>

- 대북경수로 지원사업과 남북한관계 변화 전망
- 남북한 친족구조의 비교
- 남북한 가족의 가족중심의식과 사회통합 가능성의 모색
- 일본기업의 북한투자, 대만·한국기업의 중국투자 경향으로부터 본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진출 전략
- 「환동해경제권」형성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연계가능성
- 남북한 당국간 회담유형과 남북한 관계변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홍보분야>

-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모형 개발
- 가치교육 기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교수프로그램 개발
- 인터넷과 PC통신을 통한 통일정책의 적극적 홍보
- 통일 후 북한주민 재교육을 위한 인터넷 상의 가상 대학 구축 방안
- 남북한 의무교육법제 통일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탈북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98년

<통일정책·통일환경 분야>

- 남북한 통일상사법의 정립방향

- 남북한 정보통신통합 전략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 다자간 안보협력과 지도국의 역할
- 남북협상 과정상의 대북협상 모델연구
- 남북한 전력융통 상황 아래에서의 진원설비 개발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연구
- 체제진환기의 노사관계 변화
-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도시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 방안
- 통일후 북한지역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 분야>

- 북한체제의 변화를 개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 통일에 대비한 북한 보험산업의 민영화 방안 연구
- 러시아 극동지역의 북한 노동력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소비생활양식 및 소비문화와 통일후 적용문제 연구
- 북한사회의 정보화 현황과 정보화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남북회담 · 교류협력 · 인도지원 분야>

- 남북한 및 동북아지역의 육로 직수송방안에 관한 연구
-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파트너십 연구
- 대만 · 중국의 경제교류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모델
- 도서관협력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 바람직한 남북간 이중과세방지 협약체결 방안

<통일교육 · 홍보분야>

- 대학 통일교육관련 교양강좌의 실태와 실험적인 수험모델 개발
- 통일이후의 국민통합을 위한 인성교육의 방안 연구
- 통일이후 사회과 교육목표로서의 시민성 개념의 제정법 및 구체화 방안
- 통일 준비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일 연구
- 새통일 한국의 영·음 교육 연구

'99년

<통일정책 분야>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군사적 방안연구
-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 연구
- 對조총련 '포용정책'필요성과 전개방안에 관한 연구
- 통일한국의 군대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 동북아 환경협력체를 통한 북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방안
- 다자간 안보협력을 통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안 연구
- 대북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 민간 통일운동 단체간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

<북한실태·인도지원 분야>

- 북한의 이차경제 발흥과 정치적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에 대응한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개발방향 연구
-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을 위한 자조모델 연구
- 기후변화가 북한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법적지위와 이에 대한 지원 및 송환방안

<통일교육홍보·기타>

- 정보화시대 통일부의 효율적인 홍보전략
-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그 실현방안
- 남북한 상사분쟁의 해결방안
- 남북한 초등학교에서의 도덕교육내용 비교 연구
- 김일성 담화체계의 설화적 모티프 연구
- 놀이문화에서 찾아내는 남북공감대 모색방향 연구
- 북한관련 TV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2000년

<통일정책 분야>

- 일·북수교와 한국의 정책과제
- 인터넷을 활용한 통일기반 확충방안
- NGO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관한 연구
- 한·중 경제교류 협력의 발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체제전환 국가들의 주택개혁 사례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독일통일이후 동·서독 임금동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본 사회통합 연구
-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북한실태 분야>

- 동북아시아 국가의 사막화 현상이 북한 산림생태계 파괴에 미치는 영향과 통일후 복구계획
- '90년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정보통신 부문 발전과 정보화
- 북한의 국가능력약화와 분권화 가능성
- 김정일체제의 사회통제와 주민의식 변화 연구

<통일교육, 홍보, 교류협력, 기타 분야>

- 남북한 「도덕」 교과에 나타난 가치덕목 연구
- 초·중등생 및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추이 조사를 통한 학교통일교육 방안 모색
- 북한체제 및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정향
- 남북정상회담이후 산업입지 측면에서 본 남북경제협력의 방향설정
- 한국, 북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 비교연구
-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정체성 연구
- 남북한 해역에서 퇴적물 기원 및 오염현황 대책방안을 위한 연구

2001년

<통일정책 분야>

-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내 통일논의의 사회적 가치함의에 관한 연구
- 남북한화해시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계
- 대북포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북한 통일방안 변천에 관한 연구

<통일교육 분야>

- 초등학교 통일교육 교수모듈 개발
- 우리나라 대학의 통일교육과 대학생의 통일 의식 변화
- 남북 청소년 이질감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학교통일교육 극대화 방안
- 초등학교 재량 활동을 위한 구성주의적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북한실태(정치) 분야>

- 북한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신군정치'(先軍政治)와 체제 군사화(軍事化)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개혁과 개방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전략적 이해변화' 분석
-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위기와 군사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경제) 분야>

- 민간부문의 성공적인 남북 IT교류를 위한 정부의 역할 모형 연구
-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분석 : 점진적 이행의 CGE모형
-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 시범적 통일로서의 통일특구에 관한 연구
- 북한의 2000년대 경제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북한실태(사회) 분야>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 연구
- 국가주도형 심천모델과 시장주도형 상해모델의 북한적용가능성 연구
- 북한의 사회법률직업에 관한 연구
- 북한의 언어공학 현황과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
- 남북교류상의 출판·영상·음반물에 관한 저작권 협력방안

북한실태(사회) (V)

인 쇄 : 2001. 12.

발 행 : 2001. 12.

발행처 : 통일부 정보분석국 분석총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 02)720-2425 ~ 6

인쇄처 : 덕성문화사

☎ 02)2274-5916
